

| SRI-정책-2016-04 |

# 대도시 행정구 기능 강화 방안

Strategy for the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boroughs in Suwon

박상우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백정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변화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임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2016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6년 7월 31일

**발행** 2016년 7월 31일

**ISBN** 979-11-85686-92-9 (9335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박상우, 2016. 「대도시 행정구 기능 강화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국문 요약

50만 대도시에 행정구 설치의 가능함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12개의 대도시에 행정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도시 행정구는 광역시의 자치구만큼이나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하부조직으로서 시민과 최접점에서 만드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대도시로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와 행정구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사무배분체계를 정립하고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100만 대도시인 수원시의 대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행정구의 기능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이론 및 제도분석 및 모형 도출을 위한 문헌분석과 함께, 시청, 구청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과 더불어 국내외 유사시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사무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시본청 업무 중 구로 이관할 사무, 구에서 시본청으로 이관할 사무, 구청 내에서 기능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였다.

수원시는 대도시특례의 대상이 되는 도시로서 광역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수원시는 본청 산하에 4개구와 42개동의 하부조직을 갖고 있다. 각 구들은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또한 각각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장안구는 북부에 위치하여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고, 권선구는 호매실 지구 등 신도시 개발 중으로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영통구는 비슷한 상황이다. 그리고 팔달구는 화성이 있는 수원의 원도심으로 공공시설 및 대형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시청과 구청의 조직과 기능을 보면, 먼저 시본청의 경우 8개의 실국으로 조직되어 있고, 산하에 각 과들이 편재되어있다. 주로 정책결정과 함께 정책집행 및 지원기능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구청은 4개구 모두 동일하게 9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구는 사업적 집행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등이 있고 그리고 민원기능, 사회복지기능, 조직유지관리 및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민원기능은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기능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조직유지관리 및 지원기능은 행정지원과가 해당된다. 그리고 구청의 경우 시본청과 비교했을 때 한 과에서 보다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청과 구청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기관유지기능의 중복, 행정구의 시와 동의 전달 및 경유기능으로 인한 행정계층간 거래비용,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 시-구-동의 책정(결정)-조사-접수 체계 구축, 서비스 기능별로 규모 및 대상 등의 기준에 따른 본청과 행정구의 기능배분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위임규정이 부재하거나 업무의 혼란으로 시청과 구청에서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들도 존재하였다. 특히 행정구와 자치구의 차이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 행정구를 갖는 대도시와 일반시의 차이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부조직으로서 행정구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원시 행정구 기능강화 방안은 시본청에서 수행하고 있고, 정책집행 및 단순관리업무, 그리고 현장성이 강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구청이관을 통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구청의 능력을 함양하여 주민과 밀접한 일선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보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정책집행기능과 현장성이 강한 기능은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기준 하에 시청과 구청의 단위과제들을 분석하여 시청업무 중 구청으로 이관가능한 업무, 구청업무 중 시청으로 이관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였다. 두 번째로 시본청과 구청 실무책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관 혹은 기능재조정이 요구되는 것들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각 기능들을 이관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하는데 법령상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없는지 검토하여 본청에서 구청을 이관할 업무,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관할 업무, 구청내에서 기능재조정이 필요한 업무, 구와 동간의 기능재조정 업무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수원시의 행정구 기능강화방안을 위한 추진로드맵을 설정하였다. 첫째, 첫째, 구 이관이 필요한 업무를 선정한다. 이는 시청업무 중 구로 이관이 필요한 업무 목록을 작성하면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록 작성은 시본청과 구청의 역할 배분과 함께 이루어진다. 시청은 계획, 광역 업무를 구청은 집행과 민원, 현장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선정된 업무의 이관관성을 검토한다. 시와 구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구청의 행정능력도 검토되어야 한다. 법률제한 여부도 물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관 관련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만 이관되고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행정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는 더 나아가 주민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업무분장 재조정, 관련 조례 및 행정규칙 제개정, 관련기관과의 협의, 조직 및 인력 재배치의 작업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제어: 수원시, 행정구, 기능배분, 정책집행, 현장성

# | 차례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6
제2장 지방분권과 대도시정책 .....	11
제1절 지방분권이론과 헌법적 보장 .....	11
1. 지방분권 이론에 대한 서설적 이해 .....	11
2.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	20
제2절 대도시 정책과 대도시 특례 .....	26
1. 대도시의 정의 및 대도시 정책 .....	26
2. 대도시 특례에 대한 논의 .....	30
제3절 기존 연구의 평가 .....	45
제3장 수원시 시·구 기능분석 .....	51
제1절 수원시 현황 .....	51
1. 수원시 개괄적인 현황 .....	51
2. 수원시의 기구표: 시-구-동 .....	53
3. 시(본청)-구-동 기능 및 사무 일반 .....	56
제2절 수원시 시·구의 기능분석 .....	66

1. 시·구 기능분석 개요 .....	66
2. 시·구 기능분석 .....	66
제3절 수원시 시·구의 기능분석 평가 .....	84
1. 시·구 기능분석 문제점 .....	84
2. 시·구 기능(사무배분) 개선방안 .....	85
제4장 외국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	89
제1절 일본의 지정시 행정구 기능 및 사무 .....	89
1. 일본의 대도시 특례 일반 .....	89
2. 지정시와 구의 사무배분 .....	94
3. 일본사례 시사점 .....	97
제2절 우리나라 타 대도시 행정구 기능 및 사무 .....	99
1. 성남시 .....	99
2. 고양시 .....	103
3. 성남시, 고양시 사례의 함의점 .....	106
제5장 수원형 시·구 기능분배 모형 도출 .....	111
제1절 기능배분의 기본원칙 및 모형도출 .....	111
1. 민주성과 효율성 .....	111
2. 정책성격과 업무범위(성격) .....	112
제2절 시·구 기능배분 모형창출 .....	114
1. 시·구 기능배분 모형 .....	114
2. 시·구 기능배분 프로세스 .....	116
제6장 수원시 행정구 기능강화 방안 .....	121
제1절 기능재조정 대안 1 .....	121
1.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	121

2. 구청에서 본청으로 이관할 기능 .....	138
제2절 기능재조정 대안2-인터뷰 요약 .....	143
1. 사무특성에 따른 조정 .....	143
2. 기관별 기능 조정 .....	151
제3절 기능(사무)별 기능 조정-인터뷰 상세 .....	154
1. 구로 이관 필요한 사무 .....	154
2. 시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시와 구의 업무조정 필요) .....	181
3. 구청내 기능조정 .....	189
4. 구와 동의 기능조정 .....	194
5. 기타 .....	196
제4절 기능배분 외 행정구 기능강화 방안 .....	197
1. 대도시 행정구의 역량강화 방안 .....	197
2. 대도시 행정구의 역량강화시 고려사항 .....	198
제5절 수원형 모형의 추진로드맵 .....	200
참고문헌 .....	203
[부록 1] 사이타마시 중앙구의 세부 업무 .....	209
[부록 2] 성남시 분당구 조직 및 세부업무 .....	213

## | 표차례 |

〈표 2-1〉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 .....	29
〈표 2-2〉 50만 대도시 현황 .....	31
〈표 2-3〉 광역시와 대도시 구, 인구 비교 .....	33
〈표 2-4〉 대도시 특례 일반규정 .....	34
〈표 2-5〉 조직, 인사, 재정, 사무 등에 대한 대도시 특례 .....	35
〈표 2-6〉 대도시 사무 특례 일반규정 .....	36
〈표 2-7〉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50만 이상의 대도시 사무 .....	36
〈표 2-8〉 개별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	38
〈표 2-9〉 「지방분권법」 41조의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 .....	39
〈표 2-10〉 도시규모에 따른 실·국 설치기준 .....	41
〈표 2-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에 대한 규정 .....	42
〈표 2-12〉 지방재정 특례에 대한 규정 .....	44
〈표 2-13〉 행정구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46
〈표 3-1〉 수원시 인구 변화 추이 .....	51
〈표 3-2〉 수원시 구별 현황 .....	53
〈표 3-3〉 구의 조직 .....	55
〈표 3-4〉 행정계층별 권한배분 현황 .....	57
〈표 3-5〉 시-구-동의 업무분장 .....	58
〈표 3-6〉 시-구-동 업무(계획설정-실태조사-접수) .....	68
〈표 3-7〉 시-구-동 업무(구의 전달기능의 특징) .....	72
〈표 3-8〉 시-구-동 업무(구의 전달기능의 폐지여부) .....	73
〈표 3-9〉 서비스 규모 혹은 서비스 대상에 따른 업무 배분 .....	75
〈표 3-10〉 기타 시-구간 중첩사무 .....	78

〈표 3-11〉 시의 사무인테 구에서 처리하는 사무 .....	79
〈표 3-12〉 구의 사무인테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	80
〈표 3-13〉 민원인이 시(본청)사무인테 구청사무로 착각하는 사무 .....	81
〈표 3-14〉 민원인이 구청사무인테 시(본청)사무로 착각하는 사무 .....	82
〈표 3-15〉 기타 민원인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무 .....	83
〈표 4-1〉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의 특징 .....	90
〈표 4-2〉 정령지정도시의 목록 .....	91
〈표 4-3〉 정령지정도시의 사무 .....	92
〈표 4-4〉 사이타마시 본청 기능 및 업무 .....	95
〈표 4-5〉 사이타마시와 지바시 구의 조직과 사무내용 .....	97
〈표 4-6〉 수원시 구청 안전건설과와 성남시 분당구 관련 업무 비교 .....	100
〈표 4-7〉 수원시 구청과 성남시 분당구 조직 및 기능 비교 .....	101
〈표 4-8〉 성남시 분당구 조직편제 .....	102
〈표 4-9〉 수원시 구청과 고양시 일산서구 조직 및 기능 비교 .....	104
〈표 4-10〉 고양시 일산서구 조직편제 .....	105
〈표 5-1〉 사무배분 원칙 .....	112
〈표 5-2〉 BRM-수행과정 기준 .....	116
〈표 5-3〉 시(본청)-구청간 기능재조정 기준 .....	116
〈표 6-1〉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기획조정실 .....	121
〈표 6-2〉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일자리경제국 .....	122
〈표 6-3〉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복지여성국 .....	123
〈표 6-4〉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문화교육국 .....	125
〈표 6-5〉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환경국 .....	127
〈표 6-6〉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도시정책실 .....	131

〈표 6-7〉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안전교통국 .....	134
〈표 6-8〉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전략사업국 .....	137
〈표 6-9〉 시청으로 이관할 기능: 구청 .....	138
〈표 6-10〉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	143
〈표 6-11〉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관할 기능 .....	147
〈표 6-12〉 구청내 기능조정 .....	149
〈표 6-13〉 구와 동사무소간 기능조정 .....	150
〈표 6-14〉 기타 구업무 기능조정 .....	150
〈표 6-15〉 공동주택관리 업무 중 구 이관가능한 업무 .....	158
〈표 6-16〉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무분장 .....	166
〈표 6-17〉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관련 새로운 업무분장안 .....	166

## |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체제도 .....	7
〈그림 2-1〉 지방분권의 방식 .....	14
〈그림 3-1〉 시(본청) 조직도 .....	53
〈그림 5-1〉 사무배분 기준 매트릭스 .....	113
〈그림 5-2〉 시-구간 기능배분 모형 .....	115
〈그림 6-1〉 구청 이관 업무 추진로드맵 .....	201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도시에서 창의력 발현되고 지역공동체가 연대하며, 시민권 실현됨(벤자빈 R. 바버, 조은경·최은경 역, 2014)
  - 도시가 변화의 동인이 되어야 함
  - 근래의 국민국가는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크고, 중앙집권화 된 전 지구적 힘을 견제하기에는 너무 작음
  - 뉴욕시장 블룸버그(Michael Rubens Bloomberg)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때 실행은 도시단계에서 이루어짐” 이라 함
- 도시환경 변화와 함께 하부행정기관 개편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하부행정기관 개편에 대한 주요논점(경기개발연구원, 2009; 최용환, 2010 재인용)
    -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현행 동행정구역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행정계층간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계층 축소 필요
    - 행정계층간의 기능배분 도모
  - 계층구조 개편방식보다는 현재의 조직과 행정계층을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적절한 기능배분 등에 의한 점진적 개편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방행정체제 재구조화 방향임(안영훈·신현기, 2009)
    - 지방행정 계층수가 많고 적음이 곧바로 지방자치의 장단점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Morgan, 1997: 129; 심익섭, 2001: 12 재인용)
- 지방분권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인 수요자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여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행정체제 필요

- 특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대도시 특례 확대
-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광역시 차별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시 제도를 도입하여 광역시에 준하는 기능 배분(최용환, 2010: 8)
- 구(區)는 지방행정체제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법상 그리고 행정체계상 다른 모습을 보임
  - 자치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구)가 있음
    - 자치구는 광역시 산하에 있는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임
    - 행정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소속된 하부행정기관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구 설치 가능함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15개의 대도시에 행정구 설치 운영
- 50만, 100만 대도시 특례 확대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사무 확대과정에서 행정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 15개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12개 도시에서 35개의 행정구 운영
    - 행정구가 설치된 12개 대도시의 총인구 9,995,740명(2016년 4월 기준)
    - 행정구의 수 35개로 광역시 자치구 69개보다 작긴 하지만 평균인구수는 자치구 325,066명, 행정구 285,593명으로 그 규모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대도시 행정구는 광역시의 자치구만큼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
  - 대도시가 갖는 특성 안에서 행정구가 갖는 의미와 행정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필요
  -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성격을 보이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의 효율화와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 기능강화 방안 모색
  - 행정구 기능강화방안은 사무배분 즉, 기능조정부터 시작됨
  - 기존 사무배분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관계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행정구라는 특수한 행정계층이 존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본청과 행정구 간의 기능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대도시 사무특례에 따른 제도의 지속적 개선, '15년 책임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범실시' 및 '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시와 구 그리고 구와 동 조직모델 개발 필요

## 2. 연구의 목적

-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대도시로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구청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시와 행정구 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기능 부담과 함께 시와 행정구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체계 정립이 필요
- 시와 행정구간의 기능배분은 시 또는 행정구가 수행하는 기능이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
  - 시와 행정구의 기능배분은 각각에 기능을 분담시켜 그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 행정구에 기능을 위임 혹은 이관함으로써 행정구의 능력 함양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제고, 시민 편익증진 제고
- 시와 행정구간 기능배분 시 시의 기능집중에 따른 장단점 존재
  - 장점
    - 행정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높임
    -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최적화
    - 대규모의 광역적인 사업 추진
  - 단점
    -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화의 폐단을 초래할 우려
    - 시 본청의 업무 부담을 과중시킴으로 행정능률 저하
    - 행정구역의 확대로 자치의식이나 공동체의식 희박, 민주통제 약화, 관료주의의 전제적 경향 초래
-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행정기능 변화에 따른 행정구의 기능 재정립 방안 도출
- 수원시 본청과 하부행정기관인 행정구간 적절한 기능배분 모색을 통해 행정구의 기능 강화 도모
  - 행정구 기능배분 기준 및 모형 도출

- 본청과 행정구의 기능분석을 통한 기능 재조정
  - 본청과 행정구의 직무분장표(직제상 기준, BRM 기준) 분석, 시청과 구청의 업무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리가 필요한 기능 목록 추출
- 본청과 행정구간 기능 조정, 행정구 내부에서 기능 조정, 구와 동 관계에서 기능조정 등의 기능(과제) 도출
- 궁극적으로 100만 대도시로서 수원시의 행정역량을 강화시킴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 실현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지방분권 패러다임의 변화
  - 최근 지방분권 현황분석(15년 대도시 사무특례 122건 확정사무 등)
    - 50만 특례 99건, 100만 특례 23건
  - 시·구·동 기능 분석
  - 수원형 시·구·동 기능배분모형 도출
  - 수원형 모형 추진 로드맵
  
- 연구대상
  - 수원시-본청과 구청
    - 수원시는 하부행정기관으로 4개의 행정구 운영
    - 동은 구청과의 관계에서 검토
  - 기능분석
    - 본청과 행정구의 전체 기능
      - 수원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 즉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모두를 포함
      - 정책결정, 정책집행, 행정지원 기능에 해당하는 사무 분석
      - 업무분장표상(조직도상) 업무를 기준으로 각 조직의 업무 현황 파악
      - BRM 6단계에서 세부적인 업무분장 파악

## 2. 연구방법

### □ 문헌분석

- 이론 및 제도분석

### □ 국내외 유사 도시와 비교분석

- 국외는 차등적 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지정시에 해당하는 사이타마시, 지바시를 대상으로 함
  - 일본의 지정시는 우리나라 대도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지정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의 업무분석 통해 시사점 발굴
- 국내는 수원시와 유사한 규모와 행정구를 가지고 있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함
  - 국내 비교도시는 구체적인 기능 조정과정에서 참고사례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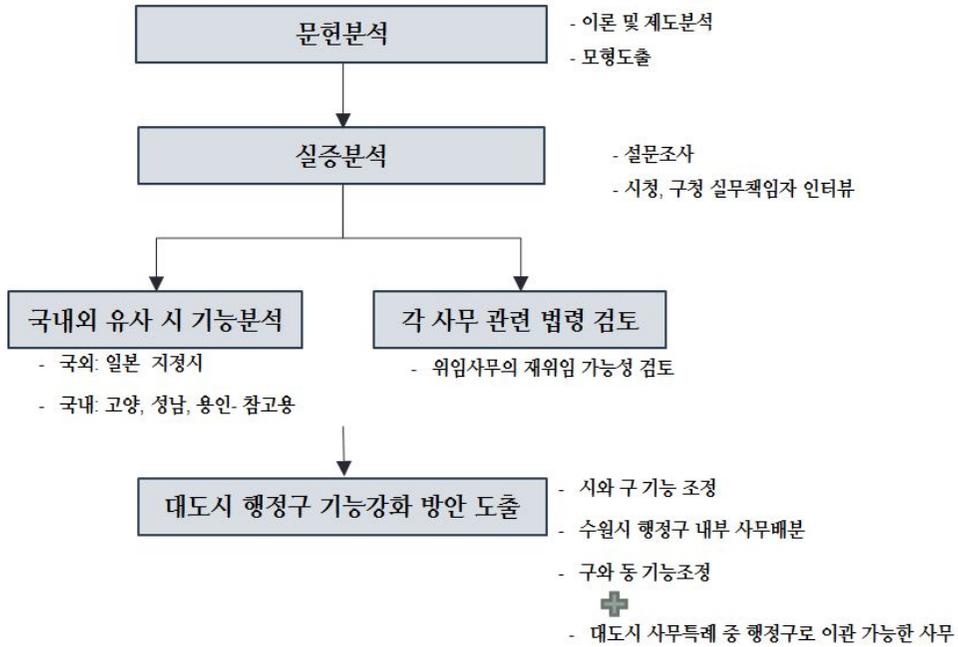
### □ 실증분석

- 현재 수원시의 기능과 사무 부서별 사업단위 확인
  - 조직표에 나타난 사무,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에 나타난 본청-구청-동간의 기능배분
    -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경기도 사업 중)
    -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 BRM의 5~6단계에서 기능 파악
- 시, 구의 실무 책임자(과장)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실시

### □ 연역법과 귀납법을 동시에 적용

- 연역법: 사무배분의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혹은 지방자치의 원리들을 근거로 사무배분의 기준과 논거를 설정함

- 귀납법: 연역법을 통해 도출과 기준과 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수원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구에 위임 가능한 사무와 구에서 이양받기 원하는 사무 조사 및 현실에 적합한 사무 발굴
- 급속한 노령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도시 특례확대에 맞물려서 대도시 행정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발굴 및 기능강화 방안
  - 대도시 사무특례 대상사무 중 구로 이관 가능한 사무
  - 환경변화에 새롭게 요구될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주민수요에 대한 대응성 높이고 이를 통해 구의 행정기능 강화 방안 모색



〈그림 1-1〉 연구체계도



## 제2장

# 지방분권과 대도시정책

---

제1절 지방분권이론과 헌법적 보장

제2절 대도시 정책과 대도시 특례

제3절 기존 연구의 평가



## 제2장 지방분권과 대도시정책

### 제1절 지방분권이론과 헌법적 보장

#### 1. 지방분권 이론에 대한 서설적 이해

##### 1) 지방분권의 개념과 기본이념

-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주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임
  - 지방분권은 국가 혹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지방자치의 출발이며 근본이념임
    - 분권 없는 자치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생성될 수 없음(강용기, 2014; 이병훈, 2004)
    - 지방자치에서 요구되는 두 가지 요소: 자치(autonomy)와 분권(decentralization) (이병훈, 2004)
-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이양되어야 함
  - 지방분권과 자율성은 불가분의 관계로 중앙의 권한이양정도에 따라 자율성도 달라짐(이달곤 외, 2012).
  - 분권화를 통해 지역의 개성이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 사업 진행, 사회 환경의 변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 다양화에 적절한 대응(김상태, 2013)
- 분권화란 용어는 매우 다의적인 것으로 조직내적 현상으로서의 분권, 조직간 관계로서의 분권, 이데올리적 측면에서의 분권, 과정 혹은 결과로서의 분권 등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됨(Conyers, 1984, 김영철, 1985)
  - 공통적인 속성: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 (김익식, 1990b: 1377)
- 지방분권 개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매우 다의적이고 때로는 혼란 초래(Fesler, 1965)
  - 지방분권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지리적 배분, 특히 정부 계층구조 상에서 권력의 지방화(localization of power)(Maass, 1959)를 의미하는 바, 권력 현상으로(김익식, 2006), 지방분권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지 사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여 배분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권, 인력, 재원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로 귀착됨(김상태, 2013: 278)

---

 학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정의
 

---

- UN(1962): 지리적 토대위에서 권한이전(the transfer of authority on a geographic basis)
    - 중앙정부의 일선기관단위로의 권한 위임에 의하거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에 의해 이루어짐
    - decentralization=devolution(분권)+deconcentration(분산, 탈집중화)
  - Conyers(1984):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전되는 정부구조상의 변화(transfer of power from the centre to subnational levels)
  - Fesler(1965): 지리적인 토대위에서 권한이양
  - Smith(1985): 국가의 지리적 계층구조 상에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
  - 강용기(2014): 공간차원에서 권력 분산, 국가 혹은 중앙에 집중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
    - 정책결정 권한이양→정치적 분권 또는 민주적 분권
    - 권한이양과 구분 필요: 지방분권은 권한이양처럼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사안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의미함
  - 김영철(1985): 조직 내 분권과 조직간 분권 중 조직간 분권에 해당함
    - 통치 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위임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지칭
  - 김익식(1990b, 200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배분의 상태
    - 지방분권은 권력현상으로 국가권력이 분산되는 ‘정도’ 와 권력분산이 이루어지는 ‘제도 및 과정’ 의 의미 내포됨
    - 지리적 분권(devolution,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지방정부에게 포괄적 기능을 이양)과 기능적 분권(deconcentration, 기능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정부 또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제한된 기능을 위임)이 있음
  - 이달곤 외(2012): 지방분권은 권한이양의 형태로 중앙집권 개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하거나 그러한 권한이전이 이루어진 결과, 지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이 이전된 정도 의미함
  - 정창화 · 한부영(2015)
    - 지방분권화란 지방자치를 통하여 중앙의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한 차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적인 행정단위를 중앙과 병존하는 의사결정의 중심체를 형성케 함을 의미함(과정으로서의 지방분권)
- 

## □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민주성과 효율성

- 집권과 분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
- 적절한 수준의 집권 내지는 분권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함께 증진(김익식, 2006)
  - 적절한 집권 혹은 분권 수준이 각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에 있어서도 시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국에 적합하고, 적절한 분권 수

준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법령상의 이념: 국정의 통일성 확보와 함께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 3조에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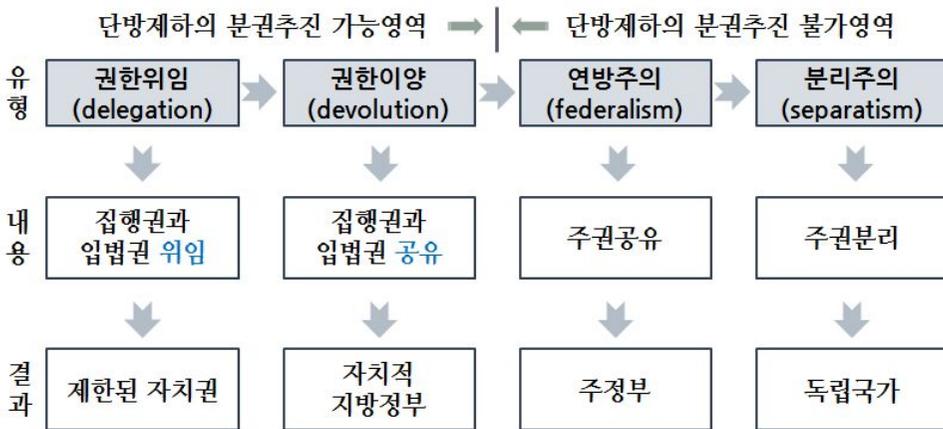
제3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자주성 고양을 통한 지역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체제 확립
  -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게 주민에 의해 자율적이고 다양하게 수립·집행
- 지방분권의 필요성(김택수, 2003: 15-16)
- 지역혁신의 확산
    - 지방분권은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창조와 혁신의 확대 재생산 가능하게 함
    - 지방분권은 지방스스로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임
  -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
    -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주민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결정권이 지방정부에 있어야 하고, 그 결정이 주민의 참여로 달라질 수 있어야 함
    - 시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 자치제도의 다양화와 책임성 확보
    -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의 여건 및 주민의 취향 등에 따라서 지방문제에 대한 자율적 결정과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 지방분권은 창조와 경쟁의 바탕이 되는 다양화의 기본조건임

- 자기책임성은 어떤 문제를 지방정치 혹은 지방행정의 과제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 설정된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포함함

## 2)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 지방분권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
  - 가장 초보적인 권한위임부터 권한이양, 연방주의, 독립국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이달곤 외, 2012)
  - 단방제 국가와 관련된 것은 권한위임과 권한이양
    - 권한위임: 초보적인 형태의 지방분권방식으로, 자율성이 제한되어 수입자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높지 않고 지방정부는 자치권을 갖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적 지위에 머무름
    - 권한이양: 위임과 달리 법률적으로 하위정부에게 정책결정 및 집행 권한과 더불어 책임까지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한이양의 범위가 집행권에서부터 법률제정권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함



자료: 이달곤 외(2012) 그림 3-1 재인용.

〈그림 2-1〉 지방분권의 방식

- 지방분권은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및 인사권, 지방재정권을 통해 실현됨(김택수, 2003; 이병훈, 2004)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방자치행정의 구조적 요소이자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임
- 자치조직 및 인사권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사에 대한 권한 → 조직권은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 국, 본부 및 과, 담당관의 설치기준과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적인 다양성과 특수성을 살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함
- 자치재정권
  - 지방분권 정도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 지방자치 실시의 본질적 목적 성취 불가

### 3) 지방분권이론

- 지방분권이론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활용되는 이론임 즉, 분권화이론은 분권화의 원인과 조건 그리고 결과 또는 효과에 대해 해답을 추구하는 것(김익식, 1990b)
- Althusius(알투스우스)<sup>1)</sup>의 연방주의와 주권분할론
  - 근대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인간의 자연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강제적 틀로 인식
  - 16, 17세기 연방주의 전개와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구성으로 이어짐

#### [참고] 연방주의(federalism)

- 연방주의 개념규정이나 의미에 대해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음

1) Johannes Althusius(1563-1638)은 근대연방주의의 아버지로, 그에 대한 시각은 다양한데, 첫 번째 기여케(Otto von Gierke)는 자연법적 사상을 강조하여 사회계약론과 국민주권의 이념에 입각한 국가이론의 사상가로 보았고, 볼프(Wolf)는 켈빈 신학의 세속적 대변자로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프리드리히(C.J.Friedrich)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신분제적 입헌구가의 사상가로 보았다(김영일, 2002: 280; 김석태, 2016)

○ 연방주의

- 유럽사회의 분권적 질서에 기초한 자연적 공동생활을 모색, 이를 연방주의라는 이름으로 체계화 함
- 연방주의는 정치적 맥락보다

- 연방주의라는 용어는 그것을 규정지우는 어떤 보편적 규범 혹은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
- 오늘날 연방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와의 연결성 속에서 지방정부를 가진 정치체제로서 이해되고 있음

출처: 김영일(2002)

- 사회구성 혹은 조직의 원리로서 이해됨
  -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한 그 공동생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기 결정성의 이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함
  - 보다 작은 단위체 혹은 결사체들의 자율성을 보다 크고 상위에 있는 결사로부터 보장하고, 이를 하위 단위체들의 활성화를 통한 상위 혹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이념적 특징 지님(김영일, 2016 재인용)
- 연방주의의 기본원리: 보충성 혹은 보완성(subsidiarity)의 개념과 아래로부터 위로의 보다 광역의 생활공동체의 집적(김영일, 2002)
  - 최소의 단위 공동체로부터 보다 광역 공동체로의 유기적인 확대, 발전과정으로 하위 공동체들은 보다 광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지만, 하위 공동체들은 그 스스로의 독립성을 잃지 않음
  - 광역 공동체들은 생활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하위 공동체들의 발전에 따른 확장과 필요의 산물임 → 이로부터 상위공동체는 내적 다양성과 외적 일체에서 특징을 지님
  - 새로운 공동생활의 틀: 자유 도시들의 연합
- 국가: 공적 공동체들의 집적 최고 단계로 영토적 단위에 기초한 지역적·특수적 공동체들에 대비되는 보편적 공동체

□ 보충성의 원칙<sup>2)</sup>

2) 보충성 원칙 개념정의에 대한 네 가지 시각 존재하는데(정창화한부영, 2005 재인용), 탈중앙집권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입장, 사회철학적(socio-philosophical) 시각, 유럽공동체(EC) 조약 제5조에 규정된 시각, 민주국가의 법원칙과 관련된다는 시각이 그것임. 첫째, 탈중앙집권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충성이란 더 큰 단위는 그것을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가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사회철학적(socio-philosophical) 시각에 따르면, 보충성의 원칙은 더 크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가 더 작고 더 낮은 수준의 사회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사무를 담당하는

- Althusius에 의해 도출된 보충성(보완성)의 원칙은 훔볼트(Whihelm von Humboldt, 1767-1835)에 의해 지방자치, 지방분권 근거로 중요한 원칙이 됨(김석태, 2016, 정창화·한부영, 2005 재인용)
  - 국가권력 제한 및 지방자치와 관련된 3대 원리: 보충성의 원칙, 분야별 주권, 시민사회(시민성)(김석태, 2016 재인용)
    - 보충성: 자연적인 단위인 개인·가족·지역사회가 인위적인 단위인 정부를 우선해야 함
    - 분야별 주권: 교육 등의 분야가 고유의 영역 안에서 최고성을 인정해야 함
    - 시민성: 국가와 사회의 분리와 국가권한의 제한, 시민들의 거주이전이나 피투표권을 갖는 것을 의미함
- 보충성 원칙이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적용되기 위한 조건(김석태, 2016)
  - 지방주권 등 하위단위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함
  - 지방이 보충성 원칙 적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 참여와 이니셔티브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함
  - 지방의 선호가 존중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부권(veto power)이 인정되어야 함
- 보충성의 원칙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제시됨

---

것은 부정이요, 심각한 해악이요, 올바른 질서에 대한 방해임을 의미함. 셋째, 유럽공동체(EC) 조약 제5조에 규정된 시에서 보면 공동체(국가)는 이 조약에서 부여받은 권한과 할당받은 목표의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함. 따라서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영역에서 공동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제안된 행동의 목표를 회원국들(지방)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따라서 제안된 행동의 규모나 효과에 의하여 공동체(국가)가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무 및 권한 배분과 관련하여 상위조직의 관여는 하위조직이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정당화됨과 관여는 제한된 범위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의미함. 넷째, 민주국가의 법원칙과 관련된다는 시각으로, 민주국가의 법원칙 중의 하나는 수직적 또는 수평적 축으로 권한을 분리 및 분할하는 것-권력의 분할이 자유를 가장 잘 보호하는 것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권한배분은 견제와 균형체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며, 중앙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어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함.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표현된 지방분권화와 정치적 지방분권(devolution)은 지방적 수준에서의 행동과 책임을 강화시키는 주요한 헌법적 근거가 됨.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함(김택수, 2003)
  -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증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공공기능을 배분해야 함(김택수, 2003)
  -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에 따른 차등 이양이 바람직함
    - 대도시특례의 근거가 됨
  - 우리나라 보충성 원칙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 10조 3항의 단서 조항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사무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규정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에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연방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은 개별지방과 지역들의 독자성을 대변하는 이론적 근거가 됨(김석태, 2016)
    - 인간다운 삶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의 질서: 보충성과 연방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분권적 사회의 구조로 인식
- 공공선택론에 입각한 재정분권론-Tiebout의 발로하는 투표, Oates의 재정연방주의
- Tiebout(1956)는 지방정부만 존재, Oates(197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에 관심
  - Tiebout(1956)의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feet)
    - 주민의 지역 간 이동(mobility), 지방정부간 경쟁(competition), 발로 하는 투표로 인한 주민선호의 표출(voting with feet)(김정훈, 2015)
      - 순수공공재는 시장적인 매커니즘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공공재의 경우 지방정부가 여러 개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고 주장
      - 다수의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과 지방세부담을 일치시켜서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면, 시장에서처럼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음

-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분권체제에서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하고, 최소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주민들의 행위는 공간이동 형태로 나타남
-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며, 각 지방정부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 주민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가 필요한데, 선호가 이질적이면 이질적일수록 많은 지방정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이질성을 바탕으로 작은 구역의 지방정부가 바람직함(김석태, 2015)
- 지방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효율적이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함
- Tiebout의 이론은 직접적으로 분권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시장과 같이 분권화된 체제를 전제로 함(김석태, 2015)
- 비판 및 문제점
  - Tiebout의 주장은 가설에 지나지 않음.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 주민의 실제적인 공간이동에는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의 여러 제약이 따름 → 공공서비스에 대한 조세 탄력성이 낮음(김익식, 2006)
    -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혜택과 지방세 부담이 일치하지 않음
- Oates(1972, 1979)의 재정연방주의
  - 내용
    - 분권체제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 중앙정부는 국세를 걷어 국가공공재를 공급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걷어 지방공공재 공급. 중앙정부의 일은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정부의 일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김정훈, 2015)
    - 정부 간 이전재원이 각각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결
  -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제공주체는 개별 지역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주민의 전체 만족도는 항상 증가함

■ 비판 및 문제점

-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선호도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할 경우 ‘분권화의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는 그 타당성을 잃게 됨(김익식, 2006) → 지역별 서비스 제공은 불필요한 추가 경비만 소요될 뿐 실제로 효율성은 제고되지 않음
- 지방정부의 자율적 지방세 세율 운영의 현실성 부족
  -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세 세율을 사실상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세수공유(tax sharing)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재정연방주의 이론은 실재를 설명하지 못함(김정훈, 2015)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과 권한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 지방분권이론 평가

- 집권과 분권에 관한 규범적 이론들은 비교적 많으나 실제적으로 증명된 경험이론은 매우 드뭄(김익식, 200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현실의 지방분권이 아니라 이론모형에서 도출한 이념형이라 하더라도 지방분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 Tiebout와 Oates의 재정적 연방주의는 최근 Ostrom과 그 동료들(Ostrom et al, 1961)의 다중심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 논의로 확장됨

2.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서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
  -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라 규정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정의

## [ 헌법 ]

## 제8장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에 의한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통설적 입장: 제도적 보장설)<sup>3)</sup>과 문제점

○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강화라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됨(김상태, 2013: 281)

■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분권을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구체화의 문제로 헌법규정을 지방분권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 보장의 문제점 및 한계: 헌법보장의 모호성

■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소한 현행 헌법상에서 지방분권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김상태, 2013)

■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위한 근간적인 부분, 즉 지방자치의 사무에 관한 규정,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관한 선거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정도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하고 있음(김상태, 2013).

3) 제도적 보장설에 따를 때 지방자치는 전국가적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법질서에 의해 제도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입법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방자치의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위반이 되므로 이러한 침해로부터 보호됨(이재희, 2016)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제도적 보장으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입법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인하여 그 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形骸化(형해화) 되는 것으로부터 헌법상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입법권자가 헌법질서 내에서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지방자치제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으로써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입법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이라고 파악되는 부분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의 논의에서 침해여부의 기준이 되는 본질적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김상태, 2013: 281).

-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 대부분을 법률유보사항으로 하고 있어(김상태, 2013; 고문현, 2010), 지방자치권의 실현정도와 보장수준은 입법권이 제정된 실정법령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준수될 수밖에 없음
  -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자의 지방분권의지 약화, 중앙의 존적 재원구조 등을 이유로 성과를 올리지 못함
- 헌법규정의 구체적 한계: 법률선점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사무권한의 불분명, 소극적 자치재정권 보장 등의 문제
- 법률선점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제한
    - 「헌법」 제 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이하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에서 ‘법령’ 과 ‘범위 안에서’ 에 대한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법령의 범위를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써 조례제정을 제약하여 지방자치권 심각하게 훼손하고(김상태, 2013; 이재희, 2016)<sup>4)</sup>, 범위 안에 대해 법령우위로 해석함
    -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령 통해 자치입법권 제한가능(김상태, 2013)
      -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게 되면 조례는 이를 위반할 수 없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 규율 설정 가능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적 단위의 주민대표기관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법리가 그 배경에 깔려 있음(김상태, 2013)
  - 지방자치단체 사무권한의 불분명
    - 「헌법」 제1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규정

4)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 법령의 범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입법되는 형식적인 법률과 「헌법」 제75조,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된다고 함(이재희, 2016)

- ‘복리에 관한 사무’에 관한 해석
  -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치단체의 핵심적 사무의 한계를 판단하기 어려움
    - 제117조 1항의 규정만으로는 입법자가 특정 사무를 국가사무로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
    - 현행 헌법 하에서 어떠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게 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실질적으로 국가,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게 되는 결과 초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함(김상태, 2013)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최소한 보장
  - 글로벌 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집권 논리와 지역 사회의 다양성과 정치의 민주화를 배경으로 하는 분권 논리와 상충성을 가짐(박상우, 2016)
  - 「헌법」상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범위
    - (헌재 2006헌라6)에 따르면 헌법학적으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제외한 주민복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 즉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인정해야 하고, 국가로부터 자율성과 배타성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지방자치에 대한 정신으로 해석됨(박상우, 216)
- 소극적 자치재정권 보장
  - 「헌법」 제1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관리 규정
  - 재산관리권의 광의적 해석: 재산권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 + 세수 확보 권한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재정권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김상태, 2013: 285)



보호 및 평가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해석 필요(정재황·선정원, 2006; 박상우, 2016 재인용; 이재희, 2016: 32)

- 제117조 해석: 보충성의 원칙 적용을 고려하여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재희, 2016)
-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자치입법권 보장’ : 법령의 무제한적 규율영역 선점 및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근거조항이면서 자치입법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치입법권 제한의 한계 규정한 것으로 해석(이재희, 2016)

## 제2절 대도시 정책과 대도시 특례

### 1. 대도시의 정의 및 대도시 정책

#### 1) 대도시의 정의

- 대도시라는 용어는 20세기 들어 산업화와 함께 도시가 팽창하면서 등장함
- 대도시에 대한 통일된 개념규정은 없고 인구규모와 함께 시대 상황 및 지역, 법적 제도적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상대적임(심익섭, 2012; 최용환, 2010)
  - 인구규모나 법적 기준에 따라 정의됨
  - 우리나라: 대도시의 명칭이 인구규모나 법적 기준에 따라 정의됨
    -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명이상 도시
      -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75조, 동법 시행령 118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의 중소도시와 구분하기 위해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에 붙여진 상대적인 개념으로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김병국·권오철, 2005)
      - 행정관례상 광역시 설치기준으로 100만 이상을 고려한다면 인구수가 50만 이상 100만 미만으로 광역시와 일반 중소도시의 중간형태의 시(최용환, 2010: 2)
      - 그러나 최근 광역시가 아닌 100만 이상 대도시가 나타남

####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도시의 지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여러 방식 존재
  - 기존에 소속되었던 단위에 두는 방식: 일반시로 운영
  - 소속된 단위에서 독립시켜 이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해주는 방식: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로 운영
  - 기존에 소속되었던 단위에 두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주는 방식: 특별시, 지정시 등-법률상 용어가 아님
  
- 대도시는 공간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소규모 시와 다른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됨(김원, 1990)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일반시·군과 차별화된 특징(이상윤·이종수, 2004: 77-80)
    - 대도시일수록 제한된 면적에 인구 집중, 단위면적당 인구비율이 높아 교통, 주택, 쓰레기 등의 도시문제 심각→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직제 변경가능한 자치조직권 확충 시급
    - 대도시 인구의 단위면적당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 상하수도, 교통, 도시계획, 사회복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비중 높음→기능배분과 함께 자원 재배분 필요, 기능적인 독립성 유지 필요
    - 대도시일수록 지역개발기능이 중시됨→시·도의 경유과정 생략으로 신고한 집행 가능
    - 이익집단이 사회적 성격 등에 따라 특례 인정 필요성→다양한 계층의 인구로 구성된 이질적인 2차집단 성격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와 개별적 욕구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 요청됨

- 경쟁력있는 대도시 육성을 위한 특례 인정 필요→지역단위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대도시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 주민편의제공 위한 대도시 특례→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및 민원 절차 간소화

## 2) 대도시행정의 특징(김익식, 1990a; 김원, 1990)

-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자율성, 신속성 요구
  -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소도시와는 다른 법적 지위 필요로 함
  - 대도시는 도에 필적하는 행·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시와 같이 중간계통인 도의 지휘감독을 거쳐 행정결정을 하는 것은 대도시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도와 대도시간 이중행정·이중감독의 폐해 나올 수 있음
- 형평성 확보
  - 대도시의 경우 고용구조가 다양함에 따라 소득계층의 다양화와 함께 소득 격차가 나타남
  - 주택, 교통, 환경, 복지 등의 행정수요 증대와 함께 일선행정의 대민봉사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 등에 행정력 집중이 요구됨
- 광역행정 대두
  -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화진행. 교통, 통신 및 산업성장이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와 가져오는 것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인구·산업유출현상에 영향을 미침
  - 기존의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도시행정 필요

## 3) 우리나라 대도시정책의 특징

- 개요
  - 2010년까지는 대도시 특례 정책이라기보다는 지방행정계층 구조의 확립-침체-부활의 과정 속에서 지방분권이 논의되었으며, 도시는 국가경제개발

의 지리적 요충지 육성 차원에서 논의됨(박상우, 2016)

-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등 7개 법률에서 50만 이상 사무 특례를 규정, 법적 기능 부여
  - 2010년부터 도시의 행정계층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더하여 도시로서 지역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과 관련 정책 마련하기 시작함
- 대도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시 특례제도, 광역시 특례제도, 대도시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 특례제도
- 1970년대 후반 이후 대도시에 대한 특례 부여 논의 시작됨

〈표 2-1〉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

학자	논의
신종순 (1979)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 지위를 높여 사무배분 또는 권한, 나아가 재정상 특례 부여 주장(권한상의 특례, 재정상의 특례) - 도시의 발전이 그 법적 지위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다른 발전의 요인에 영향을 미쳐 발전 더욱 촉진, 반대로 도시의 인구와 능력에 상응한 법적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발전을 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김원 (1990)	50만 이상의 도시는 보통시와 직할시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 대도시가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 인구면에서는 도에 뒤지지만 경제 및 재정적 기반에서는 도와 버금감
김순은 (2012)	행정수요에 비해 열악한 행정여건으로 대도시 서비스 문제 발생 - 주택, 실업, 빈곤, 도로 및 항만 등의 사회인프라, 쓰레기, 상하수도, 교육, 오염 등의 행정수요 증가 → 도시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필요

-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 특례제도 법적으로 규정
  - 대도시의 행정서비스 수요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 특례 인정
    - 1990년대 「지방자치법」에서 이러한 논리 바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 규정 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에 대도시의 사무배분 특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3]에 도의 사무 가운데 인구 50만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예시함
-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32조~36조(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43조)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규정함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도시 특례 발굴 등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2. 대도시 특례에 대한 논의

### 1) 50만, 100만 대도시 현황

- 2016년 현재 기준 대도시 특례 대상이 되는 대도시 수는 15개임
  - 이 중 9개는 경기도에 속하고, 경상남도 2개, 경상북도 1개, 전라북도 1개, 충청남도 1개, 충청북도 1개의 분포를 보임
  - 50만 대도시(12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김해시, 포항시, 전주시, 천안시, 청주시
    - 이 중 성남시와 용인시는 90만 이상으로 100만에 가까움
  - 100만 이상 대도시(3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 수원시와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규모가 커진 경우이고, 창원시는 도농통합 등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시임
  -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이더라도 1,000 $km^2$ 인 경우 대도시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없음
    - 경북 경주시와 강원도 춘천시가 면적이 1,324 $km^2$ , 1,116 $km^2$ 으로 인구가 30만 이상 대도시 조건에 근접함
- 행정구 운영 현황
  - 1990년 3월 인구 50만명이 넘어 구(區) 제도 실시: 울산, 전주, 성남, 수원, 부천(5개)

- 15개 중 12개의 대도시는 행정구(35개)를 운영하고 있고, 3개(남양주시, 화성시, 김해시)는 행정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수원시가 4개로 가장 많은 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는 2~3개의 구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각 시의 행정구의 인구가 20만 이상이거나 20만에 육박함. 이는 일본과 비교할 때 일본의 중핵시의 기준임
    - 특히 성남의 분당구의 경우 인구수가 503,201명으로, 행정구가 대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정도의 규모임
    - 40만 이상의 행정구로는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용인시 기흥구

〈표 2-2〉 50만 대도시 현황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일반구	총인구수 (명)	세대수 (세대)	면적 (km <sup>2</sup> )	읍	면	동	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443,733	175,469	165.55			19	
		일산동구	286,318	112,157	59.94			11	
		일산서구	300,142	107,512	42.56			9	
		소계(3)	1,030,193	395,138	268.05			39	
	부천시	소사구	221,488	86,178	12.8			9	
		오정구	184,204	71,699	20			7	
		원미구	442,450	170,162	20.6			20	
		소계(3)	848,142	328,039	53.40			36	
	성남시	분당구	503,201	187,093	69.35			22	
		수정구	224,010	101,204	45.99			17	
		중원구	249,883	105,632	26.38			11	
		소계(3)	977,094	393,929	141.72			50	
	수원시	권선구	354,101	138,037	47.17			12	
		영통구	338,230	126,007	27.68			10	
		장안구	297,616	115,104	33.34			10	
		팔달구	198,894	87,643	12.86			10	
		소계(4)	1,188,841	466,791	121.05			42	
	안산시	단원구	317,456	128,634	91.51			12	
		상록구	377,571	152,571	57.99			13	
소계(2)		695,027	281,205	149.50			25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일반구	총인구수 (명)	세대수 (세대)	면적 (km <sup>2</sup> )	읍	면	동	출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49,135	125,767	21.93			17	
		만안구	247,350	97,818	36.54			14	
		소계(2)	596,485	223,585	58.47			31	
	용인시	기흥구	410,959	148,060	81.67			11	
		수지구	346,114	119,483	42.1			9	
		처인구	221,546	88,274	467.57	1	6	4	
		소계(3)	978,619	355,817	591.34	1	6	24	
	남양주시		659,445	248,948	458.1	5	4	7	1
화성시		613,091	233,168	689.7	4	10	1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182,510	76,631	240.64		4	15	
		마산회원구	212,006	83,770	90.58	1		12	
		성산구	233,286	83,916	82.2			7	
		의창구	254,849	100,424	211.17	1	2	5	
		진해구	186,392	73,015	122.68			15	
		소계(5)	1,069,043	417,756	747.27	2	6	54	
	김해시		528,749	198,708	463.36	1	6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45,837	102,437	393.94	3	4	7	
		북구	272,315	108,800	735.93	1	6	8	1
		소계(2)	518,152	211,237	1,129.87	4	10	15	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86,480	112,326	110.92			15	
		완산구	366,525	143,841	94.65			18	
		소계(2)	653,005	256,167	205.57			3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60,441	107,411	438.42	1	7	9	
		서북구	347,603	141,943	197.65	3	1	9	
		소계(2)	608,044	249,354	636.07	4	8	1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75,251	70,214	404.42		5	8	
		서원구	218,740	87,524	122.59		2	9	
		청원구	185,656	76,454	214.98	2	1	5	
		흥덕구	253,448	103,999	198.32	1	2	8	
		소계(4)	833,095	338,191	940.31	3	10	30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 2016sus 4월 기준(매월 말일자 통계 현황)

□ 광역시와 비교

○ 구의 수

- 광역시의 자치구는 69개, 대도시의 행정구는 35개로 구의 수만 보면 대도시에 비해 광역시의 구의 수가 2배 정도 임

○ 인구수

- 광역시의 인구는 230만명이고, 대도시의 인구는 117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광역시 44.77%, 대도시 22.87%임

○ 구당 평균 인구수

- 광역시와 대도시 모두 약 33만명으로 거의 유사함. 대도시의 행정구는 규모면에서 자치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이고, 행정구는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기능 수행에 차이를 보임

〈표 2-3〉 광역시와 대도시 구, 인구 비교

	구 수	인구(명)	전체인구대비 비율(%)	구당 평균 인구수(명)
광역시	69(자치구)	23,094,405	44.77	334,702
대도시	35(행정구)	11,797,025	22.87	337,058

\* 광역시 전체인구(군 포함, 세종시 제외)

\* 대도시 인구수: 전체 15개 시의 인구

## 2) 대도시 특례 일반규정

□ 대도시가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 대도시 특례인정은 도시규모에 상응한 자율권 인정, 행정효율 도모
- 행정수행범위의 확대, 행정수요의 다변화 등으로 대도시 행정의 새로운 틀이 요구됨에 따라 2004년 1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 도입됨

□ 대도시 특례 근거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 인구수 50만 이상인 도시
  - 다만, 인구 50만 이상이더라도 인구가 감소하여 연속 2년 평균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을 경우 50만 이상에서 제외됨
- 「지방분권법」은 대도시를 보다 세분화시켜 10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해서 규정함
  - 50만 대도시
  - 100만 대도시
  - 30만이면서 면적이 1천 $km^2$ 인 도시: 50만 대도시로 봄

〈표 2-4〉 대도시 특례 일반규정

관련법령	조문	내용	조문내용
지방자치법	175조	특례관련법을 등의 근거가 됨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b>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b>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18조	대도시 인정기준	법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b>인구 50만 이상 대도시</b> 는 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2년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 재개편에 관한 특별법	40조	대도시특례 일반규정 (30만 도시에 대해서도 예외적 인정)	①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b>100만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b>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b>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b> 이를 인구 50만 대도시로 본다,

□ 이외에도 개별법으로 사무, 조직, 인사, 재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50만 대도시, 10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은 조직, 인사, 사무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고,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 이외에 「건축법」 등 사무특례에 대한 개별법등이 존재함

〈표 2-5〉 조직, 인사, 재정, 사무 등에 대한 대도시 특례

분야	특례	관련법령
조직	행정구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지방자치법」 제6조
	행정기구 및 정원	「지방분권법」 제42조 제3항
	기구설치 기준 (50만과 100만 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표3
인사	보조기관의 수 (인구 100만)	「지방분권법」 제42조
	보조기관 직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 제7항 제3호, 제73조 제9항
재정	도세의 대도시 교부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도시세	「지방분권법」 제43조 1항~3항
	시군 조정교부금 특례	「지방재정법」 제29조
	시군 조정교부금 특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사무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 특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사무 특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 특례	「지방분권법」 제41조
	그 외	개별법
기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 3) 분야별 대도시 특례

□ 사무특례

-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그리고 개별법으로 사무 특례를 규정함

〈표 2-6〉 대도시 사무 특례 일반규정

법률		내용	비고
지방자치법	10조 1항 2호	① 2.시·군 및 자치구 ~다만, 인구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특례 일반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 2항	②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3과 같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특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에 관한 특별법	41조	~인구100만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사무특례

- 50만 이상 시의 사무 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별 표 3]

- 18개 분야의 42개 사무를 50만 이상 시의 사무로 규정함

〈표 2-7〉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50만 이상의 대도시 사무

분야(18)	사무(42)
1.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2.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나.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3.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 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 인가 나.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 잔액 허가
5.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분야(18)	사무(42)
	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다.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라. 도시계획의 지적승인 사무 마.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사무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나. 재개발사업의 지도·감독
7.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나.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다.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마.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바.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8.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 말소 나.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9.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가.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만 해당)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나. 자동차운송사업(택시만 해당)계획변경 인가
10.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책정 사무
11. 지적에 관한 사무	가. 토지의 지번 변경 승인 나.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다. 축척변경 승인 라. 지적측량 검사 마. 지적측량대행법인의 지도·감독
12.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무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13. 식품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업만 해당한다)에 관한사무	가. 허가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나. 시설의 개수명령 다. 폐기처분 라. 허가취소
14. 묘자·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묘자·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나. 묘자·화장장·봉안당의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의 허가 다. 시체운반업의허가
15.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 수납의 승인
16. 고압가스에 관한 사무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17. 도시가스에 관한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8.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	

- 개별법의 경우 7개의 법률에서 27개 사무에 대해 특례 인정
  - 도시관리계획결정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일반산업단지 지정, 보양온천지정, 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권 등

〈표 2-8〉 개별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근거법률(7개)	사무명(27개)
온천법(3)	온천원 보호호지구의 지정 등(제42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제5조) 보양온천 지정 (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법(3)	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제3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제4조) 정비기반시설 구역 지정(제64조 제3항)
도시재정비 촉진법(1)	재정촉진계획 변경권(제12조)
주택법(1)	공동주택 사업 계획권(제16조)-대지면적 10만 $km^2$ 이상
도시재개발법(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제3조)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권(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고시(제9조)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법(14)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제29조) 지형도면 작성 작성 및 고시(제32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효 고시(제33조)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제36조)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제37조)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 등(제28조의2)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지정(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제53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제88조) 실시계획 인가 사실 공고(제90조) 실시계획 고시(제91조)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제9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귀속(제9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	일반산업단지 지정(제7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7조의2)

## ○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 특례

- 「지방분권법」 제41조에 9개의 사무에 대해서는 대도시 중에서도 100만 대도시에 해당하는 사무임

〈표 2-9〉 「지방분권법」 41조의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

법적근거	특례사무	단서
1. 지방공기업법 19조 2항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미리 지방의회 승인
2. 건축법 11조 2항 1호	건축물의 허가. 다만 아래에 대한 것은 도지사 승인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100분 30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단서조항 건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3. 택지개발촉진법 3조 1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조 및 12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8조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6. 소방기본법 3조 및 6조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7. 농지법 34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함
8. 지방자치법 112조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5급 이하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도지사와 사전협의

□ 입법특례

- 입법 관련 특례는 별도로 없음
- 현재 법체계상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위임한 법규명령 하에서의 조례 효력이 인정됨
- 따라서 대도시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는 한 조례제정권을 갖지 않음

□ 인사·조직 특례

○ 행정구 설치

- 근거법: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설치근거, 동법 제4조에 설치절차,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분구(分區)에 관한 내용 규정
- 행정구의 법적 성격: 하부행정기관임
  -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 주민의 입장에서 편의성 증진, 지방정부 입장에서 행정 효율성 확보(최영철, 2008; 금창호·권오철, 2008; 남재걸·김태운, 2013)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담 및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치함
  - 하부행정기관은 법인격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음(최창호, 2005; 최용환, 2010: 2 재인용)
  - 행정구 설치를 통해 일상생활서비스 및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지역진흥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됨(이상윤·이종수, 2004)
- 행정구 설치와 명칭과 구역 조정 등
  - 행정구 설치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따라 모든 50만 이상 대도시가 행정구를 설치한 것은 아님(15개 도시 중 12개 도시 행정구 설치)
  - 행정구의 명칭·구역 변경, 폐치, 분합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필요(지방자치법 제4조의 2)
  - 분구시 인구 기준: 기존 행정체제로 행정수요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분구가능,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 20만 이상이 되어야 함(행정구역  
조정규칙 제7조)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기구(실·국)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구 설치여부에 따른 실국 설치범위 차별화
  - 인구 규모에 따라 최소 4개에서 최대 8개의 실·국 설치 가능

〈표 2-10〉 도시규모에 따른 실·국 설치기준

대도시		광역시		
구분	실국	구분	실국	
인구 50만 이상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서울특별시	17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 (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5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 (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 (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3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 (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120만 이상 (구를 설치한 수)	8개 이내		인구 200만 미만	11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 관련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		

□ 보조기관에 대한 특례

- 보조기관(부시장)의 수: 「지방분권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수는 2명으로 할 수 있음(cf,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수 1명)
  - 100만 이상 대도시 부시장 1인은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
- 보조기관(부시장)의 직급: 50만 이상 시의 부시장의 직급은 2급 지방이사관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표 2-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에 대한 규정

근거규정	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2조 1항	보조기관(부시장 수)	① [지방자치법] 110조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100만 이상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 7항 3호	보조기관(부시장의 직급)	⑦ 시·군과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인구1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인구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10만 이상 50만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인구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 9항	보조기관(부시장의 직급)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별정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보조기관에 대한 특례

- 근거규정: 「지방분권법」 제42조 제3항
  - 인구 100만 대도시의 경우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2조 3항

---

[지방자치법] 59조, 90조 및 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 재정특례

- 국가우선의 재원배분과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의 형식의 지방 이전
  - 조세수입 중 국세가 80%, 지방세는 20%에 불과함. 한편 순지출은 국가가 45%, 지방이 55% 정도 차지, 전체 수입의 35% 정도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방이전(김석태, 2016)
-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sup>7)</sup>에 대한 특례: 「지방재정법」 제29조
  - 시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해야 함
    - 일반시: 도세의 27%
    -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 47%
  - 대상재원: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 도세의 총액과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 cf) 광역시세, 도세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
  - 조정교부금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 제외),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함
-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지방분권법」 43조 1항~3항
  -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10% 범위에서 추가로 확보하여 교부
  -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경우 도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세로 함(「지방분권법」 제43조 제3항)

7) 조정교부금은 시군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교부세제도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재정보전금은 도를 기본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의 재정조정 역할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짐

〈표 2-12〉 지방재정 특례에 대한 규정

근거규정	내용	조문
지방재정법 29조	시군 조정교부금 특례	<p>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50만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p>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총액(화력발전·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p> <p>2.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나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p>
지방재정법 시행령 36조	시군 조정교부금 특례 (지방재정법 29조 관련)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인구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p> <p>⑤ 생략</p>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 편에 관한 특별법 43조 1항~3항	재정특례	<p>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제40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중 100분 10이하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법] 11장에 따라 소방시설에 총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p>

### 제3절 기존 연구의 평가

- 본 연구의 관심은 대도시 행정구 기능강화로 대도시 관련 선행연구, 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들 중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운영에 대한 연구만을 중심으로 논의함
- 50만 이상의 조직특례에 해당하는 행정구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들이 존재함(금창호·권오철, 2008; 남재걸, 2013; 남재걸·김태운, 2013; 최영출, 2008; 최용환, 2010)
  -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대동제와 일반구 비교
    - 일반구 폐지 및 대동제 개편(최영출, 2008)
    - 일반구와 자치구의 중간형태인 준자치구제(김병국·하현상, 2012)
    - 일반구와 대동제 보완모형(금창호·권오철, 2008)
    - 행정구의 운영에 있어서 업무의 자기완결성을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구(남재걸, 2013; 남재걸·김태운, 2013)
      - 행정구 폐지, 대동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구를 폐지할 경우 행정구에서 수행하는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을 읍·면·동으로 이관하거나,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오히려 행정능률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거리조락(distance-deca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결국, 행정구의 기능강화를 통해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시의 관계에서 본청의 기능을 행정시에 이양하는 작업이 있음(민기 외, 2012)
    - 행정시의 자기결정권 및 책임성 확보, 행정사무의 자기완결성 실현, 행정사무의 보충성 강화원칙 등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행정시간의 권한 및 사무배분에 관한 규정 검토와 더불어 행정시 사무로 적합한 사무를 분류하고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를 먼저 실행하는 등의 실행 방안 제시함

〈표 2-13〉 행정구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분석틀 및 기준	대안
최영출 (2008)	일반구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효율성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과다소요</li> <li>- 행정거래비용</li> <li>- 기능중복</li> <li>- 청사 신축 및 유지비</li> <li>- 선거구 증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구 폐지</li> <li>• 대동제로 개편</li> </ul>
금창호 · 권오철 (2008)	일반구-대동제 비교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요소 → 효율성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배분</li> <li>- 인력규모</li> <li>- 사무처리</li> </ul> </li> <li>• 산출요소 → 민주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접근성</li> <li>- 서비스 이용편의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구 보완모형</li> <li>• 대동제 보완모형(중심동)</li> <li>• 신규모형(광역동)</li> </ul>
김병국 · 하현상 (2012)	대도시 일반구 제도개선 : 일반구와 대동제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배분 실태</li> <li>- 인력·조직규모</li> <li>- 사무처리 절차</li> <li>- 사무·시설관리 비용</li> </ul> </li> <li>• 주민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접근성</li> <li>- 서비스 이용 용이성</li> <li>- 주민참여 용이성</li> <li>- 시민의 지역정체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자치구제</li> <li>• 일반구와 자치구의 중간 형태</li> <li>• 읍면동 사무소 그대로 유지</li> <li>• 구청장 직선</li> <li>• 구청장에 규칙제정권 부여</li> </ul>
남재걸 (2013)	대도시 일반구 운영사례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내부효율성, 투입요소: 행정내부 기능·자원의 배분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배분 적정성</li> <li>- 인력·조직·예산 배분 적정성</li> <li>- 사무처리 절차의 간소성</li> </ul> </li> <li>• 주민편의성, 산출요소: 주민수요에 대한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심리적 기관 접근성</li> <li>- 민원서비스 활용 용이성</li> <li>- 주민참여 용이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처리의 완결성 고양</li> </ul>

- 8) 창원시는 통합이전 1997년부터 대동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2010년 7월 마산시 및 진해시 통합되면서 일반구제로 전환하여 대동제와 일반구를 모두 경험하였음
- 9) 자기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층을 축소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이 일선 대민 행정기관(민원+자치기능)으로서 형태를 취하는 안을 제시함. 따라서 단층제를 택한 경우에는 동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층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구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기능상의 집중화가 필요하며, 동의 기능을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여 현재의 주민자치센터(향후 주민자치회) 기능을 중심으로 축소 개편하는 안을 제시함(남재걸·김태운, 2013: 88).

연구자	연구내용	분석틀 및 기준	대안
남재걸 · 김태운 (2013)	일반구제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창원 <sup>8)</sup> 의 대동제와 일반구제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구청-동사무소간 기능배분</li> <li>- 3개 기관의 인력과 조직규모 분석</li> <li>- 사무처리 절차</li> <li>- 사무 및 시설관리 비용</li> </ul> </li> <li>• 주민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li> <li>- 서비스이용 용이성(서비스 기관 식별성)</li> <li>- 주민참여 용이성</li> <li>- 시민의 지역 정체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행정계층 설계에 있어서 업무의 자기 완결성<sup>9)</sup> 측면 우선 고려</li> <li>• 대도시가 가지는 인구·면적 등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행정계층 개편</li> </ul>

- 위의 연구들은 행정구의 계층구조 및 실태분석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구의 사무기능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제3장 수원시 시·구 기능분석

---

제1절 수원시 현황

제2절 수원시 시·구의 기능분석

제3절 수원시 시·구의 기능분석 평가



## 제3장 수원시 시·구 기능분석

### 제1절 수원시 현황

#### 1. 수원시 개괄적인 현황

##### □ 인구변화 추이

- 수원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02년에 100만을 넘었으며, 2012년에 110만을 넘어서 대도시로의 규모를 보임
- 2011년 이후 인구증가 속도가 증가함
  - 2012년에 약 3만1천명, 2013년에는 2만8천명, 2014년에는 2만6천명 등 거의 동 한개 규모의 인구수 증가함

〈표 3-1〉 수원시 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2000	948,065	309,266	321,646	317,153	-
2001	974,866	323,368	328,962	322,536	-
2002	<b>1,019,711</b>	346,336	328,786	344,589	-
2003	1,032,944	285,539	287,059	216,031	244,315
2004	1,033,829	283,770	287,081	220,842	242,136
2005	1,045,587	284,176	297,045	218,375	245,991
2006	1,068,906	289,490	307,072	217,794	254,550
2007	1,067,702	287,474	310,553	216,945	252,730
2008	1,067,425	285,803	308,177	213,235	260,210
2009	1,073,149	290,798	304,097	219,833	258,421
2010	1,077,535	293,692	306,783	216,503	260,557
2011	1,088,489	290,999	321,176	209,772	266,542
2012	<b>1,120,258</b>	291,757	332,633	206,794	289,074
2013	1,148,157	300,908	331,773	204,805	310,671
2014	1,174,228	301,196	339,835	203,479	329,718
2015	1,184,624	299,016	351,053	199,180	335,375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 하부행정조직

-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위해 하부행정기관으로 행정구와 동 설치
- 행정구: 4개의 행정구를 설치함
  - 구 설치 순서: 장안구와 권선구(1988년)-팔달구(1993)-영통구(2003)
  - 규모 비교
    - 인구기준: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 면적기준: 권선구-장안구-영통구-팔달구
  - 각 구별 특징
    - 장안구
      - 시의 북부에 위치하여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 밀집함
      - 임야면적(15.70km<sup>2</sup>)이 상대적으로 넓음
    - 권선구
      - 면적과 인구가 가장 큼. 특히, 면적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30% 이상으로, 팔달구에 비해 거의 4배 규모임
      - 호매실지구 등 신도시 개발 중으로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함
    - 팔달구
      - 화성이 있는 수원의 원도심으로 공공시설 및 대형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음
    - 영통구
      - 광교신도시 등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 급증함
- 동(행정동)의 수는 전체 42개 동으로 행정구 당 10~12개 동이 설치됨
  - 권선구의 동수가 12개로 가장 많고 나머지 구는 각 10개씩 동을 설치 운영함
  - 권선구의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동의 수도 증가될 전망이다

〈표 3-2〉 수원시 구별 현황

구	인구(명)	면적(km2)	동수
장안구	297,616	33.34	10
권선구	354,101	47.17	12
팔달구	198,894	12.86	10
영통구	338,230	27.68	10
<b>전체</b>	<b>1,188,841</b>	<b>121.05</b>	<b>42</b>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http://rcps.egov.go.kr>)

기준: 2016년 4월자

## 2. 수원시의 기구표: 시-구-동

### □ 시의 조직

- 9개 실국에 44개과(담당관 제외) 운영

<b>제1부시장</b>		• 공보관, 감사관, 청소년기획관,		
<b>기획조정실</b>	<b>일자리경제국</b>	<b>복지여성국</b>	<b>문화교육국</b>	<b>환경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지원과</li> <li>• 정책기획과</li> <li>• 자치행정과</li> <li>• 예산재정과</li> <li>• 시민봉사과</li> <li>• 정보통신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정책과</li> <li>• 경제정책과</li> <li>• 기업지원과</li> <li>• 생명산업과</li> <li>• 세정과</li> <li>• 회계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과</li> <li>• 여성정책과</li> <li>• 노인복지과</li> <li>• 장애인복지과</li> <li>• 보육아동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과</li> <li>• 관광과</li> <li>• 교육청소년과</li> <li>• 체육진흥과</li> <li>• 수원시립미술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과</li> <li>• 기후대기과</li> <li>• 자원순환과</li> <li>• 위생정책과</li> <li>• 하수관리과</li> </ul>
<b>제2부시장</b>		• 마을만들기추진단		
<b>도시정책실</b>	<b>안전교통국</b>	<b>전략사업국</b>	★ 시민소통기획관은 시장 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과</li> <li>• 주택과</li> <li>• 건축과</li> <li>• 도시재생과</li> <li>• 토지정보과</li> <li>• 군공항이전과</li> <li>• 도시계획상업기획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정책과</li> <li>• 재난관리과</li> <li>• 교통정책과</li> <li>• 대중교통과</li> <li>• 도로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사업과</li> <li>• 첨단교통과</li> <li>• 균형개발과</li> <li>• 도시디자인과</li> <li>• 시설공사과</li> </ul>		

〈그림 3-1〉 시(본청) 조직도

○ 사업소와 직속기관 설치·운영<sup>10)</sup>

-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와 각 구별 보건소 설치 운영
- 사업소(11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체납징수단 (이하 1부시장 산하), 공원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이하 2부시장 산하)를 설치운영

□ 구의 조직

○ 4개 구가 거의 동일한 조직운영(과-팀)

- 다만 장안구와 영통구는 사회복지과의 통합조사관리팀을 하나 운영하는데, 권선구와 팔달구는 2개 팀으로 분팀하여 운영
- 팔달구의 경우 산업팀이 없음. 다른 구의 산업팀 업무를 지역경제팀에서 수행하고 있음

○ 각 과의 사무는 기관의 유지기능, 민원기능,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음

- 행정지원과는 기관유지를 위한 지원 및 유지기능을 주로 담당함
- 종합민원과는 민원을 종합담당하는데 이는 유지기능에 해당함
- 세무과는 지방세(도세, 시세)에 대한 부과, 징수 등 집행 및 유지기능을 주로 담당
-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는 복지기능 담당
-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는 도시 관리와 관련한 생활편의 및 발전적 기능 수행

---

10) 「지방자치법」 제113조 직속기관, 제114조 사업소, 제115조 출장소 설치 규정이 있음. 직속기관은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사업소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표 3-3〉 구의 조직

과	팀	과	팀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기획감사팀 주민자치팀 경리팀 문화공보팀 정보통신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산업팀)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종합민원과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민방위팀 토지관리팀 지적관리팀 지적정보팀	환경위생과	청소팀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위생관리팀 위생지도팀
세무과	시세팀 도세팀 재산세팀 개인지방소득세팀 법인지방소득세팀 과표팀 징수팀	건축과	건축행정팀 건축팀 건축물정보팀 광고물관리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통합조사관리팀(1,2팀) 무한돌봄사례관리팀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 건설행정팀 건설팀 도로정비팀 녹지팀 하천하수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보육지원팀 노인장애인팀		

□ 동의 조직

- 동은 동장을 중심으로 단일 조직으로 운영됨

### 3. 시(본청)-구-동 기능 및 사무 일반

- 기능배분 분석과 특성 파악
  -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나타난 본청·구청·동사무소간 기능배분
  - BRM과 조직도표상에 나타난 기능 분석
  
- 본청과 구청간 업무배분
  - 본청
    - 주로 총괄조정과 기획업무 주로 담당, 집행 및 지원기능도 수행
  - 구청
    - 일반적으로 행정구의 관장기능은 본청과의 업무분담 차원에서 기능배분이 이루어짐
      -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sup>11)</sup>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처리
      - 만일 단일본청만 존재할 경우 접근성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수준의 형평성이 저하되고 거리조락현상이 발생함
    - 민원과 관련된 직접 현장 점검해야 하는 업무나 민원인의 요구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업무가 주임
    - 행정구의 관장기능
      -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 외 사회복지, 환경위생, 경제지원 및 도시관리(건설 및 건축) 등 생활편의 서비스의 포괄적 제공
      - 서비스 특성에서는 기획, 집행 및 민원서비스 중에서 집행 및 민원서비스가 주를 이룸

11) 보조기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이고, 소속행정기관으로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회 행정기관, 자문기관 등이 있다. 직속기관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하부행정기관은 구, 면, 읍 등을 의미함(「지방자치법」 6장 2절~4절).

## ○ 동

- 주민자치업무와 현장에서 추진할 통계, 사회복지 업무 추진
  - 주민자치업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지원, 통반장 관리 업무가 주를 이룸
  - 민원관리업무: 주민등록, 인감, 팩스민원 등에 대한 대응
  - 사회복지업무: 주민이 찾아와 보호대상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구청에 조사를 신청하는 업무가 주를 이룸
    -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례발굴업무 수행

## □ 사무(기능)에 기초한 행정계층별 권한배분

〈표 3-4〉 행정계층별 권한배분 현황

구분		내용
국가사무		• 국가사무
광역사무	특/광역시	• 광역사무 + 자치구 위임사무
	도	• 광역사무
기초사무	50만 이상	• 기초사무 + 대도시 특례사무(50만, 100만)
	일반시	• 기초사무
	군	• 기초사무
	자치구	• 기초사무 - 본청 위임사무
행정구		• 사업적 집행사무
읍면동		• 대민적 집행사무

## □ 조직도표 및 사무분장 상 시-구-동 업무배분

- 시와 구간 일대일 조직이 아님
- 구의 경우 한 과에서 보다 복합적인 업무 수행
  - 예) 구의 행정지원과는 시의 기획조정실, 일자리정책국의 회계과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가정복지과는 시의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

- 동의 경우에는 주민과의 최접점에 있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주민의 생활민원 업무를 주로 담당함

〈표 3-5〉 시-구-동의 업무분장

실국	시(본청)		구청		동
	과	업무	과	업무	
기획 조정실	행정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관리일반</li> <li>• 인사, 후생복지</li> <li>• 인재육성</li> <li>• 국제교류</li> </ul>	행정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관리</li> <li>• 인사</li> <li>• 교육, 표창, 복무</li> <li>• 문화공보</li> <li>• 구정홍보</li> <li>• 성과관리</li> <li>• 감사</li> <li>• 소송 및 법무일반</li> <li>• 주민자치</li> <li>• 마을만들기</li> <li>• 주민단체지원</li> <li>• 예산일반</li> <li>• 선거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가족관계, 주민등록, 전입, 말소, 국외이주, 인감, 등초본 발급 등)</li> <li>•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건, 이웃돕기, 긴급지원, 무한돌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경로잔치 등)</li> <li>• 청소, 쓰레기 봉투 생활불편처리</li> <li>• 사회복지무요원 관리</li> <li>• 환경위생</li> <li>• 마을정원만들기</li> <li>• 민방위</li> </ul>
	정책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및 정책기획</li> <li>• 의회법무</li> <li>• 성과관리</li> <li>• 규제개혁</li> </ul>			
	자치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행정일반</li> <li>• 조직관리</li> <li>• 자치분권</li> <li>• 주민단체지원</li> </ul>			
	예산 재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 등 총괄</li> <li>• 재정분석</li> <li>• 건전재정운영, 지방보조금</li> <li>• 성과예산</li> <li>• 지방공기업 운영 관리</li> </ul>			
	시민 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민원</li> <li>• 휴먼콜센터운영</li> <li>• 기록물관리 총괄</li> </ul>	종합 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li> <li>•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li> <li>• 외국인관련 체류지 변경 및 관련 제증명 발급</li> <li>• 등초본, 전입</li> <li>• 가족관계등록</li> <li>• 관내인구 현황보고</li> </ul>	
정보 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 시책추진</li> <li>• 정보보호 총괄</li> <li>• 홈페이지, 행정포털,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li> <li>• 행정정보서비스 사업 추진</li> <li>• 통신설비,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일반</li> </ul>	행정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li> <li>• 정보통신 보안 및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 운영</li> <li>• 시민정보화 교육 등</li> <li>• 정보통신공사 건축실무협의 및 사용전 검사</li> </ul>		

시(본청)			구청		동
실국	과	업무	과	업무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정책</li> <li>일자리지원</li> <li>청년여성일자리</li> <li>중장년일자리</li> <li>사회적경제</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li> <li>지역경제</li> <li>전통시장</li> <li>물가조사</li> <li>통계조사인구주택 사업체</li> <li>광공업 농업 도 소매업</li> <li>서비스업 제조업체</li> <li>고용구조, 사회실태 등</li> <li>담배소매인 지정신청</li> <li>LPG가스</li> <li>통신, 판매, 전화권유판매업 관리</li> </ul>	
	경제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정책</li> <li>전통시장지원</li> <li>소비자지원</li> <li>통계분석</li> </ul>			
	기업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지원</li> <li>국제통상</li> <li>투자유치</li> <li>첨단산업(산업단지, 공장관리)</li> <li>노사문화</li> </ul>			
	생명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정책</li> <li>급식지원(정부양곡 등)</li> <li>축산행정</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원부 및 자격증 증명 등 농지 관련업무</li> <li>관리동물등록제</li> <li>가축전염병 관리</li> <li>유기동물관리</li> <li>농산물직거래</li> </ul>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일반</li> <li>세무조사</li> <li>세외수입관리</li> <li>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세무전산</li> <li>개발주거가격관련업무</li> </ul>	세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시세, 도세) 징수</li> <li>세외수입</li> <li>과표</li> <li>체납처분</li> <li>개별주택가격 관련업무</li> </ul>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 연말정산등 경리</li> <li>용역, 공사 등 계약 총괄</li> <li>계약지원</li> <li>재산관리</li> <li>청사관리</li> </ul>	행정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사관리</li> <li>업무차량관리</li> </ul>	
	여성 복지국	사회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정책 총괄</li> <li>복지지원관리</li> <li>긴급지원 등 복지 지원 총괄</li> </ul>	사회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 정부양곡, 이웃돕기</li> <li>의료급여</li> <li>통합조사관리</li> </ul>

시(본청)			구청		동
실국	과	업무	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보장 총괄</li> <li>자활지원 총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연금</li> <li>무한돌봄사례관리</li> </ul>	
	여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정책 총괄</li> <li>성별영향분석평가</li> <li>여성친화사업</li> <li>건강가정(가정, 성폭력 등)</li> <li>다문화업무</li> </ul>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지원</li> <li>요보호 아동 여성복지</li> <li>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원</li> <li>공부방보조</li> </ul>	
	노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정책</li> <li>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li> <li>노인복지-경로당 지원등</li> <li>노인시설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li> <li>경로당 지원</li> <li>노인장애인복지</li> </ul>	
	장애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정책</li> <li>장애인복지-장애인활동지원 등</li> <li>장애인 시설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수당지급</li> <li>장애인복지일반</li> </ul>	
	보육아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정책</li> <li>보육지원</li> <li>아동복지</li> <li>드림스타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관리</li> <li>어린이집 지도점검</li> <li>보육교직원 관리</li> <li>가정양육수당지원</li> <li>보육교사 교육</li> </ul>	
문화교육국	수원시립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관 시설관리 등 행정지원</li> <li>학예연구</li> <li>교육마케팅</li> </ul>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정책</li> <li>예술단체 지원 및 운영</li> <li>문화시설관리</li> <li>인문도시 수원, 인문도시 거리 사업</li> </ul>	행정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관광에 관한 사항</li> <li>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 업자에 관한 사무</li> <li>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소)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li> <li>노래 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 미수자에 대한 과태료</li> </ul>	
	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정책</li> <li>관광개발(수원화성 방문의해)</li> <li>의료관광, 산업관광 등 특수관광</li> </ul>			

시(본청)			구청		동
실국	과	업무	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징수</li> <li>유원시설업에 관한 사무</li> </ul>	
	교육 청소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발전중장기계획 등 교육정책</li> <li>교육지원</li> <li>평생학습 관련 업무</li> <li>청소년지원</li> </ul>	가정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li> </ul>	
	체육 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시설관리</li> <li>수원시생활체육회 지원 및 관리 등 체육행정</li> <li>스포츠산업 관련</li> </ul>	행정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교실</li> <li>동네체육시설관리</li> <li>여성축구단운영</li> </ul>	
환경국	환경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정책일반</li> <li>생물종다양성, 야생동물 등 자연환경업무</li> <li>환경교육</li> <li>수질보전 및 관리</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출시설 설치허가</li> <li>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li> <li>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li> <li>야생동식물(조수보호, 수렵면허 등) 보호 관련 업무</li> <li>약수터관리 등</li> <li>환경지도</li> <li>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등</li> <li>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업소 지도단속</li> <li>특정공사 사전신고 등</li> </ul>	
	기후 대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정책 총괄</li> <li>대기환경관리</li> <li>생활환경관리(소음, 석면안전, 실내공기질 등)</li> <li>에너지관리업무</li> <li>신재생에너지 관리</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미화원 인사 및 관리</li> <li>청소차량유지관리</li> <li>청소민원</li> <li>기동수거반</li> </ul>	
	자원 순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지원 및 청소행정</li> <li>화장실문화업무</li> <li>자원재활용업무</li> <li>음식물지원업무</li> <li>자원순화센터 운영 등 자원시설 관련 업무</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미화원 인사 및 관리</li> <li>청소차량유지관리</li> <li>청소민원</li> <li>기동수거반</li> </ul>	

시(본청)			구청		동
실국	과	업무	과	업무	
	위생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생정책일반</li> <li>위생업소 관리</li> <li>위생지도</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li> <li>매장 및 묘지관련업무</li> </ul>	
	하수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수행정</li> <li>하수시설</li> <li>하수정비</li> <li>하천관리</li> <li>지하수관리</li> </ul>	안전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li> <li>하수도유지관리</li> <li>하천시설공사 및 유지관리</li> <li>하천변 배수펌프장 및 가로등 유지관리</li> </ul>	
도시 정책실	도시 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행정일반</li> <li>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li> <li>지구단위계획 및 민원처리</li> <li>도시시설</li> <li>그린벨트관리</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 관련업무</li> </ul>	
	주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행정일반</li> <li>공동주택지원사업</li> <li>공동주택관리</li> <li>공동주택조사</li> <li>주거복지</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 행위신고 중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기획</li> <li>녹색건축조성사업</li> <li>건축인허가</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인허가</li> <li>불법건축물 행정처분</li> <li>이행강제금 체납관리</li> <li>건축물대장정리 및 용도변경</li> <li>소유권정리</li> </ul>	
	도시 재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재생정책일반</li> <li>재건축, 주택개량 사업 등</li> <li>주택재개발정비사업</li> </ul>			
	토지 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업무</li> <li>지적업무</li> <li>공간정보DB구축 및 자료제공</li> </ul>	종합 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공시지가</li> <li>실거래신고 및 검인</li> <li>부동산중개업</li> <li>토지이동정리</li> <li>지적민원</li> </ul>	

실국	시(본청)		구청		동
	과	업무	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주소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측량 기준점관리</li> <li>• 지적정보</li> <li>• 지적통계</li> <li>• 조상땅찾기</li> <li>• 지적재조사</li> <li>• 새주소 사업관리 및 운영사무 전반</li> <li>• 지적정보센터 운영</li> </ul>	
	군공항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공항이전관련 업무 총괄</li> </ul>			
	도시계획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상임기획</li> <li>• 수원지속가능도시 재단설립 등</li> </ul>			
안전 교통국	안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안전종합대책</li> <li>•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종합계획</li> <li>• 민방위</li> </ul>	안전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안전종합계획</li> <li>•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li> </ul>	
			종합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 일반</li> </ul>	
	재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재난</li> <li>• 자연재난</li> <li>• 안전점검</li> </ul>	안전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 및 안전관련업무</li> <li>•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li> </ul>	
	교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교통사업</li> <li>• 교통시설</li> <li>• 자동차관리</li> <li>• 주차시설</li> </ul>	경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압류</li> <li>• 거주자 우선주차체</li> <li>•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및 운영</li> <li>• 무단방치차량 사전조사 및 처리</li> <li>• 주정차위반단속 관련업무</li> </ul>	
	대중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정책</li> <li>• 버스운영 관리</li> <li>• 택시인허가 등</li> <li>• 화물운송</li> <li>• 교통지도(사업용 차량)</li> </ul>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행정</li> <li>• 기술심사</li> <li>• 도로건설</li> <li>• 도로정비</li> <li>• 자전거문화</li> </ul>	안전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li> <li>• 도로진출입시설 점용 인허가</li> <li>•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li> </ul>		

시(본청)			구청		동
실국	과	업무	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개설 및 개발행위허가</li> <li>•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시설물</li> <li>• 도로정비공사</li> <li>• 도로시설물 및 점용허가(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함 등)</li> <li>• 도로시설물 유지관리</li> <li>•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li> </ul>	
전략 사업국	창조 사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산업단지보상 및 분양 등 첨단행정</li> <li>• 융복합업무</li> <li>• 컨벤션건립</li> <li>• 첨단지원</li> </ul>			
	첨단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업무</li> <li>• 광역철도업무</li> <li>• 교통환승센터</li> </ul>			
	균형 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혁신업무</li> <li>• 기발시설</li> <li>• 균형개발</li> </ul>			
	도시디자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계획 등 경관정책</li> <li>• 경관사업</li> <li>• 도시디자인</li> <li>• 광고물</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인허가</li> <li>•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행정처분</li> </ul>	
	시설 공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분야 시설공사감독</li> <li>• 개발공사</li> <li>• 건축설비</li> </ul>			

사업소		구청		동
사업소	업무	과	업무	
공원녹지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li> <li>• 공원, 녹지, 산림 관련</li> <li>• 녹지경관</li> <li>• 쌈지공원 기본계획</li> <li>• 학교숲 조성</li> <li>• 산불 방지 종합업무 및 종합계획</li> <li>• 산림관리</li> <li>• 가로수</li> </ul>	안전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단함 관리</li> <li>• 향토수 식재 및 관리</li> <li>•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li> <li>• 학교숲 유지관리</li> <li>• 산림사업 추진</li> <li>• 가로화단 및 꽃길</li> <li>• 쌈지공원</li> </ul>	

## 제2절 수원시 시·구의 기능분석

### 1. 시·구 기능분석 개요

- 수원시는 조례 등에 의해 구 혹은 동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수원시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기능 조정 노력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기능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구-동간 업무배분 중복성
    - 시-구-동 혹은 시-구에 걸쳐 이루어지는 업무 검토
      - 계획설정 및 책정(시)-실태조사(구)-접수(동)
      - 취합(시)-전달 및 취합(구)-작성(동)
      - 서비스 규모 혹은 서비스 대상에 따른 업무 배분
      - 기타 시-구간 중첩사무
  - 위임규정과 상관없는 업무 배분 및 업무 수행
    - 시의 사무인데 위임규정 없이 구에서 처리하는 사무
    - 구의 위임사무인데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 주민 혹은 민원인 혼란스러워하는 사무
    - 시(본청) 사무인데 구청 사무로 착각하는 사무
    - 구청 사무인데 시(본청) 사무로 착각하는 사무

### 2. 시·구 기능분석

- 구성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 시-구-동간 혹은 시-구간 업무배분 및 중복
  - **계획설정 및 책정(시)-실태조사(구)-접수(동)**
    - 지원업무는 제외함. 특히 구청 행정지원과는 시와 구간, 그리고 구청 내의 문서전달, 취합, 배포 역할을 함

- 조직의 유지, 관리 기능과 관련한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함
  - 예) 정보통신과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계획 수립(시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구청)

본청(과)	계획설정 및 책정(본청)	실태조사(구)
정보통신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계획수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PC보급, PC 취약점검 계획수립	PC보급, PC취약점 실태 조사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수립	국가정보통신망 실태 점검
	설비(행정통신설비, 광대역통합망, 영상방송중계 시스템, 영상회의, UMS) 구축 계획 수립	설비 실태 점검

- 업무간 다양한 프로세스를 보임

업무프로세스	사무(예)
책정(시)-조사(구)-접수(동)	사회복지 수급자 관련
계획수립(시)-조사(구)-행정처분(시)	공장관련 지도감독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모범업소 운영 및 지원
계획수립(시)-조사(구)-실시(구)	계량기 정기검사 농업재해 피해복구

- 참고로 사회복지 수급자 대상 선정 및 복지서비스 급여 책정에 대한 시청과 구청의 바람직한 업무배분에 대해 인터뷰 결과 이견을 보임

	책정-실태조사-접수	이유
A안	책정을 구로 이관	구에서 실태조사 한 결과가 책정 시 변동 없이 반영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조사하고 책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B안	현행 체제 유지 (책정-시)	구에서 실태조사 한 것의 미흡한 것을 시 해당 과에서 확인 보완 요청하여 재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측면에서 현 체제 유지가 더 효율적임

〈표 3-6〉 시-구-동 업무(계획설정-실태조사-접수)

본청(과)	사업	계획설정 및 책정(본청)	실태조사(구)	접수(동)
<b>기획조정실</b>				
예산 재정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제안사업 현장실사 및 타당성 검토, 심의: 구 및 동 소관사업	제안사업 접수
<b>일자리경제국</b>				
일자리 정책과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실행 및 관리: 계획, 공고, 재산조회 등 심의자료 작성, 선발, 임금, 교육	참여자 선발자료 취합 및 작성(건강보험 조회 및 소득기준), 급여지급,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참여자 모집 및 접수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수립, 평가	현지 실태조사	
	계량기 정기검사	계획 설정	정기검사대상 조사 및 정기검사 실시	
	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계획 수립	조사원 채용(모집공고 및 접수) 및 조사요원 관리	조사원 모집 접수
기업 지원과	공장운영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행정처분	조사실시	
생명 산업과	친환경농업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	사업대상 농가 조사 접수 및 보고	
	선도농가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분야별 대상자 신청 접수	
	쌀 및 밭농업 직불제	계획 수립 및 총괄추진	신청접수, 이행사항점검, 심사위원회 실시,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	
	농업기계지원	지원 실행	대상자 접수	
	농업재해대책	총괄 및 계획수립, 자금지원	(지역)피해조사 및 복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지원 실행	대상자 접수	
	유기질비료지원	지원 실행	대상자 접수	
	토양개량제지원	지원 실행	대상자 접수	
	유살유기동물 보호관리	실행	대상자 접수	
	축산농가 지원사업	지원 시행	대상자 접수	
세정과	구제사무(이의신청)	심의·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작성	
	개별주택가격	주택가격 심의 및	조사 및 가격산정	

본청(과)	사업	계획설정 및 책정(본청)	실태조사(구)	접수(동)
		결정공시		
<b>복지여성국</b>				
사업별 복지 급여 (여러 과에 걸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실태조사, 관리, 급여지급	접수 및 관리
	차상위확인대상자 관리	책정	실태조사	접수
	기초연금수급자 관리	책정	관리 및 실태조사	신청접수
	한부모가족수급자 관리	책정	실태조사	접수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관리	책정	실태조사 및 급여지급	접수
사회 복지과	자활기금	지원 결정 및 운영관리	융자금 상환 관리	신청 접수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연장 및 적정성 심의, 환수	실태조사, 지급	접수
	정부양곡관리	명단통보, 예산집행	신청명단 취합, 대금 납부처리	신청접수, 명단제출
	무한돌봄 대상자 관리	책정 연장 및 적정성 심의	실태조사, 사례관리	접수
	사례관리	계획, 평가	사례회의, 서비스계획 및 지원	발굴 및 의뢰
	사회복지도우미 기간제근로자	관리계획, 예산집행	급여지급 관리	대상자 선발 관리
	희망키움통장	책정, 지원	대상가구 소득여건 확인, 홍보, 명단(배점확인) 취합 제출	모집 접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관리	결정	소득여건 및 근로능력 확인	참여 수시 접수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결정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생 추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생 접수
	※ 사업별 복지급여란 맞춤형급여,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사업			
여성 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책정		실태조사 및 접수(관리)
	다문화가정지원	책정		실태조사 및 접수(관리)
	행복출산스원스톱 서비스	(셋째아이 출산지원) 총괄	(셋째아이 출산지원) <b>급여결정</b>	(셋째아이 출산지원) 접수
노인 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총괄		입소이용신청 서 접수, 시로 송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접수

본청(과)	사업	계획설정 및 책정(본청)	실태조사(구)	접수(동)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지도 점검	현장방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및 관련자료 작성
	장애인자립(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책정	소득재산조사	접수
보육 아동과	보육지원	추진계획 수립 · 보육료 결정 및 수납한도액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책정(종일반 포함)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책정 및 지원(관리) 등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접수
	저소득층 아동 급식대상자	선정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및 관리	신청 접수, 대상자 소득 및 가정상황 조사, 드림카드 등록 등 관리
	아동발달지원대상자	지원 및 관리	취합 제출	신청 접수
	가정위탁아동 관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재배정	책정, 종결,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조사
<b>문화교육국</b>				
문화 예술과	문화누리카드	업무 추진계획	문화누리카드 배부	문화누리카드 접수
<b>환경국</b>				
기후 대기과	에너지이용권	신청승인		신청접수
자원 순환과	재활용분리수거함	제작 보급 계획	수요 조사	수요 조사
	음식물치방식 종량제	추진계획	예산 집행 및 지도점검	용기 배부 및 홍보
위생 정책과	모범업소(음식점) 운영 및 지원	계획수립, 지원(인센티브 지급)	실태조사, 지정, 점검, 홍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및 등급 공표	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b>도시정책실</b>				
주택과	주거급여 수급권자	책정	소득재산 신청조사	접수
토지 정보과	도로명상세주소	처리		접수
	개별공시지가	· 조사계획 ·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 이의신청 취합 · 국도비집행	· 조사· 산정 · 검증· 결정· 정정 ·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 (관계) 행정기관 제공	· 확인서발급 · 이의신청서 접수 이첩

본청(과)	사업	계획설정 및 책정(본청)	실태조사(구)	접수(동)
		· 결정 및 공시 · 결정통보		
도로과	용도폐지 허가 업무	결정	현장확인 및 관련서류 검토	
<b>안전교통국</b>				
안전 정책과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총괄 계획 수립 및 관리 · 민방위 강사 위촉 및 운영	각 구별 계획 수립 · 민방위 교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통지서 출력 및 배부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계획 수립 및 표본점검	계획 수립 및 동 현장점검	자체점검
재난 관리과	주책침수 지원금	지급	현장조사	피해 신청접수
교통 정책과	보행지킴이	계획	보고서 취합·보상금 지급	보행불편사항 조사·제출
도로과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결정	전달	
	도로관리 심의	승인	신청	
<b>전략사업국</b>				
도시 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각 동별 참여자 보상금 지급	참여자 접수

### ○ 최종취합(시)-전달 및 취합(구)-작성(동)

- 사업집행이 아닌 단순히 취합-전달-작성 등의 역할 분담을 의미함
- 구청의 취합 및 전달 업무의 의미에 따라 기능 폐지 여부 검토
  - 단순 서류만 취합 전달하는 경우 온라인보고체계가 완성되어 있을 경우 구청을 거치지 않고 동에서 시로 직접 전달 가능
  - 온라인보고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동에서 시로 바로 보고시 시의 업무 폭주-구의 중간역할 중요, 통솔의 범위 문제와 연관됨
    - 구의 단순 전달업무는 행정구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지만 100만 대도시인 수원시는 동의 수가 42개로 구에서 취합 정리하여 전달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문서수발업무만으로 업무 폭증할 수 있음
  - 구가 중간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역할이 있는 업무의 경우 현행 체제 유지

■ 주로 행정지원과 관련한 업무들에 해당함

〈표 3-7〉 시-구-동 업무(구의 전달기능의 특징)

사무구분	사무내용	부서(구)
통솔의 범위 문제 발생	• 업무계획, 백서, 기본현황 등 작성, 취합 및 전달	행정지원과
	• 범정부 EA 등 작성 취합 전달	행정지원과
	• 국가정보화시행 계획 등 작성 취합 전달	행정지원과
	• 시민정보화 교육 등 작성 취합 전달	행정지원과
	• 공무원 정보화 인력개발 등 작성 취합 전달	행정지원과
	• 영상방송 중계시스템 점검	행정지원과
	• 감사 및 보고 요청 자료 취합 및 전달	사회복지과
	• 자원재활용 계획 수립 취합 및 전달	환경위생과
	• 민방위 시설장비 동별 자체점검 결과 취합 및 전달	안전건설과
구의 전달 업무 외 중요한 행정 행위	• 시민표창, 공무원 표창 수여	행정지원과
	•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행정지원과
	• 지방보조금 정산 접수	행정지원과
	•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운영	행정지원과
	• 웹하드, 메신저, 통합조직도 운영	행정지원과
	• 쓰레기 감량 실적(월) 취합 및 전달	환경위생과
	•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실적 취합 및 전달	환경위생과
온라인보고체계 완성으로 구의 전달 기능 폐지 가능	• 교육희망자 명단 제출(구에서 동 취합 X)	행정지원과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별 작성, 취합 및 전달	행정지원과
	• 개인정보종합시스템 관리 동별 작성, 취합 및 전달	행정지원과
	• PC 취약점 점검 동별 작성, 취합 및 전달	행정지원과
	• 안전신문고 처리 취합 및 전달	안전건설과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취합 및 전달	안전건설과
	• 안전문화교육 및 홍보 추진 취합 및 전달	안전건설과

■ 구의 전달기능을 주로 하는 사업

〈표 3-8〉 시-구-동 업무(구의 전달기능의 폐지여부)

	본청	구청	동	구청전달 기능 폐지 가능 여부
<b>기획조정실</b>				
행정 지원과	시민표창, 공무원 표창수여	공적조서 취합 및 전달	공적조서 작성	× 구에서 공적심사의결 후 시청 전달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각 동 점검 및 홍보	홍보	× 도 평가 및 신속한 업무추진 불가
	교육안내공문 배포, 교육희망자명단 취합 및 제출	교육희망자 명단 시에 제출	교육희망자 명단 시에 제출	○ 온라인 보고시스템 완성되면 전달역할은 폐지할 수 있음
정책 기획과	업무계획, 백서, 기본현황 등 작성 지시	업무계획, 백서, 기본현황 등 작성 전달 및 취합	업무계획, 백서, 기본현황 등 작성	× 동사무소별로 보고하면 시청 업무 과다
예산 재정과	지방보조금 예산 책정, 교부, 취합	지방보조금 신청·정산접수, 교부	지방보조금 신청, 정산	× 구에서 보조금 사업 수행
정보 통신과	법정부 EA 업무	작성, 전달, 취합	작성	× 과별로 보고하면 시청 업무 과다
	국가정보화시행 계획	작성, 전달, 취합	작성	× 과별로 보고하면 시청 업무 과다
	시민정보화교육 (교육장 점검 및 설문조사)	작성, 전달, 취합	작성	× 취합 후 본청에서 계획수립
	공무원 정보화 인력개발(정보화교육 10시간이수제 등)	작성, 전달, 취합	작성	× 과, 동별로 보고하면 시청 업무 과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작성, 전달, 취합	작성	○ 온라인 보고체계 완성
	개인정보종합 시스템 관리	작성, 전달, 취합	작성	○ 온라인 보고체계 완성
	PC취약점 점검	작성, 전달, 취합	작성	○ 온라인 보고체계 완성
	새울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운영	작성, 전달, 취합	작성	× 구에서도 시와 동 파악 필요
	웹하드, 메신저, 통합조직도 운영	작성, 전달, 취합	작성	× 구에서도 시와 동 파악 필요

	본청	구청	동	구청전달 가능 폐지 가능 여부
	영상방송 중계시스템 점검	작성, 전달, 취합	작성	× 과,동별로 보고하면 시청 업무 과다
<b>복지여성국</b>				
사회 복지과	감사 및 보고 요청자료 지시	감사 및 보고 요청자료 취합	감사 및 보고 요청자료 작성	× 동사무소별로 보고하면 시청 업무 과다
<b>환경국</b>				
자원 순환과	쓰레기 감량 실적(월)	전달 및 취합	작성	× 구에서 주민센터 취합 후 시에서 종합검토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실적	전달 및 취합	작성	× 구에서 주민센터 취합 후 시에서 종합검토
	자원재활용 계획수립 추진	자체 계획 수립 추진	자체계획 수립	× 동사무소별 보고하면 업무 과다
<b>안전교통국</b>				
안전 정책과	안전신문고	전달 및 취합	작성	○ 안전신문고 처리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전달 및 취합	작성	○ 온라인 보고체계 완성
	안전문화교육 및 홍보 추진	전달 및 취합	작성	○ 온라인 보고체계 완성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계획 수립 및 표본점검	각 동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자체점검 및 결과보고	× 동사무소별로 보고하면 시청 업무 과다

## ○ 서비스 규모 혹은 서비스 대상에 따른 업무 배분

- 많은 업무들이 서비스 규모 혹은 서비스 대상에 따라 시와 구청 업무로 구분되어 있음

〈표 3-9〉 서비스 규모 혹은 서비스 대상에 따른 업무 배분

	사무명	본청	구청
<b>기획조정실</b>			
예산 재정과	주민참여예산 시민기구 운영지원	주민참여예산 시위원회 운영지원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회의 운영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및 사업소 소관 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구 및 동 소관 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정보 통신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6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
기업 지원과	공장 등록 및 관리	공장 건축 연면적 500㎡ 이상	공장 건축 연면적 500㎡ 이하
세정과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업무	과년도 지방세 체납처분(체납세징수단)	현년도 지방세 체납처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차차 과태료 과년도 30만원 이상 체납처분 (결손제외) (체납세징수단) - 불법주차 과태료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차차과태료 과년도 30만원 미만 체납처분 - 불법주차 과태료
<b>일자리경제국</b>			
생명 산업과	농지전용협의	일반시설 농지전용협의 농업용시설(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협의	농업용시설(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협의
<b>복지여성국</b>			
사회 복지과	기초생계급여 지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보육 아동과	어린이집 관리 (설치 및 관리, 행정처분, 지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 교육	원장님 교육	선생님 교육
<b>문화교육국</b>			
문화 예술과	게임·음반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	게임 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사무명	본청	구청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b>환경국</b>			
환경 정책과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공업지역 내 공장등록된 배출업소	공업지역 외 배출업소
기후 대기과	배출업소 소음관리	공업지역 소음관리	공업지역 외 배출업소 소음관리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 점검	공업지역 내 공장등록된 대기배출업소	그 외 사업장 - 공업지역 외 대기배출업소 - 공업지역 내 공장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도로소음관리	교통소음규제지역 외 소음관리	교통소음규제지역 내 소음관리
위생 정책과	숙박업 영업신고	관광호텔 영업신고	관광호텔을 제외한 숙박업소 영업신고
<b>도시정책실</b>			
건축과	건축인허가 (신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6층 이상, 연면적2000 $m^2$ 이상 건축물 인허가	6층 이하, 연면적2000 $m^2$ 미만 건축물 인허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분 3미만 범위의 증축에 관한 권한(증축)
	위반건축물 조치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조정 등)	7층 이상, 연면적2000 $m^2$ 이상 건축물	6층 이하, 연면적2000 $m^2$ 미만 건축물
주택과	공동주택 행위허가	공동주택 행위허가	〈 공동주택 행위신고 중 용도변경신고 〉
	공동주택 행위신고	구청 위임사항을 제외한 공동주택 행위신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
	공동주택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구청 위임사항을 제외한 불법행위 단속	〈 공동주택 복리시설(단지 내 상가)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 〉 · 단속 및 처벌(과태료 부과 등)
토지 정보과	지적확정측량성과	확정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확정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b>안전교통국</b>			
안전 정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관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관리

	사무명	본청	구청
교통 정책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주차선도색, 도로표지판설치)	15m 이상 도로	15m 미만 도로
도로과	도로개설 관련 업무	15m이상 도로	15m미만 도로
	가로수 관리	4차선 이상	4차선 미만
<b>전략사업국</b>			
도시 디자인 과	옥외광고물 인허가	옥상간판(대형전광판), 공공목적 광고물 교통수단 광고물, 가로배너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등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옥상간판, 공공목적 광고물 교통수단 광고물 가로배너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등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대상 광고물 심의	심의완료 광고물 허가(위임된 사무에 한함)
	지주이용간판 신고허가	높이 4m 이상 허가	높이 4m 이하 신고
	가로등 현수기 심의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	본청에서 심의받지 않은 불법 가로등 현수기 정비

○ 기타 시-구간 중첩사무

- 일반적으로 조직유지기능, 행정지원 기능은 제외함
  - 각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중첩될 수밖에 없음
- 기타 시-구간 중첩되는 사무는 생활불편민원처리 등 다양한데 시(본청)와 구청이 집행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그 행정처분 및 단위과제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임

〈표 3-10〉 기타 시-구간 중첩사무

	사무명	내용
<b>기획조정실</b>		
시민봉사과	생활불편민원처리	본청의 업무로 구·동의 휴먼콜센터 접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b>사회복지국</b>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지원	시: 지역아동센터 시설 신고, 변경 및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정산 구: 지역아동센터 급식보조금 지급, 지역아동센터 급식관련 지도점검
<b>문화교육국</b>		
관광과	유원시설업 관련	시: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유원시설업 관련 지도감독) 구: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등(유원시설업 관리)
<b>도시정책실</b>		
토지정보과	조상망 찾기 민원처리	본청과 구에서 동시에 접수해서 처리함
	새주소 상세주소	본청과 구에서 동시에 처리함
<b>환경국</b>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보호	본청과 구청에서 동시에 처리함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전체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구에서는 지도감독
	자원재활용 시민교육 및 홍보	시청과 구청에서 동시에 하고 있음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생정책과	식중독 예방 관리	시청과 구청에서 동시에 하고 있음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b>안전교통국</b>		
재난관리과	풍수해 보험가입교육 및 홍보	홍보업무를 시와 구청 모두 수행하고 있음(동에서도 시행)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및 보수	시와 구 모두에서 업무수행

□ 위임규정의 부재 또는 혼동으로 인한 사무처리

○ 시의 사무인데 구에서 처리하는 사무

-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하기 위해서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배정하거나 사무분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표 3-11〉 시의 사무인데 구에서 처리하는 사무

구분	사무명	개요
민원	생활불편민원처리	구청의 사무분장에는 없는 본청 고유의 업무인데 반해, 구, 동의 휴먼콜센터 접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사회 복지	노인 및 장애인 급여지급	명확한 위임 규정은 없지만 장애인에 대한 확정만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음 〈 참고 1 〉 장애인 관련 업무 위임사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 장애인 자립자금관련 조사 · 장애인 자녀학비관련 조사 · 장애인 자녀학비 지급 · 장애인보장구 지급(사무분장표) 〈 참고 2 〉 노인 관련 업무 위임사항 · 노인건강진단 ·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 경로당 개보수작업
	경로행사	구청장 위임사무 목록으로 되어있지 않으나, 각 동별로 경로행사를 실시하여 구에서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폐지 좁는 어르신 안전교육 및 장비 보급	폐지좁는 어르신 안전교육 및 장비 보급을 구로 예산이 재배정 되어 2016년부터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보급하고 있음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본청 교육청소년과 업무이나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 및 정산함 업무분장표상에도 시청업무로 되어 있음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및 정산	구청 가정복지과 아동급식지원업무 : G 드림카드 사용업소 관리 및 학교급식지원대상자 지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
	보육료, 양육수당 책정	국민기초 및 차상위계층 등 책정업무는 모두 시에서 하고 있음. 자치구가 아닌 경우 책정은 시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구분	사무명	개요
위생환경 업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에 따른 현지실사(조사) (현지실사-구청, 평가 및 지정- 시청, 행자부)	지정절차에 따르면 현지 실사 및 평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 중 평가 및 지정은 시, 현지실사는 구에서 실시함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공중위생영업을 구청에서 영업신고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구청에서 하고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 점검	분청 자원순환과 업무임
	냉온수기, 정수기 관리	구청에서 신고 접수 및 지도점검 등 하고 있음 < 관련 업무분장 > 시청 하수관리과: 먹는 샘물 또는 정수기의 제조, 수입, 판매업 관리업무 구청 환경위생과: 냉온수기 설치, 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 구의 사무인데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 위임 등에 의해 구의 사무인데 구의 여러 여건상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존재함

<표 3-12> 구의 사무인데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사무명	이유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접수·처리 및 민원처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공급으로 인한 민원처리
(안전정책과)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분장사무표에 기술지원대 운영 관리는 구청업무로 되어 있고, 시청업무로 되어 있지 않음 -민방위 편성 지침 및 경기도 방침에 의거 민방위기술지원대 대장은 시장(당연직)으로 시에 편성하도록 함

- 민원인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무
  - 시(본청) 사무인데 구청사무로 착각하는 사무
    - 타 대도시(성남, 용인) 등의 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업무에 대해 혼란스  
러워함

- 광역시 및 타 대도시의 경우 구청업무인 경우-수원시의 행정구와 서울 및 광역시 자치구 업무의 혼란. 즉, 자치구 업무를 행정구 업무로 혼동하는 경우 존재함

〈표 3-13〉 민원인이 시(본청)사무인데 구청사무로 착각하는 사무

구분	사무
타 대도시 행정구 업무	공동주택 행위신고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
	주택관리업 등록·변경·말소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지도·감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관리규약 제정(변경)신고
	공동주택 관리방법결정(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자치구 업무와 혼동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권 모든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권리 구청에 있는 것으로 혼동
	차량등록업무(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버스운영업무(버스증가 및 변경업무)(시 대중교통과 업무)
	화물차량 등록업무(시 대중교통과 업무)
	공업지역 내 배출업소 인허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관리업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노후주택, 건물 보수)
	7층 이상 2000㎡이상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 구청사무인데 시(본청) 사무로 착각하는 사무

〈표 3-14〉 민원인이 구청사무인데 시(본청)사무로 착각하는 사무

구청 사무인데 시(본청) 사무로 착각하는 사무	이유
경로당 물품 지원 및 개보수 요청을 시(본청)로 함	구청장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에서 하기 때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CCTV 설치	구청별 과태료 부과 및 CCTV설치 운영을 하고 있으나, 민원인은 시 업무로 인식
공공근로, 공공근로사업 급여지급	급여지급의 권한은 본청에 있어 사업참여자가 이와 관련된 문의는 모두 본청에 하나 실질적으로 급여지급은 구청에서 지급함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청 도로과로 우선 문의 (부서명에 “도로”가 들어가는 부서)
철도 소음 관련업무	소음 관련 업무는 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업무이나 철도라는 이유로 첨단교통과 업무라고 주장
철도공사 구간 중 도로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구청 안전건설과에 도로점용(굴착)허가(의제처리)를 받고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허가자(안전건설과)가 민원처리 등을 마땅히 하여야 함에도 철도 공사장이라는 이유로 첨단교통과 업무라고 주장
불법광고물 단속(입간판, 현수막 등)	각 구청에서 신고 접수 및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시에 민원제기

○ 기타 민원인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무

- 한 사업의 행정처분을 시청과 구청이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대상이나 규모의 차이에 따른 행정처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 서비스 규모, 서비스 대상에 따른 업무 배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을 작성함

〈표 3-15〉 기타 민원인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무

구분	사무	내용
민원	외국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전국단위 발급 착각
복지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 기초연금, 한부모, 장애인연금 및 수당) 보장결정 및 책정	동에서 신청, 구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보장결정(책정)자가 시장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곤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등	안내문 발송 시 본청과 구청 담당자의 연락처가 같이 기재되어 민원인들이 구청의 업무라 생각함
	의료급여 자격관리 (상실, 변경, 중지 등) 등록	책정을 시에서 하다 보니 관련 업무를 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혼동함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	구에서 일반 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어 생계비 지원은 구의 업무로 오해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제출기관에 대해 민원인이 혼란스러워함
	장기요양기관인력관리	제출기관에 대해 민원인이 혼란스러워함
	결혼중개업	관련 처리기관에 대해 민원인 혼란스러워함
환경	하천호소 수질관리	구청으로 업무로 보고 민원이 들어옴
	교통소음규제지역 외 소음관리	시민들은 교통소음규제지역 미인지
도시 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업무도 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
도로	가로수 관리	범위에 따른 차이 구분 인지하지 못함
	도로개설관리	
경제	착한가역업소 지정 및 지원	현장점검과 쓰레기봉투를 구에서 전달하여 구청업무인줄알음
전략	옥상간판 표시허가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표시허가는 각 구청에서 처리하다보니 간판자체를 구청에서 인허가하는 것으로 봄
사업소 관련	팔달산 주변 산책로 등 시설 사업	화성사업소 소관이나 팔달구청으로 민원 접수되는 사례가 많음.
	방법용 CCTV 설치 관련사무	통합안전관리센터 소관임에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접수

### 제3절 수원시 시·구의 기능분석 평가

#### 1. 시·구 기능분석 문제점

- 기관유지기능의 중복
  - 기관유지 기능은 조직이 있으면 필요한 업무로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의 업무를 위해 시청-구청-동이라는 3층체계로 이루어지는 등 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 비용 발생
    - 서무 등 행정지원기능은 모든 조직에서 필요함
    - 이는 종종 행정구 폐지, 대동제의 논거가 됨
  
- 행정구의 시와 동의 전달 및 경유기능으로 인한 행정계층간 거래 비용
  - 구의 행정지원과 기능이 대표적임
  - 시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42개의 동) 행정구가 없을 경우 통솔의 범위 문제로 인한 행정비용의 급증으로 오히려 비효율성 초래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 시-구-동의 책정-조사-접수 체계 구축
  - 거의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함
  - 다만 서비스 분야별로 책정(결정)의 주관부처가 일관적이지 않음
    - 예) 보육수당, 양육료의 경우 구청에서 조사 및 책정이 이루어지지만 기초생활보장, 노인기초연금, 장애인급여 등은 조사는 구에서 책정은 시에서 함
  
- 서비스 기능별로 규모, 대상 등의 기준에 따라 본청과 행정구가 분담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의 혼란
  - 체납징수, 어린이집 관리, 폐수배출시설 관리, 숙박업 영업신고, 건축인허가, 공원관리,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불법 광고물 단속 등
  
- 위임규정의 부재 또는 혼동으로 인한 사무처리 및 중복행정
  - 생활불편민원처리, 조상땅 찾기, 새주소 상세주소 등

- 행정구와 자치구의 차이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
  - 행정구와 자치구의 차이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은 제도상의 문제임

## 2. 시·구 기능(사무배분) 개선방안

- 행정구 폐지론과는 달리 행정구는 대도시의 통솔의 범위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효율성 담보 가능
  - 기관유지기능으로 인한 추가비용과 통솔의 범위로 인한 비용의 경중 고려
- 시와 행정구간의 기능배분 및 사무배분의 기준 설정으로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생활편의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볼 때 본청은 계획기능, 구청은 집행기능, 동은 민원기능으로 배분
  -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수원시 전체 입장에서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현장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은 업무에 대한 구분 필요



## 제4장

# 외국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

제1절 일본의 지정시 행정구 기능 및 사무

제2절 우리나라 타 대도시 행정구 기능 및 사무



## 제4장 외국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 제1절 일본의 지정시 행정구 기능 및 사무

#### 1. 일본의 대도시 특례 일반

-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도시특례제도를 시행하고, 행정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지정시의 행정구 기능 검토
- 일본의 차등적 분권화와 대도시 특례
  - 일본의 차등적 분권화 제도는 지방분권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 1993년 인구기준에 의한 기능배분 외에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계약방식에 의해 권한부여와 중앙정부의 통제완화 등을 중시한 지방분권특례제도 도입함(이상윤·이중수, 1979)
  - 일본의 지방행정체계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층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초단체이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정령시, 중핵시, 특례시 제도를 운영하다가 2015년에 특례시를 폐지함<sup>12)</sup>
  - 일본의 대도시 특례 제도의 도입 배경
    - 과소지역<sup>13)</sup>의 발생으로 시·정·촌의 합병이 이루어졌고, 도시화·공업화로 도시의 팽창이 발생하여 대도시 중심의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특례 제도를 도입함(박석희, 2010)
    - 도쿄의 도제(都制)에 이어 오사카, 나고야, 교토, 요코하마, 고베 등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부현과 시에 이르는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폐단을 제거하고 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여 도시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고 도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시제도가 논의되던 것이 잔존지역의

12) 일본에서 인구요건 20만 명의 특례시(特例市)를 폐지하고 중핵시(中核市)의 요건을 인구 30만 명 이상에서 20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시로 권한 및 업무 이양이 진행되면서 특례시와의 차이가 작아진 것이 이유임(교토뉴스, 2015년 3월 28일자(4월1일부터 특례시 폐지...중핵시 이행 두고 대응 엇갈려 at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5/03/110912.html](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5/03/110912.html)).

13) 과소지역이란 인구이동, 출생률 감소를 이유로 인구가 장기간 걸쳐 감소하는 지역을 말하며, 과소지역에서는 소방단, 의료기관의 축소, 상가 쇠퇴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상실될 뿐 아니라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함 2005년 일본에서 과소지역은 전체 시·정·촌의 48%이며, 인구는 6.3%밖에 되지 않음(박석희, 2010)

문제, 당시의 법률논쟁 등으로 인해 특별시제도 대신 정령 지정시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함(김동훈, 2001)

■ 제도의 도입 시기

- 정령지정도시: 1956년
- 중핵시: 1995년
- 특례시: 2000년 → 2015년 폐지됨에 따라 시행시특례시(施行時特例市)로 불림

〈표 4-1〉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의 특징

구 분	정령지정도시 (指定都市)	중핵시 (中核市)	시행시특례시 (施行時特例市)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50만 이상으로 정령으로 지정(인구, 도시규모, 행정 능력 등에서 기존 지정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도시를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20만명 이상으로 도시의 신청에 따라 정령으로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시 제도의 폐지 (2015년 4월 1일 시행) 때, 실제로 특례시에 있는 도시</li> </ul>
결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령으로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 신청, 정령으로 지정</li> <li>• 신청시 시의회 의결 및 도도부현 동의 필요</li> <li>• 도도부현 동의시 의회 의결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지정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개(2016년 현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7개 시(2016년 현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7개시(2016년 현재)</li> </ul>
행정감독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사의 인가, 허가 등 그 감독의 필요성은 없고 또는 지사의 감독에 대신하여 직접 주무대신의 감독을 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행정감독의 특례는 없음. 단, 복지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정도시와 같게 행정감독의 특례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행정감독의 특례는 없음</li> </ul>
행정조직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를 설치 할 수 있음</li> <li>• 구 선거관리위원회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조직상의 특례는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조직상의 특례는 없음</li> </ul>
재정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도로 양여세의 증액</li> <li>• 지방 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조치((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의 보정)</li> <li>• 복권 발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조치(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의 보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교부세의 산정에 필요한 조치(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의 보정)</li> </ul>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단체의 구분 at(<http://www.soumu.go.jp/>); 위키피디아 at <https://ja.wikipedia.org/wiki/%E4%B8%AD%E6%A0%B8%E5%B8%82>

□ 정령지정시

- 수원시와 유사한 규모를 보이는 지정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
- 지정시의 목록

- 정령지정도시는 일본 지방자치법상 50만 이상이면 가능한데 실제 100만 이상이거나 100만에 근접한 도시들로 이루어짐
- 따라서 정령지정도시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요건은 인구 100만 이상의 고밀도 지역이면서 200km<sup>2</sup> 이상, 자립적인 행·재정능력이 있어야 하고, 행정·사회·경제·문화 등의 도시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 지정도시의 평균인구는 150만 명 이상임

〈표 4-2〉 정령지정도시의 목록

도시	인구(명, 2010년 기준)	시행연월일	지정 정령
오사카시(大阪市)	2,665,314	昭和31年9月1日	昭和31年 政令第254号
나고야시(名古屋市)	2,263,894	昭和31年9月1日	
교토시(京都市)	1,474,015	昭和31年9月1日	
요코하마시(横浜市)	3,688,773	昭和31年9月1日	
고베시(神戸市)	1,544,200	昭和31年9月1日	
기타큐슈시(北九州市)	976,846	昭和38年4月1日	昭和38年 政令第10号
삿포르시(札幌市)	1,913,545	昭和47年4月1日	昭和46年 政令第276号
가와사키시(川崎市)	1,425,512	昭和47年4月1日	
후쿠오카시(福岡市)	1,463,743	昭和47年4月1日	
히로시마시(広島市)	1,173,843	昭和55年4月1日	昭和54年 政令第327号
센다이시(仙台市)	1,045,986	平成元年4月1日	昭和63年 政令第261号
치바시(千葉市)	961,749	平成4年4月1日	平成3年 政令第324号
사이타마시(さいたま市)	1,222,434	平成15年4月1日	平成14年 政令第319号
시즈오카시(静岡市)	716,197	平成17年4月1日	平成16年 政令第322号
사카이시(堺市)	841,966	平成18年4月1日	平成17年 政令第323号
니가타시(新潟市)	811,901	平成19年4月1日	平成18年 政令第338号
하마마츠시(浜松市)	800,866	平成19年4月1日	
오카야마시(岡山市)	709,584	平成21年4月1日	平成20年 政令第315号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	717,544	平成22年4月1日	平成21年 政令第251号
구마모토시(熊本市)	734,474	平成24年4月1日	平成23年 政令第323号

자료: 일본총무성 지정도시목록(<http://www.soumu.go.jp/>)

○ 지정시 특례(일본 총무성 자료,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53149.pdf](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53149.pdf))

■ 사무배분상의 특례

- 예1)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 아동상담소 설치, 아동복지에 관한 현의 사무를 지정시에 수행
- 예2)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 시가화 구역 및 시가화 조정구역 구분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을 제외한 기본적인 도시계획 결정에 관하여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의 대부분 수행
- 예3) 도로에 관한 사무
  - 도로법에 따라 시내 지정 구간 이외의 국도 및 지방도의 관리
- 예4) 교육에 관한 사무
  - 현 부담 교직원의 임면, 급여 결정

〈표 4-3〉 정령지정도시의 사무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에 따른 사무	개별법에 의해 이양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li> <li>• (2) 민생위원회에 관한 사무</li> <li>• (3)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무</li> <li>• (4) 생활보호에 관한 사무</li> <li>• (5) 행려병자 및 행려사망인의 취급에 관한 사무</li> <li>• (5의 2)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무</li> <li>• (5의 3) 지적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li> <li>• (6) 모자 가정 부자 가정 및 미망인의 복지에 관한 사무</li> <li>• (6의 2)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li> <li>• (7) 모자보건에 관한 사무</li> <li>• (7의 2) 개호보험(간호보험)에 관한 사무</li> <li>• (8)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li> <li>• (8의 2)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li> <li>• (9)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li> <li>• (9의 2) 의료에 관한 사무</li> <li>• (10) 정신 보건 및 정신 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무</li> <li>• (11) 결핵의 예방에 관한 사무</li> <li>• (1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li> <li>• (13) 옥외 광고물 규제에 관한 사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법 17조 1) 지정도시 구역 내의 부현도 및 국도의 관리</li> <li>• 택지조성의 규제에 관한 사무</li> <li>• 지정도시 구역내의 건축물용 지하수의 채취허가</li> <li>• 유통업무지역 내에 있어서 기준 외 시설의 건설 허가 등</li> </ul>

■ 조직특례

- 일반 구(區) 설치

■ 재정특례

- 지방회발유 양여세 증액 가능

■ 행정감독 특례

- 자주적 행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사의 승인·허가·인가 등의 관여·감독을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관여를 제거하거나 지사의 관여대신 직접 각 장관의 개입을 필요로 함
  - 예) 지방채의 협의 또는 기채의 방법이나 상환방법 변경 협의시 장관이 관여함

## 2. 지정시와 구의 사무배분

- 사이타마시와 지바시를 대상으로 하여 시와 하부행정기관인 구의 사무배분에 대해 검토함
  
- 사이타마시의 특징
  - 사이타마현의 사이타마시는 2003년 우라와시, 오미야시, 요노시에의 3개 시가 합쳐져서 일본에서 13번째 정령지정도시가 된후 2005년 이와쓰키시를 이와쓰키구로 흡수함
    - 간토권에 속해 있으며, 사이타마현 남동부에 위치한 현청 소재지임
    - 사이타마시의 인구는 1,276,937명(2016년 6월 현재)으로 남성 639,984명, 여성 636,953명으로 이루어져있고, 면적은 217.43km<sup>2</sup>임
    - 사이타마시는 니시구, 기타구, 오미야구, 미누마구, 주오구, 사쿠라구, 우라와구, 미나미구, 미도리구, 이와쓰키구의 10개 구로 구성됨
  
- 사이타마시의 시청과 구청 사무배분
  - 사이타마시의 시청 업무
    - 사이타마시 시청의 조직은 20개의 국, 실, 위원회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
      - 사이타마시는 정령지정도시이기 때문에 소방국이 따로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와 비슷한 형태임
      - 특이점
        - 고정자산평가심의 위원회가 있어 고정자산에 대한 업무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음
        - 일반적인 복지사무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어린이 미래국을 조직하여 관리하고 있음

〈표 4-4〉 사이타마시 본청 기능 및 업무

조직	주요 업무
시장실	비서 및 섭외, 홍보 및 공청에 관한 업무
도시전략본부	중요정책의 기획 입안 및 종합 조정, 시의 종합 계획이나 중요사항의 조사, 기획, 행정재정개혁, 시티 세일즈, 올림픽·패럴림픽에 관한 업무
총무국	의회 및 시의 행정일반, 인사관리, 방재, 위기관리에 관한 업무
재정국	예산, 세기타 재정, 계약에 관한 업무
시민국	시민생활, 커뮤니티 진흥, 구 정치에 관한 업무
체육 문화국	스포츠 진흥, 문화진흥에 관한 것.
보건복지국	보건위생, 사회복지, 사회 보장에 관한 업무
어린이 미래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어린이 보육에 관한 업무
환경국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 폐기물의 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업무
경제국	상공업 및 관광,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도시국	도시계획, 공원 및 녹지, 시가지재개발,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업무
건설국	도로, 하천기타 토목, 건축, 영선 및 주택, 하수도에 관한 업무
소방국	소방에 관한 업무
출납실	회계 사무에 관한 업무
수도국	수도 사업에 관한 업무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교육, 사회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에 관한 업무
인사위원회 사무국	급여에 관한보고 및 권고, 경쟁시험, 전형에 관한 업무
감찰사무국	감사, 검사 및 심사에 관한 것.
농업위원회 사무국	농지 등의 이용관계의 조정 및 자작농의 창설 유지, 농지 등의 교환 분합기타 농지에 관한 업무
고정자산평가 심사위원회	고정 자산과세기록부에 등록된 가격에 관한 불복의 심사 결정에 관한 업무
의회국	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출처: <http://www.city.saitama.jp>

○ 사이타마시의 중앙구

- 사이타마시의 10개 구 중 중앙구의 사무를 보면 우선, 생활민원실, 구민생활부, 건강복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실·부 안에 과들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
  - 생활응원실: 주로 교통, 시설, 환경(폐기물) 등의 업무 수행
  - 구민생활부: 주로 대민업무 수행
    - 총무과나 커뮤니케이션과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구민과에서의 대민 업무 중 범죄자 명부를 보관한다거나 특별영주자 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다소 차이가 있음
    - 과세나 수납과 역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민세를 볼 때 우리나라로 보면 도세를 수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납세조합<sup>14)</sup>이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음
  - 건강복지부: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업무 수행
    - 보편적 복지 업무: 국민건강보험과 보편적 복지 수행을 위한 보험, 시설, 상담 등의 업무 수행
    - 특정인을 위한 복지로 부모와 유아를 위한 복지, 정신장애 혹은 신체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한 복지, 노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이점은 전쟁 관련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재일외국인을 위한 복지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임

○ 지바시의 와카바구 사무

- 지바시의 와카바구 구청은 지역진흥과, 시민과, 보험연금과, 노인장애인 지원과, 어린이 가정과, 사회원호과, 건강과의 6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음
  - 지바시의 경우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업무 수행
- 일본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개호보험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발달되어 있으며, 구청의 주된 업무는 복지관련, 세금 징수관련 업무, 증명서 발급 업무임

14) 납세자금의 저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된 납세저축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세금을 거둬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로 대부분은 상점회를 모태로 하는 지역별 조합임(한국조세연구소, 2005)

〈표 4-5〉 사이타마시와 지바시 구의 조직과 사무내용

사이타마시_중양구		지바시_와카바구		
실	구분	과	구분	
생활응원실	생활응원실	지역진흥과	관리팀	
			선거통계팀	
			지역 만들기 지원실	
구민생활부	총무과	시민과	생활안심실(안전·안심팀)	
	커뮤니티과		생활안심실(상담팀)	
	구민과		시민과	
	과세과		시청 앞 시민센터	
건강복지부	수납과	보험연금과	생 바닷가 시민센터	
	보건센터		오카 시민센터	
	복지과		국민건강보험팀	
	지원과		징수 대책팀	
	고령개호과	노인장애인지원과	노인 의료·연금팀	
	보험연금과		노인지원팀	
			장애지원팀	
			개호 보험 상담	
			보건복지 종합상담창구	
			어린이가정과	어린이 가정팀
			사회원호과	보호 1,2,3,4팀
	건강과	유아건강팀		
		건강교육팀		
		정신건강 및 난치병 상담팀		

출처: <http://www.city.saitama.jp/chuo>, <http://www.city.chiba.jp/wakaba>

### 3. 일본사례 시사점

- 수원시에서는 시본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 지정시에서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음
  - 주택관련 업무
    - 시영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 안내의 배포에 관한 것

- 사회복지 관련 책정 및 결정 업무
  -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것
  - 간병급부비용 등의 지급결정에 관한 것
  - 특별아동부양수당, 심신장애자복지수당 등의 인정에 관한 것
  - 요양비의 지급의 결정에 관한 것
  - 육아지원 의료비, 심신장애자 의료비 및 편모가정 등 의료비의 자격인정 및 지급의 결정에 관한 것
  
- 일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정령지정시의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의 기능배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임

## 제2절 우리나라 타 대도시 행정구 기능 및 사무

### 1. 성남시

- 수원시에 근접하면서 100만에 근접한 대도시로서 성남시 분당구의 조직과 업무 분석
- 수원시와 비교
  - 구청 조직편제 비교
    - 전반적으로 대도시로서 수원시와 같은 위상에 있지만 구의 조직편제는 일견 유사하면서도 차이를 보임
    - 구의 **세무업무 강화**
      - 세무과를 세무1과, 2과로 2개 과 운영
      - 시에서 세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1과, 세무2과인 2개과 운영
    - **노인복지업무**
      - 수원시는 구청 가정복지과에 노인장애인팀이 소속되어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복지팀이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음
    - **장애인복지업무**
      - 수원시는 구청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업무이나 성남시 분당구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업무임
    - **문화체육업무**
      - 성남시 분당구는 가정복지과에 문화체육팀이 존재하는데 이는 수원시 구청에 없는 조직임
      - 문화체육팀의 업무는 체육과 문화관련 업무로 수원시 행정지원과의 문화공보팀 업무와 유사함
    - **민방위팀**이 수원시와 다르게 건설과 하부조직으로 구성됨
      - 수원시의 경우 민방위팀은 종합민원과에 편제됨

- 수원시의 **안전건설**과 업무가 성남시에서는 보다 더 세분화되어서 과에 편재됨
  - 수원시의 경우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업무, 건설관련 업무, 도로업무, 하천관리업무, 녹지공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성남시는 해당업무를 세 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표 4-6〉 수원시 구청 안전건설과와 성남시 분당구 관련 업무 비교

수원시 구		성남시 분당구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 건설행정팀 건설팀 도로정비팀 녹지팀 하천하수팀	건설과	건설행정팀 안전총괄팀 민방위팀 소하천관리팀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구조물관리팀 토목팀 기전팀
		녹지공원과	산림관리팀 녹지1팀 녹지2팀 공원1팀 공원2팀

- 청소행정업무
  - 수원시에서는 청소행정업무를 하는 청소팀이 환경위생과 소속이나 수원시 분당구는 도시미관과에 소속됨
- 도시미관업무
  - 성남시 분당구는 도시미관과 관련된 청소행정, 광고물관리팀을 별도 도시미관과를 구성하여 운영함
  - 수원시의 경우 해당업무가 건축과 광고물관리팀과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노점상단속은 안전건설과에서 수행함



〈표 4-8〉 성남시 분당구 조직 편제

조직	
행정지원과	총무팀 기획감사팀 자치지원팀 경리팀 정보통신팀
시민봉사과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관리팀 부동산관리팀
세무1과	도세1팀 도세2팀 <b>세무조사1팀</b> <b>세무조사2팀</b> 과표팀
세무2과	시세팀 지방소득세팀 재산세1팀 재산세2팀 체납세징수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b>노인복지팀</b> 통합조사관리1팀 통합조사관리2팀 희망나눔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보육지원팀 <b>문화체육팀</b>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주차관리팀 산업경제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환경보호팀 생활수질팀 식품위생팀 위생관리팀
건설과	건설행정팀 안전총괄팀 <b>민방위팀</b> 소하천관리팀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구조물관리팀 토목팀 기전팀

조직	
녹지공원과	산림관리팀 녹지1팀 녹지2팀 공원1팀 공원2팀
건축과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지도팀 건축물관리팀
도시미관과	도시미관팀 광고물관리팀 청소행정팀

## 2. 고양시

- 수원시와 동일하게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의 일산서구 조직과 업무 분석
- 수원시와 비교
  - 구청 조직편제 비교
    - 전반적으로 대도시로서 수원시와 같은 위상에 있지만 구의 조직에 있어서 다른 점들이 존재함
    - 경제와 교통의 분리
      - 수원시: 경제와 교통을 합쳐 경제교통과에서 지역경제업무와 교통관련 업무수행
      - 고양시: 교통관련업무는 교통행정과의 별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관련 업무는 산업위생과의 산업일자리팀에서 수행하고 있음
    - 문화체육업무
      - 고양시의 경우 산업위생과 산하에 문화체육팀을 두어 운영함
    - 청소행정업무
      - 고양시는 청소행정업무를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환경녹지과에 배치함
    - 녹지관리, 생태하천업무
      - 고양시의 녹지관리와 생태하천업무는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환경녹지과 산하에 있음

- 민방위업무
  - 수원시는 민방위업무가 종합민원과 업무인데 반해 고양시는 안전건설과 업무임
- 주택업무
  - 수원시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관리업무가 시본청 업무로 관련 조직에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고양시는 구청 건축과 산하에 주택팀을 두어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
  - 수원시는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업무이지만 고양시 일산서구의 경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업무임
- 장묘업무
  - 수원시는 장묘(매장 및 묘지업무)업무를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노인장애인팀에서 수행하고 있음

〈표 4-9〉 수원시 구청과 고양시 일산서구 조직 및 기능 비교

	수원시 구청(4개구)		고양시 일산서구	
<b>경제업무</b>	교통업무와 같이 편재됨 → 경제교통과		교통업무와 분리됨 산업위생과 산업일자리팀에서 경제업무 수행	
<b>문화체육업무</b>	종합민원과	문화공보팀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b>청소행정업무</b>	환경위생과	청소팀	환경녹지과	청소행정팀
<b>녹지관리업무</b>	안전건설과	녹지팀	환경녹지과	녹지관리팀
<b>하천업무</b>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	환경녹지과	생태하천업무
<b>민방위업무</b>	종합민원과	민방위팀	안전건설과	재난민방위팀
<b>주택업무</b>	별도조직 없음		건축과	주택팀
<b>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b>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b>장묘업무</b>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

- 수원시의 경우 시본청 업무인데 고양시의 경우 구의 업무인 경우
  - 공동주택관리업무
    - 고양시 일산서구의 건축과 주택팀 업무임
    - 수원시는 시본청 업무인데, 수원시의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불법 행위 단속 및 처벌 업무를 수행함
  - 개발행위허가
    - 고양시 일산서구의 건축과 도시정비팀 업무임
    - 수원시의 경우 그린벨트내 개발행위허가는 시본청업무임
  - 체육시설업 신고관리(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기타체육시설업)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관리
  - 경로식당지원

〈표 4-10〉 고양시 일산서구 조직편제

조직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 주민자치팀 예산감사팀 기획홍보팀 경리팀 정보통신팀
시민봉사과	시민봉사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관리팀 지적정보팀 토지관리팀
세무과	시세팀 지방소득세팀 토지재산팀 주택재산팀 도세팀 체납관리팀
시민복지과	사회복지팀 통합조사관리1팀 통합조사관리2팀 무한돌봄팀

조직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보육지원팀 노인/장애인팀
산업위생과	산업일자리팀 <b>문화체육팀</b> 위생관리팀 위생지도팀
환경녹지과	환경보호팀 <b>청소행정팀</b> <b>생태하천팀</b> <b>녹지관리팀</b>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도로관리팀 생활민원팀 <b>재난민방위팀</b>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b>과태료 관리팀</b>
건축과	건축팀 <b>주택팀</b> 건축지도팀 도시정비팀 광고물정비팀

### 3. 성남시, 고양시 사례의 함의점

□ 조직구성

○ 민방위업무

- 성남시와 고양시 모두 민방위업무는 재난, 안전업무로 보고 안전건설과 혹은 건설과 업무로 봄

○ 문화체육업무

- 수원시는 문화체육업무를 행정지원과 업무로 구분하는데 반해 고양시는 산업위생과에 편재하고, 성남시는 가정복지과 업무로 편재함

- 청소행정업무
  - 청소행정업무를 수원시는 위생관리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성남시는 도시미관차원에서 고양시는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함
  - 수원시는 환경위생과, 성남시는 도시미관과, 고양시는 환경녹지과에 편재됨
- 수원시에서는 시본청 업무인데 고양시와 성남시 모두 구청업무인 업무
  - 체육시설업 등록 및 관리
  - 출판소 및 인쇄소 관리
  - 무료경로식당, 식사배달 지원사업



## 제5장

# 수원형 시·구 기능분배 모형 도출

---

제1절 기능배분의 기본원칙 및 모형도출

제2절 시·구 기능배분 모형창출



## 제5장 수원형 시·구 기능분배 모형 도출

### 제1절 기능배분의 기본원칙 및 모형도출

#### 1. 민주성과 효율성

- 일반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원칙임(심익섭, 2001)
  - 시와 행정구의 기능배분에도 적용가능
  
- 행정구(하부행정기관) 설치목적: 효율성과 주민편의성 제고
  - 효율성: 업무중복, 위임과 실제의 혼란, 서비스 규모/서비스 대상에 대한 구분 검토 및 효율성 확보
    - 정부기능의 합리적 배분기준: 사회적·집합적 선택원칙을 통해 비용 최소화를 위한 배분기능의 능률화 추구(고경훈, 2012)
      - 조직 및 직무상 사무중복의 검토를 통한 업무중복 최소화
    - 위임과 실제의 혼란 검토
      - 시와 구의 기능배분은 각각에 기능을 분담시켜 그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주민편의성: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최대한 구중심으로 기능 배분, 업무구분의 모호성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 최소화
  
- 사무배분의 원칙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의 원칙, 행정사무의 통일성과 경제성원칙, 조직 및 직무상 사무중복의 검토원칙이 있으며, 이는 모두 민주성, 효율성과 연관됨
  -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원칙으로는 현지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금창호·박기관, 2012)이 제시되는데 이 또한 시와 구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음

〈표 5-1〉 사무배분 원칙

기준		내용
민주성 및 주민 편의성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혹은 구의 사무가 지역주민의 편의나 복리증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판단</li> <li>•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동이나 구에 배분</li> <li>• 현지성의 원칙에 해당함</li> </ul>
효율성	행정사무의 통일성과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사무가 한 구청의 범위를 벗어나 인근의 타 구에 범위를 확대시킬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 고려</li> <li>• 통합성의 원칙: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는 상급 기관에서 업무 수행</li> <li>• 경제성의 원칙: 정책의 효율적 집행위해 사무를 각 단체의 규모, 행·재정능력 및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도모할 수 있는 기관에 업무 배분</li> </ul>
	조직 및 직무상 사무중복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해소하기 위해 시본청과 구간, 구 사무간 사무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이에 따른 재조정</li> <li>• 법령에 의하지 않은 사무배분상의 중복은 자칫 시 본청에게는 권한만 부여하고 구청에는 책임만 부여하게 되어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초래</li> <li>• 불경합의 원칙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관간 상호 경합되지 않도록 사무의 소속과 처리의 권한 및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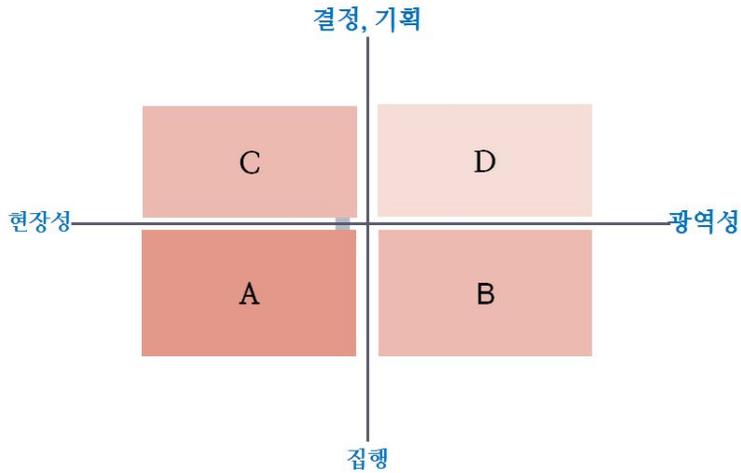
자료: 정창화·한부영, 2005; 금창호·박기관, 2012 정리함

## 2. 정책성격과 업무범위(성격)

- 정책성격: 정책결정 및 기획 vs. 정책집행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성격을 기능적으로 정책결정기능, 정책집행, 정책지원 기능으로 분류 가능
  - BRM(Business Reference Model;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수행과정의 분류 기준이기도 함
  - 시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시본청은 주로 정책결정기능을 주로 하고 하부행정기관인 행정구는 집행기능을 주로 함

- 업무범위(성격): 광역성 vs. 현장성
  - 광역성은 시 전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특히 이는 기능배분의 기준인 통일성, 경제성과 연관됨
  - 현장성은 주민생활현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민편의성과 연관됨-현장성의 의미이기도 함
  
- 정책성격과 업무범위 매트릭스 구성
  - 정책성격과 업무범위를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하여 매트릭스 구성
  - 시청의 업무를 < 그림 5-1 > 매트릭스 4분면에 배치하여 행정구로 이관할 업무 선정

	A	B, C	D
업무조정	적극적으로 구로 업무 이관 추진	이관여부에 대한 검토	시청 본연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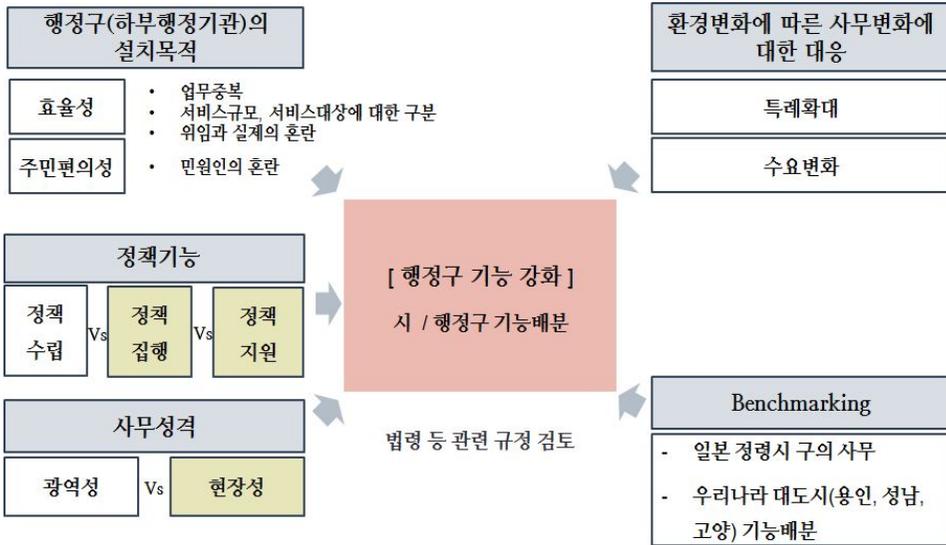
<그림 5-1> 사무배분 기준 매트릭스

## 제2절 시·구 기능배분 모형창출

### 1. 시·구 기능배분 모형

-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한 기능배분
  - 업무중복 검토 및 최소화
    - 다만, 조직의 유지, 지원 기능은 제외
    - 동일 업무라 하더라도 세부내용에서는 차이가 발생함으로 각 시청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를 배분한 경우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음  
예) 정책결정, 실행계획 수립(시)-정책집행, 실태조사(구)
  - 서비스 규모, 서비스 대상에 대한 시와 구간의 업무 배분의 적절성
  - 위임과 실제의 혼란 검토 및 정리
    -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권한과 책임의 혼란 문제 발생
  - 주민편의성과 주민혼란
    - 수원시의 특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함
      -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 업무와 수원시의 시 업무간 오해
      - 자치구와 행정구 업무의 혼란: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행정구는 하부행정기관인데 이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혼란
    - 이외에 순수하게 업무구분의 애매모호로 인해 주민 혹은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는 업무 검토
- 정책기능, 업무성격(범위)을 고려한 기능배분
  - 정책집행의 성격이 강하고, 현장성(현지성)의 성격이 강한 업무는 구로 이관
- 법령 등 관련 규정 검토
  - 법령상 시에서 구로 위임가능 여부 확인
    - 정책집행의 성격을 띠고 현지성이 강한 업무라 하더라도 법령상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 구 이관 업무에서 제외
  - 명백한 위임규정이 없이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검토 및 위임규정의 명확화

- 타 시의 기능배분 벤치마킹
  - 일본의 지정시의 구 업무 검토
  - 수원시와 유사하게 행정구를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의 사무배분 검토
  
- 환경변화에 따른 사무변화에 대한 대응
  - 수원시는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는데 이후 100만 대도시로 사무특례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확대될 사무특례의 검토와 구 이관 가능성 검토



〈그림 5-2〉 시-구간 기능배분 모형

## 2. 시·구 기능배분 프로세스

### □ 1단계: 시 업무의 정책성격 및 업무성격(범위) 분석

- 현재 조직도표상의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각 업무의 정책성격 및 업무성격 설문조사 실시
- 설문결과 토대로 업무의 정책성격과 업무성격(범위)에 따라 사무배분 기준 매트릭스에 업무배치
- BRM 기준상 수행과정(정책수립-정책집행-정책지원)을 기준으로 재조정
  - 한 업무라 하더라도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지원 모든 성격을 갖거나 두 개의 정책기능을 갖는 업무는 구 이관에서 제외
  - 지원기능을 갖는 업무는 구 이관에서 제외
  - 순수 정책집행·실행 기능만을 갖는 업무가 구 이관 우선 대상임

〈표 5-2〉 BRM-수행과정 기준

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지원
기획·조정	개발·개선	보고·전달
수립·개선	관리·감독	연구·조사
제정·개정	수행·집행	평가·감사

### ○ 기능재조정 기준

〈표 5-3〉 시(본청)-구청간 기능재조정 기준

본청기능	구청기능
<b>기획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문제의 대안 제시</li> <li>• 종합적인 집행기능의 계획수립</li> <li>• 타 기관(특별행정기관, 교육청 등)과의 협의를 요하는 계획 기능</li> </ul>	<b>기획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기능은 원칙적으로 본청에서 독점수행</li> <li>• 집행계획의 수립 또는 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집행·관리)계획수립 등</li> </ul>
<b>관리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 성격의 관리기능(예: 감사, 감독, 수감 등)</li> <li>• 계약관리 기능</li> <li>• 시설 및 재물관리</li> <li>• 본청 수행 기능에 파생되는 관리기능</li> </ul>	<b>관리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기능 수행에 파생되는 관리기능</li> <li>• 기관 유지기능</li> <li>• 시설관리(유지보수), 재물관리 등</li> <li>• 행정기능 대상 관리(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관리대상 업소 등 사업체 또는 기업체 등)</li> </ul>
<b>결정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대상과 범위의 결정기능</li> <li>• 정책집행 수준(보조금 지급 등)의 결정기능</li> </ul>	<b>결정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을 위한 조사·확인 기능</li> </ul>

본청기능	구청기능
<b>집행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 위임사무로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기능</li> <li>•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으로 보조금 지급 등</li> </ul>	<b>집행기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의 집행이 필요한 기능</li> <li>• 구별 업무량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li> <li>•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집행 기능</li> <li>• 민원접수기능</li> </ul>

- **2단계: 각 부서의 과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 실시**
  - 시청의 각 과장 및 팀장. 각 구청(4개구)의 과장 및 팀장
  - 구로 이관할 업무 및 구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심층 인터뷰
    - 설문에 대한 보충 및 설문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구청 내 업무 조정 내용 추가 확인
    - 시본청 및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이관을 필요로 하는 업무 발굴
  
- **3-1단계: 법령 검토를 통해 구 이관 가능성 여부 확인**
  
- **3-2단계: 2단계에서 걸러진 업무들의 이관 가능성에 대한 타 시의 현황 확인 및 수원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참고**



## 제6장

# 수원시 행정구 기능강화 방안

---

제1절 기능재조정 대안 1

제2절 기능재조정 대안 2-인터뷰 요약

제3절 기능(사무)별 기능 조정-인터뷰 상세

제4절 기능배분 외 행정구 기능강화 방안

제5절 수원형 모형의 추진로드맵



## 제6장 수원시 행정구 기능강화 방안

### 제1절 기능재조정 대안 1

- 시본청 및 구청의 단위사업을 분석(<그림 5-1>참고)하여 1차적으로 일괄적으로 제시
- 기준: 집행업무, 현장위주업무, 단순관리위주 업무는 구청으로, 정책기획 및 결정업무, 광역업무 등은 시청업무로 이관

#### 1.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 기획조정실

<표 6-1>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기획조정실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자치 행정과	자치 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은 구청 업무기이도 함</li> <li>• 명확한 업무배분 안됨</li> <li>• 장기적으로 동 주민자치회가 42개동 모두 운영될 경우 시청 업무 과부하</li> <li>• 주민자치회 업무는 현장성이 강함</li> </ul>	행정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주민자치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반 운영 지도</li> </ul>		
	주민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및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ul>	행정 지원과

□ 일자리경제국

〈표 6-2〉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일자리경제국

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일자리 정책과		중장년 일자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선발 및 포기자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적인 일자리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으로 구청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li> <li>선발 후 구청에서 배치 관리함</li> <li>현장중심기능</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근로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공고, 예산관리 등 공통적인 사무는 시청에서 관장하되, 수요조사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과적임</li> <li>단위기능 중 일부 이관</li> <li>현장중심기능</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공동체 사업장 월보 제출</li> <li>관리카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달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후 경기도에 결과제출</li> <li>현장중심기능</li> </ul>	경제 교통과
지역 경제과		지역경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토산업조사 cf) 세무분장표 O, BRM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 조사기능</li> <li>단순집행업무</li> <li>현장중심기능</li> </ul>	경제 교통과
		전통시장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ul>	경제 교통과
기업 지원과		소비자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계량기 단속 및 수시 검사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량기 지도관리 및 정기검사 업무는 구청업무임</li> <li>계량기 정기검사시 불법계량기 단속 가능</li> <li>단순 집행업무</li> <li>현장중심 기능</li> </ul>	경제 교통과
		노사 문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소개소 등록 및 사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등록 업무</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위 구인광고 지도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소개소 사후관리업무와 연계됨</li> <li>조사, 지도, 단속 업무</li> </ul>	경제 교통과
생명 산업과		농업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일손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 및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일손문제 해결은 권선구 또는 장안구에 집중되는</li> </ul>	경제 교통과

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기능으로 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현장중심기능 • 구별 업무량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농업정책팀	• 농지전용신고 접수	• 현장중심기능 • 민원접수기능	경제 교통과
세정과		세외수입팀	• 과태료 체납징수 제고 및 관리(당해년)	• 현장 중심의 기능 • 조사·확인·지도·단속 기능	세무과 징수팀

□ 복지여성국

- 복지기능은 장기적으로 현재 시본청-구청-동으로 3계층화 되어 있는데 향후 시본청-동의 2계층으로 기능 조정

〈표 6-3〉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복지여성국

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사회 복지과		복지자원 관리팀	• 명절결연사업	• 이웃사랑나눔운동 전개 •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수급가구 위문 • 이웃사랑실천유공자 발굴 표창 • 현장중심기능	사회 복지과
		휴먼복지 지원팀	• 긴급지원결정(연장) 위한 조사 • 긴급복지지원 사후조사	• 긴급지원결정(연장승인)을 위한 조사업무는 모두 구청으로 일괄 이관 • 현장중심기능	사회 복지과
			• 무한돌봄 사후조사	• 무한돌봄 선지원에 따른 후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 • 현장중심기능 • 조사·확인 기능	사회 복지과
			• 무한돌봄 심의	• 무한돌봄 선지원 건에 대한 사후조사 • 현장중심기능 • 조사·확인 기능	사회 복지과
			• 위기가정 무한돌봄 일반	• 무한돌봄 결정, 지급, 사후조사를 제외한 기타 업무 및 민간	사회 복지과

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지원연계(무한돌봄성금, 휴먼 서비스긴급지원) • 현장중심기능	사회 복지과
		• 사례관리사업비 운영	•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지원	사회 복지과	
		• 통합사례 관리자 업무 추진 관리	• 통합사례관리사 업무추진 실적관리 • 현장중심기능		
	•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 지원	•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연계 지원 • 현장중심기능	사회 복지과		
	자활 지원팀	• 자활지원 위한 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 현장중심기능 • 집행계획의 수립	사회 복지과	
여성 정책과	여성 정책팀	• 가족실태조사	• 단순 조사업무	가정 복지과	
	건강 가정팀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및 사후관리	• 신고, 등록 업무는 요건만 갖추면 업무개시 가능함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 결혼중개업자 종사자 관리	• 단순 관리업무	가정 복지과	
	다문화팀	• 외국인 주민 지원	• 단순지원 업무 • 현장중심 기능	기정 복지과	
• 다문화가족 및 자녀지원		• 학습지 지원 등 지원 업무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노인 복지과	노인 복지팀	• 기초수급자 노인 월등 난방비 지원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 무료 경로식당, 식사 배달 지원사업	• 현장중심 기능 • 성남시, 고양시의 경우 구청업무임	가정 복지과	
	노인 시설 지원팀	• 경로당 지원	• 운영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정부양곡,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지원 등 단순 지원업무 구 0관 • 단순 집행 지원 업무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정책팀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가정 복지과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발급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가정 복지과	
	장애인 복지팀	• 언어발달지원 사업	• 지역사회복지사업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 지역사회복지사업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 지역사회복지사업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 장애인등록관리	• 현장중심 기능 • 행정대상 관리 기능	가정 복지과
		• 장애인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 지원 사업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 장애인 출산비 및 이사 비지원 사업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 보장구 지급 업무는 구청 업무임(업무분장표)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 단순 관리업무 • 현장중심 업무	가정 복지과
		•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 현장중심 기능	가정 복지과
보육 아동과	보육 지원팀	• 보육시설 운영지원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가정 복지과
	아동 복지팀	• 결식아동 급식지원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가정 복지과
	드림 스타트업	• 지역아동센터	• 현장중심 기능 • 집행위주 업무	가정 복지과

□ 문화교육국

- 문화교육관련 기능 중 각종 문화관광 사업체 등록 및 관리업무는 단순집행 업무에 해당하고, 이 업무들은 구청으로 이관 가능

<표 6-4>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문화교육국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문화 예술과	예술팀	• 공연장등록업무	• 현장중심기능 • 조사·확인 기능	경제교통과
		• 영화상영관 관련업무	• 등록, 변경등록, 폐업등록, 등 록증재교부 등 업무 • 현장중심기능 • 조사·확인 기능	경제교통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상영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기능</li> </ul>	경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사인쇄소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신청, 등록증명, 등록취소, 변경등록신청, 폐업신고, 행정처분</li> <li>현장중심기능</li> <li>조사·확인 기능</li> </ul>	경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 업무 지도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확인·지도감독 기능</li> </ul>	경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사업 관련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 및 취소, 갱신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li> <li>현장중심 기능</li> <li>현장민원 대응기능</li> </ul>	경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확인 기능</li> </ul>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사업체 관련업무 * 관광사업체: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도양수 신고수리,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휴폐업 합병신고, 사업개선 명령</li> <li>조사·확인 기능</li> <li>현장중심 기능</li> <li>현장민원 대응 기능</li> </ul>	경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객 이용 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및 관리</li> <li>현장중심기능</li> <li>조사·확인 기능</li> </ul>	경제교통과
교육청 소년과	청소년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가정 청소년 영어 교육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지원업무</li> <li>현장중심기능</li> </ul>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집행업무</li> <li>현장중심기능</li> </ul>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증 관리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관리업무</li> <li>현장중심기능</li> </ul>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 폴리스 운영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지원업무</li> <li>현장중심 기능</li> </ul>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모 순찰대 운영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지원업무</li> <li>현장중심 기능</li> </ul>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확인·지도·단속 기능</li> </ul>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평생 학습팀	•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지원사업	• 현장중심기능	사회복지과
		•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 현장중심기능	사회복지과
체육 진흥과	체육 시설팀	• 체육시설업 신고 및 사후관리	• 조사·확인 및 지도 감독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 환경국

- 환경국의 5개과 업무 중 구로 이관 가능한 업무를 분석함
  - 하수관리과 업무는 현장중심의 전문성이 강한 업무로 구 이관업무 대상이 아님
  - 화장실문화팀의 기능은 현장중심의 집행위주의 기능으로 구청으로 이관 가능하나, 수원시의 조례에서 화장실 관리는 화장실이 속한 재산관리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표 6-5>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환경국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환경 정책과	환경 정책팀	• 명예환경통신원	• 명예환경감시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긴요 한 기능임 • 현장중심 기능	환경 위생과
기후 대기과	생활 환경팀	• 자동차 공회전 단속	• 차고지, 주차장등의 공회전 제 한지역 고시지정기능 존치 및 지도 점검 기능만 구청이관 • 지정고시 기능은 분청에 존치 하여 지정고시에 관한 정책결 정은 분청에서 수행 • 다만, 지정고시를 위한 구청의 견 수렴을 의무화 • 지도·점검·단속 등 현장중 심의 기능으로 구청 이관	환경 위생과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운행 중인 차량의 매연 측정 및 행정처분	환경 위생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환경소음관련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기능</li> <li>조사·확인·지도·단속 기능</li> <li>에어컨 실외기 등 생활상 발생하는 소음 등의 관리</li> <li>민원업무</li> <li>현장중심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공해 관련 생활민원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지도 점검 업무</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오염 전광판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환경 전광판의 유지관리</li> <li>단순 집행업무</li> <li>현장중심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빛공해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조명관리, 민원처리 등</li> <li>현장중심기능</li> <li>민원 대응, 조사·확인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에너지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강기 인허가 및 안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강기 일반,</li> <li>승강기 휴폐지 신고</li> <li>정기검사 결과 승강기 관리</li> <li>현장중심의 기능</li> <li>민원 대응, 조사·확인 기능</li> </ul>	안전 건설과 안전 정책팀
자원 순환과	청소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비구입은 본청 존치</li> <li>유지관리는 구청 이관</li> <li>현장중심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차량 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지정 판매소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기능</li> <li>집행업무</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장비 및 인력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미화원 복무관리</li> <li>현장중심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기능</li> <li>단속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용 쓰레기 봉투 및 감면자 봉투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음식물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 . 점검 및 신고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 년 2회이상</li> <li>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 신고 수리</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단속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위생 정책과	위생 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통 월빙특화 거리 관련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 조성 관리</li> <li>- 인센티브 지급</li> <li>- 거리 결과분석</li> <li>- 홍보업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기능</li> <li>현장중심 기능</li> <li>구별 업무량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li> </ul>	영통구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해석거리음식문화촌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관리</li> <li>- 축제운영</li> <li>- 인센티브지급</li> <li>- 결과분석 및 홍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운영</li> <li>현장중심 기능</li> <li>구별 업무량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li> </ul>	팔달구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범음식점 지정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범음식점 운영관리</li> <li>모범음식점 이용홍보</li> <li>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보고</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위생 지도과	위생 지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기능 식품영업의 지도 단속</li> <li>위반업소행정처분 및 사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지도·단속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소 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지도·단속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지도·단속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수립, 지도단속,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li> <li>집행계획의 수립 기능</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지도·단속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지도·단속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안전관리 업무</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지도·단속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불량식품 단속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행계획의 수립기능임</li> <li>현장중심의 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위생감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생교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위생감시원 지원 업무 중 활동비지원은 구청업무로도 되어 있음. 명확한 업무구분필요</li> </ul>	환경 위생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해축지정관리</li> <li>-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기능</li> </ul>	
	위생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위생 관련 허가 및 신고</li> <li>-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재교부 및 행정처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민원 업무</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관련 업무</li> <li>- 영업신고</li> <li>- 영업사고사항 변경신고</li> <li>- 영업자지위 승계신고</li> <li>- 폐업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단순 신고업무 및 집행업무임</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 얼음판매업 관련업무</li> <li>- 영업신고</li> <li>- 영업업자 지위승계신고</li> <li>- 신고사항 변경신고</li> <li>- 폐업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민원기능</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냉장냉동업 관련업무</li> <li>- 영업신고</li> <li>- 신고사항 변경신고</li> <li>-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li> <li>- 폐업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민원대응, 신고에 대한 대응</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소분업 관련 업무</li> <li>- 영업신고</li> <li>- 신고사항 변경 신고</li> <li>- 지위 승계 신고</li> <li>- 폐업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민원대응</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제조 가공업 관련업무</li> <li>- 영업신고</li> <li>- 신고사항 변경신고</li> <li>- 지위승계신고</li> <li>- 폐업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민원대응</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관련 업무</li> <li>- 영업신고</li> <li>- 신고사항 변경신고</li> <li>-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li> <li>- 폐업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민원대응</li> </ul>	환경 위생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신고</li> <li>- 신고사항 변경신고</li> <li>- 영업자 지위승계신고</li> <li>- 폐업신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민원대응</li> </ul>	환경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수 사용업소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관련 영업에서 수행하는 법령상 사무</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민원대응</li> </ul>	환경 위생과

□ 도시정책실

- 도시정책실 7개 과 중 법령으로 설치와 기능이 규정된 도시계획사업기획단과 수원시 전체 광역업무에 해당하는 군공항이전과는 기능재배분 대상에서 제외됨
- 도시계획과의 업무는 기획업무 및 수원시 전체 즉, 광역적 성격의 업무로 구 이관 사업이 없음
- 주택과 업무 중 장기적으로 빈집처리에 관한 업무가 신규로 나올 수 있음. 이에 대한 업무배분 검토

<표 6-6>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도시정책실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주택 과	주택 문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사업자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대응업무</li> <li>현장위주 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관리자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구별 업무량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li> </ul>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관리업 등록사항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관리사업자 신청 변경신고</li> <li>민원 대응</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내 공사발주 및 선거 관련 서면·유선 상담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기능</li> <li>민원 대응 기능</li> <li>구별 업무량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li> </ul>	건축과

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관리사 변경 및 신고 등</li> <li>현장중심 기능</li> <li>구별 업무량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민원 대응 기능</li> <li>조사·확인 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수립 운영</li> <li>현장중심 기능</li> <li>구별 업무량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관련 민원 상담 및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법 59조 관리 감독관련</li> <li>현장중심 기능</li> <li>민원 대응 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지도·단속 기능</li> <li>구별 업무량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li> </ul>	건축과
	주거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주거지원 일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취약계층 지원</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사회복지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일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취약계층 지원</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사회복지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년소녀가정 등 주거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취약계층 지원</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사회복지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사업 일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취약계층 지원</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사회복지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주택지원 대상자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관리</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임대주택 현황관리</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학계층 주거지원, 현물 지원사업(노후가구 수선 등), 주거현황실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현황 확인조사</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 기능</li> </ul>	건축과
	건축 과	건축 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측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측용역성과물 활용</li> <li>- 향측이행강제금 부과관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청에서도 활용가능한 업무</li> <li>조사·확인 기능</li> </ul>	건축과

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변경, 휴업, 폐업신고</li> <li>건축사 업무신고 및 행정처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대응</li> <li>현장중심 기능</li> </ul>	건축과
		건축 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확인·지도·단속 기능</li> </ul>	건축과
도시 재생과	도시재생 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궁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구별 업무량 편차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기능</li> </ul>	팔달구 건축과	
토지 정보 과	토지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음</li> <li>집행기능에 대한 계획 기능</li> <li>현장중심 기능</li> </ul>	종합 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명예 지도 위원 위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중개업소 정보제공 및 현장지도</li> <li>현장중심 기능</li> <li>민원 대응 기능</li> </ul>	종합 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 대상 통보</li> <li>- 부과 및 징수 관리</li> </ul> </li> <li>부과 대상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확인 기능</li> <li>현장중심 기능</li> </ul>	종합 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단순 집행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청업무이나 시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구청으로 완전 이관 필요</li> <li>현장중심 기능</li> <li>지도·단속 기능</li> </ul>	종합 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중개업소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 기능</li> <li>지도·단속 기능</li> </ul>	종합 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거래 허가 사후 실태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 기능</li> </ul>	종합 민원과	
		지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상땅 찾기 민원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기능</li> <li>민원 대응 기능</li> </ul>	종합 민원과
		새주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번호판설치 원인자 부담 등 시설물 설치 지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li>조사·확인 기능</li> </ul>	종합 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번호판 유지망 교부</li> <li>노후 등 건물번호판 재교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 기능</li> </ul>	종합 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판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및 유지보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기능</li> <li>옥외광고물과 일괄처리</li> </ul>		종합 민원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 설치비용 장수 등 시설물 설치 - 유지관리(정비계획 일제 조사 등) • 설치 및 유지보수	• 단순 집행업무 • 조사 확인 기능	
		• 도로명 주소 고지(서면고지)	• 현장중심기능	종합 민원과
		• 상세주소 부여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종합 민원과
		• 버스 승강장 안내시설 설치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종합 민원과
		• 지하철도시설 안내시설 설치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종합 민원과

□ 안전교통국

〈표 6-7〉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안전교통국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재난 관리과	안전 점검팀	• 건축물안전점검 민원 처리 • 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 청구에 따른 민원처리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 민원 대응 기능	건축과
	자연 재난팀	• 자연재난 피해 접수 및 조사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안전 건설과
		• 재해 위험지역 조사 및 점검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안전 건설과
		• 수방자재 응급복구 장비 관리	• 현장중심 기능	안전 건설과
		• 방재 시설물 점검 관리	• 현장 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안전 건설과
		• 자율방재단 운영	• 현장 중심 기능	행정 지원과
교통 정책과	자동차 관리팀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등록업무 * 자동차 관리사업: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 현장중심 기능 • 민원 대응 기능 • 구청별 업무편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자동차 매매업 들이 권선구에 몰려있음	경제 교통과
		•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 매매업	• 현장중심 기능 • 지도·단속 기능	경제 교통과

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대중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업</li> <li>- 폐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 사업등록 및 변경, 지도단속</li> <li>- 매매업</li> <li>- 정비업</li> <li>- 폐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지도·단속 기능</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변경 차량 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지도·단속 기능</li> </ul>	경제 교통과	
	주차 시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주차장 건설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단순 집행업무</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주차장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지도·관리</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파크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ul>	경제 교통과	
	대중 교통과	물류 수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민원 대응 기능</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운송사업 행정처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지도·단속 기능</li> </ul>	경제 교통과
		교통 지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지도·단속 기능</li> </ul>	경제 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용차량 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지도·단속 기능</li> </ul>	경제 교통과	
교통 시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시설물 및 각종 교통시설물 관련 민원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민원 대응 기능</li> </ul>	안전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시설물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기능</li> <li>• 집행업무</li> <li>• 경찰청과 관련</li> </ul>	안전 건설과	
	버스정 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정류소 시설 설치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민원 대응기능</li> </ul>	경제 교통과		
도로과	도로 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li> <li>- 신규등록</li> <li>- 주기적 신고</li> <li>- 등록증 및 수첩 재교부</li> <li>- 폐업신고 및 행정처분, 기재사항 변경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민원 대응 기능</li> </ul>	세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 재산 파악 실태 조사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조사·확인 기능</li> </ul>	안전 건설과		

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팀			
		•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 실태 파악 및 관리	• 현장 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안전 건설과
		• 무주부동산 등기등록	• 현장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종합 민원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현장중심 기능 • 지도·단속 기능	안전 건설과
	도로 정비팀	• 도로 순찰 및 점검	• 현장 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안전 건설과
		• 도로 유지 및 보수	• 현장 중심 기능	안전 건설과
		• 도로 유지 및 보수 계획 수립	• 현장 중심 기능 • 집행기능의 계획 수립	안전 건설과
		• 도로 시설물 순찰 및 점검	• 현장 중심 기능	안전 건설과
		• 도로시설물 총괄관리	• 현장 중심 기능	안전 건설과
		• 가로등 설치공사 설계 및 감독	• 현장 중심 기능	안전 건설과
		• 도로변 방음벽 설치 관리 감독	• 현장 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안전 건설과
		• 도로굴착 유지 및 관리 감독	• 현장 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안전 건설과
		• 도로표지판 유지 관리 및 감독	• 현장 중심 기능	안전 건설과
		• 지하보도 시설물 유지 보수	• 현장 중심 기능	안전 건설과
	•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 보수	• 현장 중심 기능	안전 건설과	
	도로 건설팀	• 도로건설 공사시행 및 관리 • 사설안내 표지판	• 현장 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안전 건설과
		• 전기관련 도로시설물 점검	• 현장 중심 기능 • 조사·확인 기능	안전 건설과
	자전거 문화팀	• 자전거 도로 공사감독	• 현장 중심 기능 • 단순 집행업무	안전 건설과
		•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 현장 중심 기능 • 구별 실시로 효과성 추구	안전 건설과
•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 현장 중심 기능 • 집행기능	안전 건설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자전거 대여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집행기능</li> </ul>	안전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교산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집행기능</li> <li>• 구별로 업무부담에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li> </ul>	안전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단방치자전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집행기능</li> </ul>	안전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자전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집행기능</li> </ul>	안전 건설과

□ 전략사업국

- 전략사업국 업무는 수원시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가 많음. 특히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업무는 전문적이고, 수원시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적 업무로 기능재배분 대상에서 제외됨

〈표 6-8〉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전략사업국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구청조직
과	팀			
균형 개발과	균형 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방재</li> <li>• 공사현장 재난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조사·확인·지도·단속 기능</li> </ul>	안전 건설과
도시디 자인과	광고물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목적 광고물 협의</li> <li>•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지도·단속 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광고물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단속 기능</li> <li>• 집행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 광고물 허가 (신규, 변경,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기능은 본청에 존치, 변경, 연장 기능은 구청으 로 이관</li> <li>• 현장 중심 기능</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후 속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 기능</li> <li>• 조사·확인</li> </ul>	건축과

## 2. 구청에서 본청으로 이관할 기능

- 기획 및 계획기능을 시청으로 이관
  - 다만, 집행을 위한 기획 및 계획기능은 구청에 존치
- 법무기능(행정심판, 소송 등)은 정책기획과 의회법무담당이 일괄 수행
- 시본청에서 일괄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시로 이관 검토

〈표 6-9〉 시청으로 이관할 기능: 구청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본청조직
과	팀			
행정 지원과	행정 관리팀	• 기록물 관리	• 일괄수행이 효율적임	시민 봉사과
		• 정보공개 관리	• 일괄수행이 효율적임	시민 봉사과
		• 주요현안 동향관리 • 여론 및 동향관리기능	• 종합적 수준에서 일괄 관리하 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	공보관
	기획 감사팀	• 쟁송사건 처리 • 소송업무관리	• 전문적 집행기능 • 통일적 기준의 적용	정책 기획과
		• 공무원 비리 및 진정민원 조사처리	• 통일적 기준의 적용 • 전문적 집행기능	감사관
		•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관리	• 일괄수행이 효율적인 기능	감사관
		• 산하 비위공무원 조사 및 징계요구	• 통일적 기준의 적용 • 전문적 집행기능	감사관
		• 자체 및 부분감사 추진	• 통일적 기준의 적용 • 전문적 집행기능	감사관
		• 법무업무 관리	• 통일적 기준의 적용 • 일괄수행이 효율적 기능	정책 기획과
		• 청문업무 관리	• 통일적 기준의 적용 • 일괄수행이 효율적 기능	감사관
		• 의회업무지원	• 통일적 기준의 적용 • 일괄수행이 효율적 기능	의회 사무국
		• 의회 행정사무감사	• 통일적 기준의 적용 • 일괄수행이 효율적 기능	감사관
		• 예산편성관리	• 종합적 계획 수립 기능 • 통일적 기준의 적용	예산 재정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본청조직
과	팀			
	문화 공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관련 행정소송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송업무</li> <li>전문적 집행기능</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정보 통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괄집행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li> </ul>	정보 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정보화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계획 수립 기능</li> </ul>	정보 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프트웨어 보급 계획 수립 및 수급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계획 수립 기능</li> <li>일괄집행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li> </ul>	정보 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도자료의 작성 (구정홍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괄집행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li> </ul>	공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포털시스템 운영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괄집행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li> </ul>	공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보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괄집행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li> </ul>	공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서버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괄집행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li> </ul>	공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운영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괄집행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li> </ul>	공보관		
종합 민원과	토지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공시지가 관련 소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 집행 기능</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관련 국가 소송 및 민사소송 관련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 집행기능</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매 계약 허가 관련 소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 집행기능</li> </ul>	정책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거래 계약 허가 위반자에 대한 처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관련 소송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 집행기능</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거래계약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토지 정보과
	지적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측량 수행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계획수립 기능</li> </ul>	토지 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측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토지 정보과
	민방위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방위 지원 일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수준에서 일괄수행 하는 것이 효율적임</li> </ul>	안전 정책과 민방위
	민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계획 수립</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세무과	재산세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소송</li> <li>재산세 부과 이의에 대한 행정소송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 집행기능</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본청조직
과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전적부심, 심사심판청구, 이의 신청 및 소송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 집행기능</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수립을 위한 지방세 추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계획 수립</li> <li>일괄 수행이 효율적임</li> </ul>	세정과
	법인 지방소득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납(배당)소송</li> <li>경매·배당이의 민사 소송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 집행기능</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개인 지방소득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소득세 납부홍보 등 계획 수립</li> <li>개인지방소득세 부과 및 과세자료 정비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계획 수립</li> <li>일괄 집행이 효율적임</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공보관 세정과
	시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외수입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계획 수립 기능</li> </ul>	세정과 세외수입
	도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추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계획 수립</li> <li>일괄 수행이 효율적임</li> </ul>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심판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li>일괄 수행이 효율적임</li> </ul>	세정과
사회복 지과	사회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유공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li>일괄 수행이 효율적인 기능</li> </ul>	사회 복지과
가정복 지과	가정 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종합대책 수립</li> <li>청소년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인 집행기능의 계획수립 기능</li> <li>정책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가능</li> </ul>	교육 청소년과
	보육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시설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별 지도감독 업무 과부하</li> <li>지도감독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li> </ul>	보육 아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예산 편성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수준의 계획 기능</li> </ul>	보육 아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li>일괄 수행이 효율적인 기능</li> </ul>	보육 아동과
환경 위생과	위생 지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심판</li> <li>소송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 집행기능</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청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관리원 소송 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 집행기능</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하수처리 시설 일반</li> <li>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집행)계획의 수립</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li>법령사무</li> </ul>	하수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면청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li> </ul>	자원 순환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본청조직
과	팀			
	환경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중이용시설 관리계획 수립</li> <li>실내공기질 계획 수립</li> <li>환경안심 어린이집 추진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계획수립</li> </ul>	기후 대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화성 환경 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계획수립</li> </ul>	기후 대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전 종합관리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성격의 관리계획 수립 기능</li> </ul>	환경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전 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전 시책 추진계획 수립은 본청에서 관장하고, 시책의 추진은 시책의 성격에 따라 본청, 구청, 사업소 등으로 기능 배분</li> <li>종합적 성격의 계획수립</li> </ul>	환경 정책과
	환경 지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음진동 방지 대책 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음진동 방지대책 계획 수립은 본청에서 관장하고, 대책의 추진은 성격에 따라 본청, 구청, 사업소 등으로 기능 배분</li> <li>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li> </ul>	환경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행차 공해저감관리 대책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li> </ul>	환경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산먼지저감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li> <li>통일적 기준을 적용한 집행기능</li> </ul>	환경 정책과
	위생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폐수 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li> <li>통일적 기준을 적용한 집행기능</li> </ul>	하수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li> </ul>	위생 정책과	
	건축과	광고물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따른 용역계획 수립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 시책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li> </ul>	도시 디자인과
안전 건설과	건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불용지 소송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 집행기능</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정책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행위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li>종합적 성격의 관리기능</li> <li>일괄집행이 효율적임</li> </ul>	도시 계획과
	건설 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빙기 안전대책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li> <li>통일적 기준의 적용</li> </ul>	재난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li> </ul>	안전 정책과

구분		단위기능	사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본청조직
과	팀			
	도로 정비팀	• 설해대책 계획 수립	• 종합적 성격의 (집행)계획 수립	재난 관리과
		• 시설물 정기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	• 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	도로과
		•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	도로과
		• 도로유지관리 소송수행	• 전문적 집행기능 • 통일적 기준의 적용	정책 기획과
		• 도로법 위반사건(과적) 계획 수립—단속	• 종합적 성격의 계획 수립	대중 교통과

## 제2절 기능재조정 대안2-인터뷰 요약

-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재조정안임
-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량, 업무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요청한 사항들임

### 1. 사무특성에 따른 조정

#### □ 구(區)로 이관 필요한 사무

〈표 6-10〉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할 기능

연번	기능(업무)	가능여부	특징	관련법	관련부서	
					시	구
1	밤샘주차단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단속체계의 효율화 방안 검토</li> <li>•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단속과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자동차운수법]</li> <li>• 동법 시행규칙</li> <li>• [여객자동차운수법]</li> <li>• 동법시행령</li> <li>• 동법 시행규칙</li> </ul>	대중교통과	경제교통과
2	직업소개소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적, 현장적 성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안정법]</li> </ul>	기업지원과	경제교통과
3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업무구분 안됨</li> <li>• 집행적, 현장적 성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중개사법]</li> </ul>	토지정보과	종합민원과
4	공동주택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일원화</li> <li>• 공동주택 관리 업무 중 구로 이관 가능한 단위사업 추출</li> <li>• 용인시 구청에 아파트관리팀이 업무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li> </ul>	주택과	건축과
5	임대사업자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에서 모두 관리하기 힘들</li> <li>• 집행적, 현장적 성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li> <li>• 동법 시행령</li> <li>• 동법 시행규칙</li> </ul>	주택과	건축과

연 번	기능(업무)	가능 여부	특징	관련법	관련부서	
					시	구
6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필증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규모에 따라 시와 구 업무 구분</li> <li>• 해당 사항도 [건축법] 적용되는지 검토 필요</li> <li>• 건물 신축, 증축 허가 부처와 다름에 따른 민원인 불편 야기정도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li> <li>• [정보통신공사사업법]</li> </ul>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7	조상땅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편의위해 시와 구 모두 시행</li> <li>• 명확한 업무분장 필요</li> </ul>		토지정보과	종합민원과
8	개발부담금 현지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업무이지만 집행적, 현장적 성격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li> </ul>	토지정보과	종합민원과
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적, 현장적 성격</li> <li>•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구로 이관</li> <li>• 구에 폐기물 관련 전문가 필요(지정폐기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관리법]</li> <li>•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li> <li>•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확인 업무처리지침]</li> </ul>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10	재활용 관련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단순집행업무들은 구로 이관(빈병 보증금 위반자 과태료 처분 및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li> </ul>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11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 다량배출장 사업장 중 일부 구로 이관</li> <li>•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장 지도점검을 구로 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법]</li> <li>• 동법 시행령</li> <li>• 동법 시행규칙</li> </ul>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연 번	기능(업무)	가능 여부	특징	관련법	관련부서	
					시	구
12	청소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에서 청소업체 선정하여 구로 배정</li> <li>• 구청별로 청소업체 선정시 비용 문제 고려-규모의 경제</li> </ul>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13	토양오염단속 (세차장 수질관리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차시설 관리부서인 구에서 일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사업법]</li> </ul>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1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학습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업무이지만 집행적 성격과 현장성이 강함</li> <li>•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업무체계 개선차원에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li> </ul>	여성정책과	가정복지과
15	경로당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당 지원 일원화</li> <li>• 집행업무로 구로 이관</li> </ul>	•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16	푸드트럭 설치장소 설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인 관점에서 푸드트럭 관련 업무 분장체계 마련</li> <li>• 타시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li> </ul>	정책기획과	경제교통과
17	축산물판매업 (정육점)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민원의 편의 제고 위해 구 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법]</li> </ul>	생명산업과	경제교통과
18	재난관리-재난 위험시설 조사, 지정, 정비, 철거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업무분장 필요</li> <li>•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 검토</li> <li>• 재난관리부서와 시설관리부서의 재난관리체계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li> <li>• 동법시행령</li> <li>•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li> </ul>	재난관리과	안전건설과
19	새주소 상세주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에서 실시하다가 업무 정착 후 구 이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명주소법]</li> <li>• 동법 시행령</li> <li>• 동법 시행규칙</li> </ul>	토지정보과	종합민원과
20	동물소음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음</li> <li>• 정확한 규제 규정도 없어 부서간 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관리법]</li> <li>• 뉴욕시 동물소음 규제 참조</li> </ul>	생명산업과 기후대기과	환경위생과

연 번	기능(업무)	가능 여부	특징	관련법	관련부서	
					시	구
21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구-동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체계 검토</li> </ul>		안전정책과	안전건설과
22	수산물 부패시 관리책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구분 명확화</li> <li>• 식품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짐</li> </ul>		생명산업과 위생정책과	환경위생과
23	노인의료복지 시설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화에 따른 관련 업무 급증</li> <li>• 집행적 현장적 성격</li> <li>• 구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장기요양보험법]</li> </ul>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24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수급자 보장결정(책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지원대상자 결정은 구에서 하고 있음</li> <li>•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검토</li> <li>• 맞춤형복지와 연계</li> </ul>		사회복지 관련 각 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5	장애인 자동차표시 부정사용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민원 폭주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 힘들</li> <li>• 집행적, 현장적 성격</li> <li>• 다만 장애인주차단속과 병행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애인주차단속을 경제교통과로 이관할 경우 효율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li> </ul>	장애인 복지과	가정복지과
26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 경우도 경찰과 협력 사무로 결정권한이 없음</li> <li>• 도로 폭에 따라 주관부처가 다름</li> <li>• 도로 폭에 상관없이 모두 구로 이관</li> <li>• 경찰과 협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li> <li>• 동법시행령</li> <li>• 동법시행규칙</li> </ul>	교통정책과	경제교통과

## □ 구에서 시로 이관이 필요한 사무(시는 사업소 포함)

〈표 6-11〉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관할 기능

연 번	기능(업무)	기능 여부	특징	관련법	관련부서	
					시	구
1	체납세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납세 분산 관리</li> <li>체납세징수단과 구분-체납대상별로 기준이 다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기본법]</li> </ul>	체납세 징수단	세무과 경제교통과 외 각 담당과
2	자활기금 상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기금 대출자와 상환관리자가 다름</li> <li>일원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li> </ul>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3	장애인 등록 및 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은 시장, 해제는 구청장</li> <li>명확한 위임 없이 구청장이 등록을 해제할 때 책임문제가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li> <li>동법 시행령</li> <li>동법 시행규칙</li> </ul>	장애인 복지과	가정복지과
4	보육지도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의 보육지도업무 과중</li> <li>집행적, 현장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별도의 지도팀 신설 시로 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보육법]</li> </ul>	아동보육과	가정복지과
5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폭에 따라 구와 시로 개설 및 유지관리 구분</li> <li>일원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법]</li> <li>동법 시행령</li> <li>동법 시행규칙</li> </ul>	사업소 신규	안전건설과
6	가로수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폭에 따른 관리주체 다름</li> <li>가로수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 검토</li> <li>공원관리와 연계하여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li> </ul>	공원녹지 사업소	안전건설과
7	공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의 크기에 따라 분산 관리됨</li> <li>일원화 필요</li> </ul>		공원녹지사 업소	안전건설과
8	노면청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청마다 노면청소 별도 실시</li> <li>규모의 경제</li> <li>시로 이관 후 민간위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 고양 등 타 시군 노면청소 민간위탁</li> </ul>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연 번	기능(업무)	가능 여부	특징	관련법	관련부서	
					시	구
9	생활불편 민원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책업무인데 위임없이 구청에서 이증으로 수행</li> <li>2가지 대안 존재: 시청에서 총괄 수행 vs. 구청으로 이관 명확한 위임규정 필요</li> </ul>		시민봉사과	종합민원과
10	공중화장실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됨</li> <li>화장실 문화팀에서 일괄관리-위탁(규모의 경제)</li> <li><b>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임</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li> <li>[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li> </ul>	환경위생과 푸른녹지 사업소	안전건설과
11	도로명주소 관련 명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판은 도로과, 건물번호판은 구에서 부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주소법]</li> </ul>	토지정보과	종합민원과

## □ 구청내 기능 조정

〈표 6-12〉 구청내 기능조정

연번	기능(업무)	가능여부	비고	관련법	관련부서
1	장애인주차 단속	○	• 주차단속 일원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복지과 → 경제교통과
2	청소년보호 지도단속	○	• 청소년 관련 업무가 늘어남	• [청소년보호법]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가정복지과 → 환경위생과 혹은 행정지원과
3	청소년 공부방	△	• 도비지원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은 동의 새마을 문고에 설치됨 •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시설관리가 중요한지에 따라 주무부서 결정		가정복지과 → 행정지원과 혹은 가정복지과
4	구청안전업무1 -민방위	○	• 민방위 업무 조정필요 • 안전건설과 이관	• [민방위 기본법] • [참고] 타 시(성남 등) 안전관련 부서에서 민방위팀 운영	종합민원과 → 안전건설과
5	구청안전업무 2 -민방위 통합방위회의	○	• 비상사태 시 구청장 회의로 구청장 지원이 주업무 인지 안전관련 사항이 주업무인지에 따라 업무분장	• [통합방위법] • 동법 시행령	종합민원과 vs. 행정지원과 vs. 안전건설과
6	사회복무요원 관리	○	• 월급, 교통비는 배속부처, 실비는 종합민원과에서 지급 • 일원화 필요	• [참고] 서울시 동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규칙	배속부처 → 종합민원과
7	정화조 관리	○	• 하수(환경)와 오수(위생) 관리 주체가 다름 • 시민편의 위해 일원화 필요 • 시본청은 일원화됨	• [하수도법] • 동법 시행령	환경위생과 → 안전건설과
8	선거업무	△	•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중복 수행 •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수행 -주민등록 열람권한 부여		종합민원과 → 행정지원과
9	전기팀 신설	○	• 가로등, 보안등, 수방시설 등 전기업무 일원화		안전건설과 전기팀 신설

□ 구와 동사무소 관계에서 업무에서 조정

〈표 6-13〉 구와 동사무소간 기능조정

연번	기능(업무)	가능 여부	비고	관련법	관련부서(구)
1	맞춤형 복지에 대응한 사회복지 현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 맞춤형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무한돌봄과 통합조사관리 등으로 이관</li> <li>• 이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시스템 개편</li> </ul>		사회복지과
2	외국인 체류지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입신고와 연계</li> <li>• [출입국관리법] 개정(2016.3.29.)으로 동에서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가능해짐</li> <li>•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체계에 대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법]</li> <li>• [참고] 서울시 송파구</li> </ul>	종합민원과
3	환경미화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에 배속되지만 동장의 관리권한이 없음</li> <li>• 동장이 환경미화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li> <li>• 근무평정, 복무관리 등은 동으로 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li> </ul>	환경위생과

□ 기타

〈표 6-14〉 기타 구업무 기능조정

연번	기능(업무)	가능 여부	비고	관련법	관련부서(구)
1	여성축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구청이 개별적으로 여성축구단 운영</li> <li>• 여성체육 진흥 활성화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구청이 아닌 체육회로 이관 여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체육진흥법]</li> </ul>	행정지원과

2. 기관별 기능 조정

□ 시청 기관별 업무 조정

조직	사무명	이관방향			
		시→구	시←구	비고	
기획 조정실	정책기획과	푸드트럭 설치장소 섭외	→		
	시민봉사과	생활불편민원처리	→	←	검토필요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필증교부	→		
일자리 정책국	기업지원과	직업소개소관리	→		
	생명산업과	축산물판매업 신고 수산물관리(수산물 부패에 대한 책임)	→	←	검토필요
복지 여성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수급자 보장결정		←	
		자활기금 상환		←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학습지 지원	→		
	노인복지과	노인의료복지시설관리	→		
		경로당 지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동차표시 부정사용 관리 장애인등록·해제	→	←	
보육아동과	보육지도점검		←	신규팀(시청)	
환경국	환경정책과	토양오염단속(세차장 수질관리)	→		
	기후대기과	동물소음 규제	→	←	검토필요
	자원순환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확인	→		
		기타 재활용 관련 업무	→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청소업체 선정 노면청소 공중화장실 관리 일원화		←	←
도시 정책실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		
		임대사업자등록	→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현지조사	→		
		조상당 찾기	→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새주소 상세주소	→		
안전 교통국	재난관리과	취약시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여름침수시 주택안전점검)	→		검토필요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밤샘주차단속	→		경찰과 협의필요

조직		사무명	이관방향		
			시→구	시←구	비고
기타	공원녹지 사업소	가로수관리 일원화		←	
		공원관리 일원화		←	
	체납세징수단	체납세	→	←	조정필요
	신규사업소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	

□ 구청 기관별 업무 조정

과	업무	이관방향		
		이관보냄	이관받음	비고
행정 지원과	민방위통합방위회의		←	
	선거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필증교부		←	
	여성축구단	→(기타)		
종합 민원과	민방위	→(구)		
	민방위통합방위회의	→(구)		
	사회복무요원관리 일원화(인건비지급관련)		←	민방위업무 이관에 따라 재검토
	선거	→(구)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동)		
	생활불편민원처리	→(시)	←	검토필요
	개발부담금 현지조사		←	
	조상땅 찾기		←	
	도로명 주소 명판관리	→(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	
새주소 상세주소		←		
세무과	체납세관리	→	←	검토필요
사회 복지과	자활기금 상환	→(시)		
	맞춤형복지	→(동)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수급자 보장결정		←	
가정 복지과	청소년 공부방	→(구)		
	청소년 보호 지도단속	→(구)		
	장애인등록·해제	→(구)		
	장애인주차단속	→(구)		
	장애인 자동차표시 부정사용관리		←	
	노인의료복지시설관리		←	
	경로당 지원		←	

과	업무	이관방향		
		이관보냄	이관받음	비고
	보육지도점검	➡(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학습지 지원		←	
경제 교통과	푸드트럭 설치장소 섭외		←	
	직업소개소 관리		←	
	축산물판매업 신고		←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	경찰과 협의
	밤샘주차단속		←	
	장애인주차단속		←	
환경 위생과	정화조 관리	➡(구)		
	환경미화원관리	➡(동)	←	조정필요
	노면청소	➡(시)		
	공중화장실 관리	➡(시)		
	수산물관리	➡(시)	←	검토필요
	토양오염단속(세차장 수질관리)		←	
	동물소음규제	➡(시)	←	검토필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확인		←	
	기타 재활용업무		←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	
	청소업체 선정		←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	
	임대사업자 등록		←	
안전 건설과	안전팀 신설		←	
	정화조 관리		←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시)		
	가로수관리	➡(시)		
	공원관리	➡(시)		
	민방위		←	

### 제3절 기능(사무)별 기능 조정-인터뷰 상세

#### 1. 구로 이관 필요한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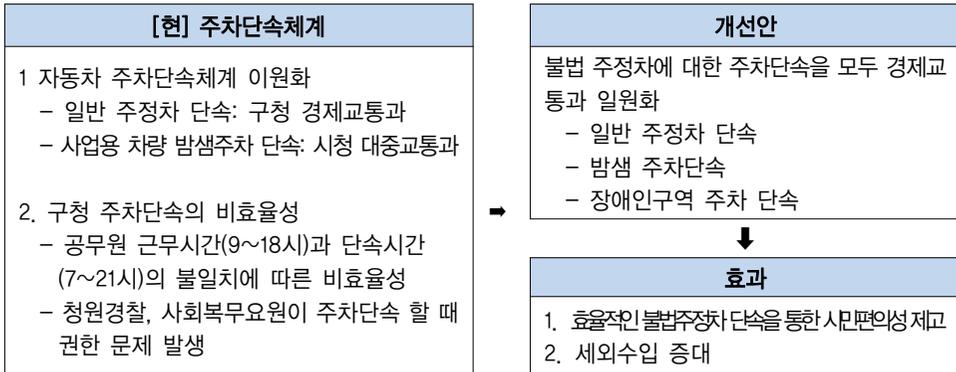
##### ○ 밤샘 주차단속

###### ■ 현황 및 문제점

- 주차단속 중복과 시의 밤샘주차 단속 인력 부족
  - 일반주정차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단속
  -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자는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단속: 시 대중교통과에서 2~3명이 시 전역 조사로 업무효율성 저하<sup>15)</sup>
- 밤샘 주차로 인한 시민불안 및 민원발생

###### ■ 방안: 구로 이관

-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대상에 상관없이) 일괄 단속
- 구로 이관할 경우 구청인력 보강 필요
- 주차단속 체계의 효율화 방안 구상



###### ■ 참고

- 관련법: [화물자동차 운수법]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밤샘 주차에 대한 위임 제한 규정 없어 위임 가능

15) 수원시 전역에 걸쳐 하루 저녁 8,000~20,000대의 밤샘주차차 차량이 존재하나 단속실적은 10~15대 정도로 매우 저조함

○ 직업소개소 관리(기업지원과 노사문화팀)

- 현황 및 문제점
  - 시 본청 기업지원과 분장사무임
  - 관리대상의 지속적 증가로 지도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방안: 구로 이관
  - 직업소개소 관리는 집행적 성격을 띠는 업무로 구 이관 필요

BRM4(중기능)	BRM5(소기능)	BRM6(단위과제)
직업소개사업 관리	직업소개소 인허가등록업무	직업소개소결격사항조회
		직업소개소관리대장관리
		직업소개소민원일반
		직업소개소변경등록
		직업소개소신규등록
		직업소개소실적보고
		직업소개소일반
		직업소개소종사자명부관리
		직업소개소타시군일반문서
		직업소개소폐지신고
	직업소개소현지출장확인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직업소개소지도단속계획
		직업소개소지도점검
		직업소개소행정처분

- 참고
  - 관련규정: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위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임가능

### ○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 ■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업무가 시청과 구청에 분리되어 있지만 명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도 업무에 대해 혼란스러워함
- BRM, 사무분장표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지도점검)은 시와 구 모두의 업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시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의 경우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큼

	업무분장표 기준(홈페이지)	BRM 기준	인터뷰 (토지정보과)
시청	- 부동산중개업 일반	< 부동산업 육성지원 > -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 개최 - 부동산중개업자 교육(대표자) <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 > - <b>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b>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현황보고 - 부동산중개업소등록 및 지도단속 보고	-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컨설팅 - <b>합동 지도점검</b> - 중개업자간 분쟁 조정
구청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 >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 부동산중개업소 사용인 고용 및 해고 - 부동산중개업소 이전 및 기재사항 변경 - <b>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b> - 부동산중개업소 폐업 및 휴업 - 부동산중개업 일반 / - 행정처분 < 토지관련소송 > - 부동산중개업 관련 소송	- 부동산중개업 등록 인허가

#### ■ 방안: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구로 이관

- 부동산개설, 부동산중개업소 폐업 및 휴업, 관련 행정처분 등 실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을 구에서 수행하고 있음
- 참고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 체계 정비
  - BRM 기준(5단계)으로 부동산 육성지원과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을 시청과 구청 업무로 이원화

BRM 기준 5단계(소기능)	BRM 기준 6단계(단위과제)	주관 기관
부동산업 육성지원 일반	모범 부동산중개업 대표자표창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추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배부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설문조사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 개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시청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	부동산명예지도 위원 위촉-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지도점검)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부동산중개업소 사용인 고용 및 해고 부동산중개업소 이전 및 기재사항 변경 부동산중개업소 폐업 및 휴업 부동산중개업 일반 행정처분	구청

■ 참고

- 관련법: 「공인중개사법」 4장 37조
  - 위임제한 규정이 없어 위임 가능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업무

■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관리를 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상가) 사업승인(용도변경) 및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등 관리는 구에서 실시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음

■ 방안: 구로 이관 관리 일원화

- 공동주택 관리를 일원화함.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제고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 업무는 현장성이 강하여 구청으로 일원화할 경우 민원 대응성 제고

〈표 6-15〉 공동주택관리 업무 중 구 이관가능한 업무

단위과제	구 이관	이관이유
공동주택 감리자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X	전문성이 강함→ 장기적으로 구 이관 검토
주택건설 공사감리 업무수행 실태 지도점검	X	전문성이 강함→ 장기적으로 구 이관 검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 배치 변경	X	전문성이 강함→ 장기적으로 구 이관 검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	X	보조금의 일괄 지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X	광역성 성격이 강함
공동주택 리모델링 인허가	X	전문성이 강함→ 장기적으로 구 이관 검토
공동주택 품질검수 관련업무	X	전문성이 강함→ 장기적으로 구 이관 검토
공동주택 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O	집행적 성격이 강함 건축신구 유사업무-일반건물 단속업무와 통일성 유지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	O	집행적 성격이 강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O	집행적 성격이 강함
관리규약 제정(변경) 신고	O	집행적 성격이 강함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와 연계됨
공동주택 관리방법결정(변경) 신고	O	집행적 성격이 강함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와 연계됨
주택관리업 등록 사항변경, 말소	O	집행적 성격이 강함
행위허가 행위신고	O	집행적 성격이 강함 건축신고와 유사업무임

#### ■ 방안

- 관련규정: [주택법] 42조 등에 따르면 위임제한 규정이 없음
- 타 시 비교: 용인시, 성남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음.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관리팀, 성남시 분당구 주택팀이 그 예임

## ○ 임대사업자 등록

### ■ 현황 및 문제점

- 임대사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청에서 업무처리 어려움
- 2016년 기준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건수를 보면 사업자 등록 수는 4,861명이고, 조건신고대상 수는 28,417세대로 향후 이를 시 본청에서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
-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는 집행성격이 강하고, 현장성이 강함
- BRM 기준상, 조직도표상 해당 업무는 시 본청업무로만 되어 있음

### ■ 방안: 구로 이관

-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구로 이관하고 시는 총괄만 하는 체계로 개편

### ■ 참고

- 관련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 6조, 동법 시행령 4조, 5조, 동법 시행규칙 2조~4조

##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필증 교부

### ■ 현황 및 문제점

- 건물의 규모에 따라 시와 구 업무 구분
  - 6층 이상 혹은 2000 $m^2$ 이상 건물의 신축, 증축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필증 교부는 시에서 그 이하는 구에서 실시함

### ■ 방안: 구로 이관

- 모든 건물의 신축, 증축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필증 교부
  - 단순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구로 이관 가능
- 다만 건물 신축, 증축 관련 허가 부처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필증 교부 부처가 달라짐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 문제 야기할 수 있음
  - 6층 이상 혹은 2000 $m^2$  건물 신축, 증축 허가는 시청에서 하는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필증 교부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참고

- 관련법: 「건축법」 82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17조 3항  
「정보통신공사업법」 36조, 동법 시행령 36조
- 법규정상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필증 교부에 대한 재위임 및 위임제한 관련 규정이 없어 위임 가능
- 타시 사례: 용인시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와 구 업무 배분함

**건축법 제82조**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7조**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삭제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읍장·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읍장·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 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 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조상땅 찾기

■ 현황 및 문제점

- 시민편의 위해 시와 구 모두 관련 민원 처리함
- 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업무 수행중임
  - 조직도표상 업무분장표와 BRM 기준 모두 조상땅 찾기로만 업무 규정 시와 구 업무로 되어 있으나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표에는 조상땅찾기는 시청의 업무로 되어 있음

구분	시(토지정보과)	구(종합민원과)
조직도표상 업무분장	조상땅찾기 민원처리	조상땅찾기
BRM 기준 단위과제	조상땅찾기 민원처리	조상땅찾기 운영 등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상 사무분장	조상땅찾기 운영 등	-

- 시에 가족관계서류 발급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구에서 팩스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더 소요됨

■ 방안: 구로 이관

- 가족관계서류 발급권한을 갖고 관련 서류에 접근이 용이한 구로 이관 하는 것이 시간절약 및 행정처리 절약 등의 효율성 담보 가능
- 다만 이 경우 명확한 위임규정 혹은 사무분장이 필요함

■ 참고

-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 성남, 고양, 용인 모두 시와 구 모두에서 조상 땅찾기 민원편의상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

○ 개발부담금 현지조사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 관련 모든 업무를 시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음
  -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제한된 인원을 갖고 현지조사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 방안: 개발부담금 업무 중 현지조사만 구청으로 이관
  -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중 일차적으로 현지조사만 구청으로 이관하여 세외수입 확보, BRM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 관련하여 단위과제로 현지조사가 없지만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실시 필요

	BRM 6(단위과제)	
	시	구
개발이익환수 (BRM 5)	개발부담금부과 대상통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 보고 개발부담금 예산 관련 개발부담금 일반 개발부담금 체납관련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행정심판 및 소송	개발부담금 현지조사

- 참고
  - 관련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28조
  - 관련법에 위임 제한규정이 없어 위임 가능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하는 데에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가의 산정

1의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 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2. 법 제14조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부과(이 영 제15조·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예정 통지, 고지 전 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물납의 인정 및 징수

5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

6. 법 제19조에 따른 납부 기일 전 징수 및 고지

7. 법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

8. 법 제21조에 따른 납부 독촉

9. 법 제22조에 따른 체납처분

10. 법 제23조에 따른 결손처분

11. 법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12. 법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및 접수

13.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4.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지 확인 및 통지

15.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16. 제12조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의 의뢰

17. 제26조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조치

18.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확인(지정폐기물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관련하여 시에서 신고수리하고 있으나 대상업체가 2,000여개로 시도에서 지도점검(처리계획 확인-현장업무)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업무들은 집행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에서 정책집행 및 민원업무에 집중하게 되고 정책적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움

■ 방안: 구로 이관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확인 관련 업무를 구로 이관하여 구 현장중심 처리 강화
- 구로 이관 가능한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음
  - 지정(의료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증명서 교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확인 이관가능업무
지정(의료포함)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증명서 교부
지정(의료포함)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리대상기기 신고증명서 교부
관리대상기기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 발급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필증 발급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필증 발급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단, 지정폐기물 관련 처리계획 확인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해당 폐기물 관련 전문가가 구에 배치될 필요가 있음

■ 참고

- 관련법: 「폐기물 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확인 업무처리지침」
- 관련법 점검결과 위임제한 규정이 없어 위임 가능

○ 기타 재활용 관련 업무(자원순환과)

- 현황 및 문제점
  - 재활용업무와 관련하여 집행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시에서 수행하고 있음
  - 해당사무

- 
- 2,000 $m^2$  미만 고물상 지도·점검
  - 빈병 보증금 위반자 과태료 처분 및 신고자 보상금 지급
  - 의류수거함 관리
- 

- 방안: 구로 이관
  - 위의 해당업무들은 단순집행업무로 구로 이관하는데 문제 없음

○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음식물폐기물)(자원순환과)

- 현황 및 문제점
  - 700개 정도 사업장을 시 본청에서 모두 지도점검하고 있음
  - 시 인력대비 사업장 수가 너무 많아 지도점검이 어려움
    - 권한위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

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2. <삭제 2015.11.13>
  3. 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4.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부적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표 6-16〉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무분장

	업무분장표 기준(홈페이지)	BRM 기준			관련 부서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시 청	음식물 다량배출사업 장 지도점검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관리	음식물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사업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관리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 고서 수리 음식물폐기물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관리 음식물폐기물 일반 음식물폐기물 통계관리	자원 순환 과
		생활폐기물 관련 관리일반	생활폐기물처 리 수수료 관리	음식물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과관리	
구 청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관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 도점검 음식물류 폐기물일반	환경 위생 과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권한위임 근거 있음

-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20조

- 방안: 시와 구의 규모에 따른 업무 배분
  - 시: 대형업소인 집단급식소, 호텔, 농수산물판매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
  - 구: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표 6-17〉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관련 새로운 업무분장안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유형	주관부처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시청 자원순환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청 자원순환과
관광숙박업(호텔)	시청 자원순환과
200m <sup>2</sup> 이상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소	구청 환경위생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구청 환경위생과

※ 해당 부서 요청사항에 근거하여 작성함

- 참고: 시와 구의 규모에 따른 업무 배분
  - 관련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1호, 16조의2 제4항, 「수산물 유통

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20조

- 관련규정 검토결과 위임가능하고 이미 조례상으로도 위임규정을 마련하여 실행만 하면 됨

**○ 청소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자원순환과)**

■ 현황 및 문제점

- 시에서 청소업체 선정하여 구로 배정
- 시에서 청소업체 선정, 재계약을 해서 구에 배정하는데 구에 관리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소업체와 문제 발생하기도 함

■ 방안: 청소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권한을 구로 이관

- 청소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권한을 구로 이관 시 청소업체와 구의 관계 개선에 기여
- 검토 및 고려사항: 구청별로 청소업체를 선정할 경우 비용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음. 이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 필요

**○ 토양오염단속(세차장 수질관리 업무)(환경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세차장 수질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주유소 세차시설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어 동일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와 구로 이분됨
- 관련 시와 구의 업무 분장

시청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li> <li>•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 추진</li> <li>•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및 사후관리(자동감시망 관리 등)</li> </ul>
구청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수리</li> <li>• 그 밖에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수리</li> <li>•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업소 지도단속 및 유해화학물질 과련 업무 사후관리</li> <li>• 그 밖에 수질 오염원 설치 시설 지도 감독</li> </ul>

- 방안: 구로 이관
  - 세차장을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볼 것이냐 수질오염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업무 이관 여부 결정
  - 세차장을 수질오염원으로 볼 경우 구 업무로 바로 이관 가능. 더불어 세차장 수질관리는 집행업무에 해당함
  - 세차시설 관리부서인 구에서 일괄 관리
- 참고
  - 관련규정: 「석유사업법」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학습지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시업무(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이지만 집행적 성격과 현장성이 강한 업무임
  - 수원시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 급증
- 방안: 구로 이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과 학습지 지원을 구에 위임함으로써 미래 행정 수요 증가에 대한 사전적 대처
  - 다만, 현재 구에 해당부서가 없음(사회복지 vs. 가정복지)
    - 대안 1) 가정복지과로 이관
    - 대안 2) 구에 다문화팀 신설: 구에 다문화팀을 신설할 경우 팀을 만들만큼의 업무량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이와 함께 다문화팀을 신설하면 외국인업무 총괄 관리(체류지변경, 거소신고, 외국인 대상 부동산 등기, 다문화가족지원,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등)
- 참고
  - 관련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6조,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경로당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경로당 지원업무의 이원화
  - 경로당 지원관리 일반을 구청업무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일부업무는 시청소관으로 함
- 방안: 구청으로 이관가능
  - 경로당 지원업무의 일원화
  - 경로당 설치, 개보수공사, 시설안전점검, 보조금지급, 집기보급 등의 구청업무로 시청 소관업무인 정부양곡지원 등의 지원업무는 구청으로 이관가능
    - 관련사무: 운영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정부양곡,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지원, 지원협의체 운영 등의 경로당 지원업무 구로 이관

	구분	시	구
현행	BRM	경로당운영 지원 및 관리 경로당 전담관리자 일반	경로당보조금지급 경로당일반 경로당개보수공사 경로당시설안전점검 경로당집기보급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 및 변경신고(경로당)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경로당 지원(운영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정부양곡,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지원, 지원협의체 운영 등)	경로당 지원관리
↓			
개선			경로당일반 경로당보조금지급 경로당개보수공사 경로당시설안전점검 경로당집기보급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 및 변경신고(경로당) <hr/> 경로당 지원(운영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정부양곡,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지원, 지원협의체 운영 등)

○ 푸드트럭 설치장소 섭외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팀에서 규제를 풀면서 청년의 푸드트럭 창업 권장
  -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에서 푸드트럭 설치장소를 섭외하고 있는데 보다 현장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방안: 기능배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장소를 지정하고 푸드트럭 관리를 위한 기능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	구(환경위생과)
푸드트럭 사업사 모집 및 선정	푸드트럭 설치 장소 섭외 푸드트럭 단속 등 행정처분

- 참고
  - 타 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  
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 지도단속

- 현황 및 문제점
  - 정육점(축산물판매업-식육) 신고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 전체 약 970여개로 업무 부담이 큼
- 방안: 구로 이관
  -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로 이관 필요 (특히, 축산물판매업 개설허가 및 신고와 지도단속 우선 이관)
  - 축산물판매업은 식육, 우유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현재 수가 많은 식육판매업(정육점) 업무부터 이관, 이후 나머지 2개 업무도 이관

생명 산업과	소기능(BRM5)	단위과제(BRM6)
	축산물판매업신고	축산물(식육)판매업 축산물(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 축산물 취급업소 관련 영업의 개설허가 및 신고 축산물 취급업소 및 관리인 위생교육 축산물 취급 관련 업소의 지도단속	

■ 참고

- 관련규정: 「축산법」에 위임제한 규정이 없음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여름침수시 주택안전점검)

■ 현황 및 문제

- 본청, 구청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사례마다 시장이 조정해 줌에 따라 담당자와 민원인이 혼란스러워 함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거의 모두 시청에서 실시하고 하고 있어 안전점검에 대한 재난관리과 업무가 과다함
  - 구청 인허가 대상(건축,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에서 실시함
- 또한 재난관리부서와 각 시설담당부서와 업무구분 모호성
- 안전점검 관련 업무문장(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업무	부서
취약시기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조사 및 점검	시청 재난관리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시청 재난관리과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점검	시청 재난관리과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 협의 및 안전점검 실시	시청 도시디자인과
요양시설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시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시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시청 장애인복지과
청소년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	시청 교육청소년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위무적 관리대상)	시청 주택과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점검 및 관리	시청 주택과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km 이상 건물 안전점검	시청 건축과
6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2000km 이하 건물 안전점검	구청 건축과

- 방안: 명확한 업무구분 필요
  - 구청 인허가 대상(건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구청에서 실시 (예, 여름침수 시 주택안전점검은 구로 이관 필요)
  - 명확한 업무구분으로 업무의 효율성, 예측가능성 도모
    - 중점관리시설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시설관리부서장 vs. 재난관리부서장
  - 재난관리부서와 시설관리부서간 협력 체계 마련 (예,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조사 업무 체계)

조 사 절 차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재난관리부서)	·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사범위,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시설관리부서)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일제조사실시 (시설관리부서)	·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선별 ·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및 안전점검 결과 입력·보고
↓	
후속조치 (시설관리부서)	·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관리부서에 통보)
후속조치 (재난관리부서)	· 관련부서에 지정사실 및 안전조치 통보
↓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관리대책 수립 (재난관리부서)	·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매년 3.1기준)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

■ 참고

-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 제27조, 동법 시행령 32조, 33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 명확한 업무구분으로 업무의 효율성, 예측가능성 도모

○ 새주소 상세주소

■ 현황 및 문제

- 원룸이나 다가구 동, 층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만약 건물주가 부도날 경우 주민등록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재산권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부여는 매우 중요함
- 본청과 구청모두에서 업무 수행, 특히 새주소 고지 업무는 구청 소관임

■ 방안

- 시에서 실시하다가 업무가 정착된 후 구 이관 검토
  - 데이터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음. 구는 시스템적으로 시의 건축물 대장을 끌어와서 구에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음

■ 참고

- 관련법: 「도로명주소법」 제8조 4, 동법 시행령 제11조의12, 동법 시행규칙
- 위임제한 규정 없음
- 다만, 행정자치부 지침 확인 필요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나 소유자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상세주소(동·층·호의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변경·폐지

3. 그 밖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문서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임차한 건물등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임차인을, 건물등의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를, 법 제2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신 신청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건물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말한다)]를 각각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축물대장의 등록 여부와 등록사항

3. 상세주소 적용범위 및 해당 출입구

4.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의 동의 여부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변경·폐지된 상세주소와 그 위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 ○ 동물소음 관련 업무

### ■ 현황 및 문제

- 동물소음과 관련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명확한 규제 규정이 없어 부서 간 혼란을 야기함
- 동물소음관련 민원이 많으나 명확한 주무부서가 없음
  - 환경부서(구, 시): 기계소음에 대한 규제는 있으나 동물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음
  - 생명산업과(시): 동물에 대한 일반 업무를 담당하긴 하지만 주로 권장업무이고 규제업무가 아님
- 관련규정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으나 해당 법에서의 소음은 ‘소음·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물소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방안: 담당부처 지정

- 담당부처를 지정함으로써 민원에 대응, 다만 관련규정이 정비되지 않는 한 관련 민원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 참고

- 타 시의 관련 행정처리 및 규정
  - 1st) 대구시 애완동물 소음 피해 행정지도(대구 두드리소-120달구 벌콜센터-자주하는 질문 at <http://dudeuriso.daegu.go.kr/>).

생활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 및 사업장의 작업음, 건설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강한 음</li> <li>• 규제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행정명령 후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을 하게 됨</li> </ul>
애완 동물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 및 진동 규제법’ 이 규정한 소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는 불가능하나,</li> <li>• 피해가 극심할 경우 구·군청의 환경부서에 피해사항을 전달하고 담당직원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완동물 주인이 지켜야할 기본예절을 안내하고 계도하는 행정지도 조치 가능</li> </ul> <p>* 주무처: 구·군 환경부서</p>

• 2nd) 뉴욕시 동물소음 규제

-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애완동물들이 타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주인들은 동물들이 짖거나 다른 소음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시 소음규정은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그 동물로 인한 소음책임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 o 오전 7시 이후 그리고 오후 10시 이전 계속적으로 10분 또는 그 이상 소음을 낼 때 또는
  - o 오후 10시 이후 그리고 오전 7시 이전 계속적으로 5분 또는 그 이상 소음을 낼 때
- 개 짖는 소리에 대한 소음규정은 유연하게 제정되었다. 단속은 항상 교육과 함께 시작되며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첫 번째 불평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통고를 받게 된다. 오직 계속되는 불평 민원이 제기 될 경우 재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출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뉴욕시의 소음관리)

○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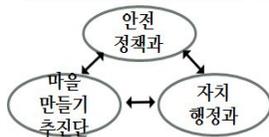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
  - 현지실사는 구청, 평가 및 지정은 시청으로 이원화됨
- 방안: 일원화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사 및 평가 일원화
  - 구청으로 이관

○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형 안전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중임
    - 송죽동(2013-행자부), 매교동(2015년-법무부)에 이어 2016년(국민

- 안전처) 매탄3동, 세류3동, 매산동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
- 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동네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도시정비사업과 유사함. 따라서 여러 부서가 연관됨(7개 부서 11개 사업팀장)
  - 실제 안전마을만들기는 시설관련 업무로 구청 안전건설과 업무가 대부분이나 명확한 사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 방안: 안전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수립 및 개선
- 안전마을만들기는 여러 부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등 주관부처가 모두 다르고, 또한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한 실무작업을 위한 부서가 다름
  - 따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수립 필요(시청-구청-동)

시본청	구	동,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총괄</li> <li>•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li> <li>• 사업비 지원</li> <li>•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li> <li>• 운영위원회 운영</li> <li>• 사업모니터링,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련 환경개선사업 추진</li> <li>• 지역자원 활용</li> <li>• 사업종류 후 시설물 사후 유지관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협의체 구성-주민 자치회 연계</li> <li>• 주민활동사업 발굴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안전네트워크, 순찰대 등</li> </ul> </li> <li>• 현장조사</li> <li>• 마을회의 운영</li> </ul>



○ 수산물 관리(수산물 부패시 관리책임)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수산물 부패 시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짐

- 예를 들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조개를 팔 때 식품으로 볼 것이냐 농수산물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주관부처가 다름
  - 식품-위생정책과(시), 환경위생과(구)
  - 농수산물-생명산업과(시)
  - 농수산물도매시장-생명산업과(시)

< BRM 기준 농수산물 관련 기능배분 >

시청		소기능(5단계)	단위사업(단계)
환경부 위생정책과	식품영업에 대한 지도단속	기타 식품판매업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관리	
일자리경제국 생명산업과	수산물유통관련업지도단속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	수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 농수산물원산지표시	

구청 환경위생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식품 의약 안전	식품 안전	식품안전검사 및 교육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검사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b>식품 및 식품관련 물품 검사</b>	<b>식품안전검사</b>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 사업	식품접객업소 위생 교육
		식품위생정책 및 운영	식품업 허가 및 신고처리	식품접객업 인허가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식품위생 일반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식품진흥기금운용
		식품위생 지도감독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지도감독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
			식품영업에 대한 지도단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사후관리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위생행정 일반
		음식문화개선 및 개발 육성	모범음식점지정관리	모범음식점지정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 방안: 업무구분의 명확화
  - 유사한 사례들을 모아서 기준을 설정하여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현재 시설물을 관리하는 생명산업과에서 그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중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해서만 지도단속을 하고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개류 등이 환경부 위생정책과 관리 대상인 식품판매업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기준으로는 식품판매업에서 식품은 일정 조리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조개가 아직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식품이 아닌 농수산물에 해당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관리 주체는 시 업무임. 구에는 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고령화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음
- 시의 1~2인의 인력이 수원시 전역의 기관을 관리하기 힘들. 1~2인이 248개소 관리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종사자인력신고, 의료수급자입소, 이용신청처리
  -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
  - 생계급여 지급 및 지도감독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 재가장기요양시설 관리 업무는 신고, 변경업무로 현장 확인이 필요함

< BRM 기준 장기요양기관 관련 업무내용 >

소기능(BRM5)	단위과제(BRM6)
장기요양보험제도운영	노인장기요양 급여예약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 방안: 구로 이관
  - 시설 소재지 구로 이관하여 정기적 지도점검 및 관리절실
  - 다만, 구별 시설설치 수를 파악하여 적절한 인력배정 필요
- 참고
  - 관련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
  - 관련규정 검토결과 재위임 제한 규정 없어 구로 위임 가능
  - 다만 구에서 이전에 수행해본 적 없는 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관

### ○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수급자 보장결정(책정)

- 현황 및 문제점
  - 현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는 신청(동)-조사(구)-책정(시)의 체계로 이루어짐
  - 그러나 보육료지원대상자 결정은 신청(동)-조사 및 책정(구) 체계로 이루어짐
  -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 업무의 신속성 등 효율화, 주민편의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방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을 고려해서 재검토 필요
  - 현 체계는 책정은 시본청-조사는 구청-접수는 동이라는 3체계로 구성되었지만 맞춤형복지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시본청-동 2원체제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조사와 접수는 동으로 이관되고, 책정 및 결정업무는 시본청 업무로 남게 됨

### ○ 장애인 자동차표시 부정사용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모바일 신고 민원 폭주
  - 구의 장애인주차 위반 단속과 병행처리 할 수 있음
- 검토사항
  - 구의 장애인주차 위반 단속업무를 경제교통과로 이관할 경우 병행처리 불가

- 구의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구 이관 결정 필요

■ 검토사항

-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90조에 따르면 위임제한 규정 없음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주차선도색, 도로표지판설치, 신호기)업무는 결정 권한이 없고 예산편성 집행권만 있음
- 관련 업무는 모두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함
- 또한 광고, 호매실 사업지구 구역확대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구역역시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도로 폭에 따라 주관부처가 다름: 15m 기준으로 시청과 구청 주관부처가 다름

주관부처	업무내용
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신호기 제외),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협의(신호기 제외)
구청 안전건설과	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15m 미만도로 교통안전 표지, 단 신호기 제외)

■ 방안: 도로 폭과 상관없이 모두 구로 이관

- 해당 업무는 집행업무로 도로 폭과 상관없이 구로 이관함으로써 효율성 확보. 대상만 다르지 행정행위는 동일함
- 다만 경찰과 협의 필요

■ 참고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 현재 구는 4개이고 경찰서는 3개로 이에 대한 협력 필요(경찰에도 교통시설 전문 업무 담당자가 있음)

## 2. 시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시와 구의 업무조정 필요)

### ○ 체납세 관련(체납처분)

#### ■ 현황 및 문제점

- 체납세는 지방세 체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세로 여러 개가 있는데 체납세 징수기관인 체납세징수단과 별도로 구청별 업무부서 별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음. 체납세 종류별로 징수기관 구분 기준이 다름에 따라 혼란 야기
- 업무중복에 따른 혼란과 실적평가에 따른 소액체납분 누락 등의 문제 발생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현년도 기준인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연도 기준에 금액기준이 추가됨

체납세 유형	체납세 징수단	구청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업무	과년도 지방세 체납처분	현년도 지방세 체납처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도시교통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30만원 이상 체납처분 (결손제외)	도시교통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30만원 미만 체납처분

#### ■ 방안: 인터뷰 결과 각 기관별로 의견이 다름

구분	내용		제안기관
방안1	연도체계로 정리	세외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3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일괄 체납세징수단에서 징수	세정과(본청)
방안2	금액기준으로	이전 금액기준으로 징수(700만원 기준)	영통구 세무과
방안3	금액, 연도에 상관없이 체납처분별로	민원접점이 많은 것은 구청, 그 외는 체납세징수단 예)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자동차영치는 구청 신상정보공개는 징수단으로	팔달구 세무과
방안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 일괄 체납세징수단으로	구청 경제교통과는 단속과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후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리는 체납세징수단으로 이관	권선구, 영통구 경제교통과

#### ■ 참고

- 관련법: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65조

## ○ 자활지원금(자활기금) 상환

### ■ 현황 및 문제점

- 자활지원금 대출 지급 업무와 상환 업무 이원화
  - 지급은 시 vs. 상환은 구
  - 기금 대출 기관과 상환 기관이 다르다 보니 대출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자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제대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행정감사 대상이 됨

### ■ 방안: 자활지원금 대출 및 상환 업무 일원화-시로 이관

- 자활지원금 업무(기금부여, 관리, 상환, 상환관리) 일원화: 기금관리 권한을 시가 갖고 있음
- 자활지원금 내역: 전세자금, 창업자금, 생활자금
  - \* 자활지원금 지급 및 상환은 집행업무로 구로 이관가능 하지만 기금 관리는 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관리부처가 일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

### ■ 참고

-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5

## ○ 장애인 등록 및 해제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등록과 해제는 이원화: 등록은 시장, 해제는 구청장 명의로 함
- 등록과 해제의 주체가 다름에 따라 해제를 하는 데에 책임문제 발생

### ■ 방안 1) 시로 이관

- 등록과 해제를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권한과 책임의 통일
- 정상 등록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등록과 해제를 일괄적으로 시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안 2) 현행체제 유지
  - 장애인 등록 해제 및 상실에 대한 민원인의 문제제기에 따른 책임과 권한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 있어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함
- 참고
  -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3항 , 8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8조

○ 보육지도점검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지도업무가 과다하여 어린이집 사고 등의 사전예방, 불법, 탈법 예방을 위한 보육지도 점검 사항 늘어남
  - 그러나 현 구청 가정복지과는 보육지도와 보육점검을 1~2인에 동시에 하고 있는 업무 가중의 문제 발생
  - 최근 신도시건설 등으로 보육지도점검 업무 급격히 증가.  
예) 광고, 호매실 지구 등
- 방안: 보육지도업무를 시청으로 이관
  - 보육지도 업무를 분리하여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보육지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시와 구 어린이집 지원과 지도는 대상에 따라 다른데, 지도는 일괄 본청에서 담당

대상	사무내용	현재제	개선체제
시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지원	시	시
	지도	시	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원	구	구
	지도	구	시

- 가칭: 보육지도팀 혹은 보육조사팀
- 참고
  - 관련규정: 「영유아보육법」 제 41조, 제42조

## ○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폭에 따라 구와 시로 개설 및 유지관리가 구분됨
- 15m 미만의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는 구에서 그 이상은 시에서 개설 및 유지관리함
- 시민의 입장에서 규모에 따른 업무 구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종종 도로관련 업무는 구청 담당임에도 시청 도로과로 민원제기하기도 하고, 시청 담당임에도 구로 민원제기
- 도로복구 및 유지관리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시의 업무인데 구로 민원제기 시 시로 이첩 후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처리기간이 소요됨

### ■ 방안: 일원화

- 차량등록사업소와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를 포괄하는 사업소 신설
- 모든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화 도모

### ■ 참고

- 관련규정: 「도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검토결과 도로관리는 해당 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으로 수원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수원시의 자율사항임

## ○ 공원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공원관리는 공원의 크기에 따라 분산 관리됨
  - 쌈지공원, 학교 숲은 구청에서, 규모가 더 큰 공원은 공원녹지사 업무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체계가 이원화됨
  - 공원의 조경수 등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 ■ 방안: 공원녹지사업무소로 이관

- 공원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원녹지사업무소에서 수원시의 모든 공원 관리

## ○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가로수 응급복구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의 규모에 따라 가로수 관리 주체가 달라짐
    - 왕복 4차선 미만 도로 가로수는 구청에서 관리, 그 이상 도로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
  - 가로수 관리에 대한 의견이 기관별로 다름
    - A부처: 구·동별로 가로수가 모두 다름, 종합적인 관리 필요
    - B부처: 가로수 관리는 도로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구청에서 관리
    - C부처: 가로수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필요
- 방안: 시(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괄 관리
  - 가로수의 통일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공원녹지사업소)에서 종합관리
  - 조성 및 관리 민간 위탁 고려
- 참고
  - 타시 비교: 용인시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위탁함(「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

## ○ 노면청소

- 현황 및 문제점
  - 구청마다 노면청소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음
  - 이어진 도로에서 자기 관할구역만 하고 돌아가고, 구역이 겹치는 경우 서로 미뤄 청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음
  - 차량정비 등 전문직이 필요하고, 인력부족에 따른 운영어려움
- 방안: 시로 이관하여 아웃소싱함
  - 시로 이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순실행업무이며,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문청소업체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 시에서 모든 도로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경비면에서 효율적이고, 청소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참고

-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시장의 자율적인 업무배분 가능
- 고양시 등 타 시군 노면청소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

○ 생활불편 민원처리

■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조직개편으로 구청의 생활불편제로팀 폐지됨
- 본청의 세부 분장사무(조직도표상)에 생활불편민원처리가 있음
  - 시민봉사과 휴먼콜센터팀-생활불편민원, 시민소통기획관-시민불편 사항상담
- 구, 동에 대한 휴먼콜센터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관련 업무량 증가
- 구청 세부분장에도 없고 위임규정에도 없는 생활불편민원업무를 계속 존속시키는데 문제가 있음
  - 공원 내 화장실 관리 민원 발생 시 휴먼콜센터 담당은 구로 내려 주고, 구에서 과로 담당을 지정하면 본청 업무로 다시 이관하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 비효율성 큼

■ 방안

- 1st: 생활불편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에서 총괄하여 수행
- 2nd: 집행적, 현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리하되 명확한 위임규정 필요

○ 공중화장실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화장실 관리가 재산부서별로 분산됨: 수원시 전역에 약 139개 공중 화장실 존재
  - 푸른녹지사업소,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로 분리됨
- 관리가 안되는 화장실이 발생하거나 각 부서별로 화장실 유지관리 업체에 각각 위탁하다 보니 비용 등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함

- 예) A구청 환경위생과-공중화장실을 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방안: 화장실문화팀에서 일괄관리-위탁관리(전문업체)
  -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본청 화장실문화팀에서 일괄 관리하고 위탁업체를 하나로 통일
  - 현재 화장실문화팀은 화장실관리계획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음
  - 고려사항: 화장실 관리는 정책집행 업무로 세부 실행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통일성,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참고
  - 관련규정: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화장실문화팀으로 화장실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필요
    - 동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라고 규정함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7.12.27)

○ 도로명주소 관련 명판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명주소 관련 명판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음
  - 도로명판 부착은 시에서 용역을 주어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번호판 부착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음

- 방안: 일원화 ▶ 시로 이관하여 위탁
  - 도로명 주소와 관련하여 명판부착 업무 일원화
  -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명판을 부착하는 것은 단순업무로 위탁이 가능함. 현재 도로명판을 관리하는 시에서 위탁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음
- 참고
  - 관련규정인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위임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관리 가능

### 3. 구청내 기능조정

#### ○ 장애인주차단속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주차단속을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와 같이 수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 가중
  - 업무 폭주로 실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불법주정차 단속의 이원화: 일반 주정차단속은 경제교통과, 장애인주정차 단속은 가정복지과에 이루어짐
- 방안 : 장애인 주차단속을 경제교통과 이관
  - 일반 불법 주정차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교통과로 이관하여 효율성 도모
  - 다만,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인 주차단속은 도로가 건물 내부 혹은 외부 주차장 등을 모두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단속 시간 등이 소요됨에 따른 인력 필요
- 참고
  - 관련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6항
  - 관련규정을 보면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 이 단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제교통과에서 단속업무를 하더라도 규정 위반은 아님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6항

---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 ○ 청소년 보호 지도단속(청소년 유해업소 주류판매 금지 업무 등)

###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유해업소(PC방, 게임장, 노래방), 주류판매금지(유흥업소, 음식점) 등에 대한 캠페인, 지도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필증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로 발생함
- 해당업무를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실행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 발생
  - 가정복지과의 업무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복지대상자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업무로 해당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업무는 복지업무와는 무관함
  - 가정복지과에는 단속권한이 없는데 실적을 내야 하는 문제 발생

### ■ 방안1: 환경위생과로 이관

- 환경위생과는 위생업소(유흥업소, 음식점 주류판매)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음

### ■ 방안2: 행정지원과로 이관

- 청소년유해업소 PC방, 게임장, 노래방 등의 인허가 및 단속은 행정지원과 업무임

### ■ 참고

- 관련규정: 「청소년보호법」, 동법 시행령 5조, 동법 시행규칙

## ○ 청소년 공부방 운영

###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본청 교육청소년과 업무이나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 및 정산함
- 청소년공부방의 대다수는 동의 새마을문고에 설치되어 있으며, 새마을문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지도·관리는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임

### ■ 방안: 현행처럼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하는 것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함

- 1st) 현 가정복지과에서 업무수행

-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련업무로 가정복지과에서 수행
- 2nd) 행정지원과로 이관
  -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도모
-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시설이 중요하면 행정지원과로 프로그램이 중요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 구청 안전업무에 대한 재조정 - 1) 민방위

- 현황 및 문제점
  - 민방위는 조직개편(기구조정)때마다 상위부서가 달라짐
  - 현재 종합민원과 소속이나 종합민원과 소속 다른 팀과 기능이 부합되지 않음
  - 민방위 업무의 조정 필요
- 대안: 안전담당부서인 안전건설과로 이관
  - 다만, 민방위 상세 업무를 보면 교육은 안전건설과로 자원관리(사회복무요원관리)는 행정지원과와 연계됨
- 참고
  - 관련규정: 「민방위기본법」 제13조, 제14조,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타시 비교: 민방위팀이 안전관련 과 소속으로 되어 있음  
예) 고양시 일산서구,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모두 안전건설과, 건설과, 건설도로과 내에 (재난)민방위팀을 둠

### ○ 구청 안전업무에 대한 재조정 - 2) 민방위 통합방위회의

- 현황 및 문제점
  - 비상사태 시 구청장 회의를 현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에서 지원
  - 해당 업무는 구청장 지원업무임

- 방안: 행정지원과로 이관
  - 구청장 지원기구인 행정지원과로 이관. 다만, 내용이 재난 등 비상사태, 안전에 대한 것으로 민방위팀과 완전히 별개의 업무는 아님
- 참고: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법시행령

## ○ 사회복지요원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월급, 교통비는 배속 부처에서 지급하고, 실비는 종합민원과에서 지급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업무효율성이 떨어짐
- 방안: 사회복지요원 총괄부처인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에서 총괄관리
  - 사회복지요원 관리 일원화 필요
  - 복무관리를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지도통제부서, 운영관리부서
- 참고
  - 타시 비교: 서울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요원 복무 관리규칙
    - 지도통제부서, 운영관리부서 구분: 지도통제부서는 안전담당관, 운영관리부서는 복무부서

## ○ 정화조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는 안전건설과에서, 오수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
  - 분류기식, 합류식에 따라 담당부처가 달라 민원인이 혼란스러워함. 원인자부담금 여하에 따라 합류식이면 안전건설과, 분류기식이면 환경위생과를 방문해야해 혼란스러워함
  - 과거 청소위생팀의 정화조 업무 비중이 컸지만, 환경사업소가 있어서 정화조 업무 필요 없어짐
  - 「하수도법」 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오분법)로 이원화되어 있던 관리체계가 2006년 9월 27일 「오분법」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하수와 오수의 관리체계가 단순화됨

- 시는 한 팀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구는 분리되어 운영됨
  - 시청의 경우 건축인허가시(2,000㎡)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협의를 자원순환과와 하수관리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업무를 2010년 12월 하수관리과 하수정비팀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구청의 경우 환경위생과와 안전건설과로 하수와 오수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건축 등 각종인허가시 민원인의 불편 초래
- 방안: 안전건설과에서 통합 관리
  -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안전건설과에서 통합 관리
- 참고
  - 관련규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 ○ 선거업무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처인데 종합민원과가 주민등록자료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선거업무를 같이 수행함
- 방안: 행정지원과에서 일원화
  - 선거업무 주무부처인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전담
  - 다만, 행정지원과에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추가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참고
  - 위임사무이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담당하는 것이 가능

## ○ 구청 안전건설과에 전기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가로등, 보안등, 수방시설의 전기시설 관리를 안전건설과 내에 개별 팀에서 관리하여 업무효율성 떨어짐
- 방안: 안전건설과에 전기팀 신설
  - 안전건설과에 전기팀을 신설하여 가로등, 보안등, 수방시설의 전기시설 관리를 일원화, 체계적으로 수행

#### 4. 구와 동의 기능조정

##### ○ 맞춤형 복지에 대응한 사회복지 현장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 동의 사회복지 기능 강화 정책(맞춤형 복지허브)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의 무한돌봄과 통합조사관리의 동 이관예정
- 기존의 사회복지전달 체계 변화  
기존: 신청(동)-조사(구)-책정(시)-서비스 제공(구, 시, 동)  
변경: 신청(동)-조사(동)-서비스(동, 무한돌봄 사례관리)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구의 사회복지 기능)의 변화에 따른 구의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개편 검토

###### ■ 방안

- 구청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팀, 통합조사관리팀, 무한돌봄 사례관리팀으로 구분됨. 통합조사관리팀과 무한돌봄 사례관리팀 업무를 동으로 이관함에 따라 사회복지팀만 남음
- 검토사항: 사회복지과의 유지, 가정복지과와 통합 등 사회복지과의 조직개편 검토
- 다만, 구에 동의 통합조사관리와 무한돌봄사례관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 외국인 체류지변경 업무

######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관련 업무 폭증. 외국인체류지변경의 경우 종합민원과 민원팀의 주업무가 되고 있음
- 현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업무와 함께 동에서 외국인 주소 관리 및 거소관리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 방안: 외국인 체류지변경 업무 동으로 이관

- 현장성이 매우 강한 업무로 동으로 이관 필요
- 다문화가족의 민원 편의 도모할 수 있음: 다문화 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변경을 신고함으로써 불편, 전입신고와 체류지변경 신고기관을 통일함으로써 편의 도모

■ 참고

- 관련규정: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개정(2016.3.29.개정)에 따라 읍·면·동에 체류지변경신고 가능해짐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 

-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체류지변경신고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하였음
- 장기적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업무에 대한 체계 구축 관점에서 검토 필요
  - 다문화가족 학습지, 방문교육을 구 이관 등과 연계

○ 환경미화원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환경미화원은 구청에서 고용하여 동에 배치하고 있는데, 동장에게 명확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서 동 배치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움

■ 방안: 동장에게 관리감독 권한 부여

- 동장에게 관리감독 권한 부여함으로써 청소행정 효율화 및 현장성 강화-인사권과 관리권의 분리
  - 구청장: 정원, 인사배치, 급여관리
  - 동장: 근무평정, 복무관리

■ 참고

- 타시 비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서 동장의 환경미화원 복무 지휘감독 명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

제9조의2(관리·감독) ①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다만 타부서 및 동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환경미화원은 복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 5. 기타

### ○ 여성축구단

■ 현황 및 문제점

- 4개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여성축구단 운영
- 2002년 월드컵 때 만들어진 것으로 구에서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제기

■ 방안: 체육회로 이관

- 여성체육을 활성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격상 구청이 아닌 체육회로 이관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관련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 체육회와의 업무 이관에 대한 논의 필요

## 제4절 기능배분 외 행정구 기능강화 방안

### 1. 대도시 행정구의 역량강화 방안

- 구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구성과 인력의 탄력적 배치
  - 수원시 행정구들은 거의 동일한 조직체계를 갖춘
  - 구마다 갖고 있는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조직 및 인력구성에서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한 기피구청 및 기피부서가 발생함

구	특성
장안구	- 권선구와 함께 가장 오래된 구임
권선구	- 수원시에서 가장 규모가 큼 - 계속 개발 증으로 건설과 건축관련 업무 증가 - 보육업무 증가: 호매실 권선 아파트 증가(현재 320개소인데 2017년 70개소가 더 늘어날 전망)
팔달구	- 원도심으로 노령인구가 많아 수원시 전체 대비 수급자 비율 높음 - 관광특구이면서 시의 주요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청소업무, 음식점 관련 위생업무, 교통행정 업무가 많음 • 화성주변 관광특구, 수원역주변 유동인구, 전통시장이 팔달구에 몰려 있음 - 팔달구 인구가 가장 적지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음 - 팔달구의 외국인 중 상당수는 조선족, 중국인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등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건수(750건) 늘어나고 있음
영통구	- 신도시개발(광교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관련 민원이 많음-광고의 경우 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아 기대수준도 높음 - 또한 신도시개발에 따른 업무량 증가(원래 7만 계획이던 것이 10만으로 증가함으로써 이의 반영) • 보육, 건설, 건축, 음식점 관련 업무량 폭발적 증가

- 세계화시대 다문화에 대한 대응
  -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모두 외국인 관련 업무와 민원이 대폭 증가함
    -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거소변경 신고, 외국인 관련 부동산 등기신고 등

- 가족관계등록의 전문인력 필요
  - 팔달구와 권선구에 있지만 다른 구에는 없음
    - 전문인력이란 해당 분야 10년 이상 된 무기계약직을 의미함
    - 가족관계등록은 국가위임사무로 적용 법, 예외규정, 판례가 많아 노하우,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 및 업무전문성이 요구됨
      - 민법뿐만 아니라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국적법도 알아야 함
      - 가족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업무가 점점 복잡해짐
    - 가족관계등록은 신고제도로 정정할 경우 법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상담업무도 같이 수행
    - 정규직원이 순환근무 할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파악이 안됨으로써 문제 야기하는데 가족관계등록에 오류가 많이 발생
      - 오류는 정정 가능하지만 기록에 남게 됨으로써 민원인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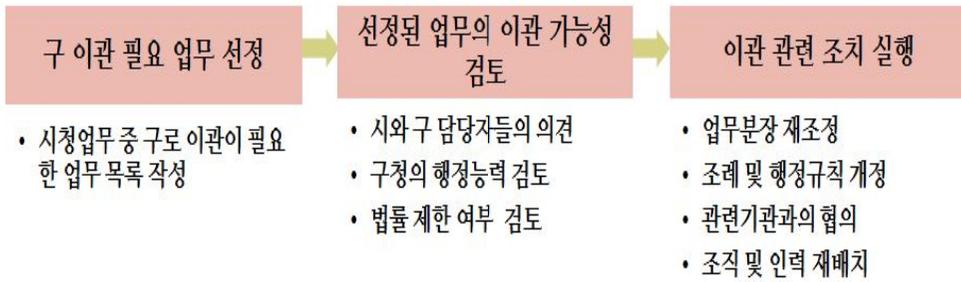
## 2. 대도시 행정구의 역량강화 시 고려사항

- 인력배치 및 인력운영방안 재검토
  - 전문부서에 전문인력 배치 필요
    - 안전건설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등 전문인력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인력 배치 필요(인터뷰 결과 A구청의 경우 건축업무에 지적팀장이 건축팀장이 배치됨)
  - 인력운영 방안
    - 구청에는 7급직원이 없음. 구청은 신규직원이 와서 일 배우고 이동하는 곳으로 인식됨
    - 구청에서 승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현재는 구청에서 근무한 후 시청으로 인사이동 된 후 승진하는 사례가 많음
      - 구청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구청에서 근무하고 시로 이동하지 않고 구에서 승진할 수 있는 인력운용체계 개편

- 구청의 정책결정 담당 부서의 폐지 및 명칭 변경
  - 시청과 구청의 업무배분 기준을 시청-정책결정, 구청-정책집행으로 체계화한다고 했을 때 정책부서가 구청에는 필요하지 않음
    - 구청의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 명칭변경-실제 안전건설과의 제1팀이지만 서무 업무 외 정책기능 없음

## 제5절 수원형 모형의 추진로드맵

- 구로 이관 가능한 업무 선정
  - 시청업무 중 구로 이관이 필요한 업무목록 작성
    - 중복업무해소, 시청 및 구청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목록 작성
  
- 선정된 업무들이 실제 이관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
  - 시와 구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 구의 행정능력 검토
    - 구로 이관이 필요한 업무라 하더라도 구의 행정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효율성 초래
  - 법률 등에 제한 여부 검토
    - 법률에서 위임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 이관 불가하기 때문에 검토 필요
  
- 최종적으로 업무이관에 필요한 조치 실행
  - 업무분장 재조정
  - 조례 및 행정규칙 개정 필요여부 검토하여 조례 및 행정규칙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함
  - 조직 개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
  
-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구의 기능 및 행정능력 강화를 통한 수원시 행정의 효율성 강화, 주민편의 도모를 목표로 구로 이관 가능한 업무 발굴 및 추진
  - 서비스전달체계 재검토(사회복지서비스)
  - 각 업무간 연관성 검토
  -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규모에 따른 시청과 구청 업무배분에 대한 정리
    - 모두 집행업무로 장기적으로 구청으로 이관 필요
    - 다만, 전문성,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이관여부 결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 이관 가능(필요) 업무 선정 및 추진

-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회복지서비스분야)
- 각 업무간 연계성 고려

- 기준 : 집행, 현장성(규모의 경제 고려)
- 방향 : 행정구의 기능 및 행정능력 강화 → 효율성 강화, 주민편의 도모

<그림 6-1> 구청 이관 업무 추진로드맵

- 이양확정된 대도시 사무특례 중 구로 이관 가능한 사무 검토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50만, 100만 대도시 사무특례 발굴 이양확정(50만 93개, 100만 29개, 전체 122개 사무)
  - 계획관련 업무로 구로 이관불가능
  - 다만 사회복지업무 일부 이관 가능
    - 급여처분 등 이의신청 접수, 이의 신청 각하 등 처분, 통지, 이의신청 각하 등 처분 이의처분 접수



## | 참고문헌 |

- 강영훈(2004),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적정성: 제주도 행정계층 및 구역개편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0권 2호, pp. 185-212.
- 강용기(2011),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2010.10)을 통해 본 지방자치체제 개편 정책의 평가와 대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1호, pp. 59-71.
- 강용기(2014),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경기연구원(2015), 대도시 행·재정특례의 평가와 대안, 연구보고서.
- 고경훈(2012),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판별기준, 지방행정, 61권(통권 705호), pp. 22-25.
- 고경훈(2014), 대도시 사무특례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7권 4호, pp. 75-100.
- 고문현(2010), 지방분권에 관한 비교헌법적 분석, 토지공법연구, 제51집, pp. 419-446.
- 금창호·권오철(2008), 일반구-대동제 비교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과제 보고서.
- 금창호·박기관(2012),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연구, 12권 2호, pp. 61-77.
- 磯部力(2000), 지방분권의 내용과 자치역량, 자치연구, 10권 1호, pp. 108-121.
- 김대욱(2013), 지방행정구역 규모와 지방 민주주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7권 3호, pp. 261-284.
- 김동훈(2001) 대도시 특례제도-일본의 도시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월간 자치발전, 5월 호, pp. 48-58.
- 김병국(2012) 대도시 사무특례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방행정, 61권(통권 705호), pp. 16-21.
- 김병국·권오철(2005),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방안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행재정특례부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권 1호, pp. 27-47.
- 김병국·하현상(2012), 대도시 일반구 제도 개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김상태(2013)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법학연구, 49호, pp. 277-296.
- 김석태(2012), 광역시-자치구 체제의 개편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가정책연구, 26권 3호, pp. 131-154.

- 김석태(2015), 지방자치의 이념형 모색: Rousseau와 Tiebout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015년 학술발표논문집, 4호 pp. 26-44.
- 김석태(2016),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행정연구, 19권 4호 pp. 1-24.
- 김성호(2015),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과 과제, 2015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671-698.
- 김순은(2012),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논의와 방향: 자치구의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 1-22.
- 김순은(2013), 대도시정부의 행정구역과 민주성 및 효율성, 지방정부연구, 17권 1호, pp. 137-158.
- 김영일(2002), 알투스우스(Johannes Althusius)의 연방주의 연구-지방자치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연방적 사회구성-, 지방정부연구, 6권 4호, pp. 275-296.
- 김영철(198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교육행정학회보, 3권 1호, pp. 43-54.
- 김 원(1990), 대도시 행정의 특징과 행정특례 제도, 지방행정, 39권(통권438호), pp. 24-36.
- 김익식(1990a), 대도시행정의 특징과 행정특례제도, 지방행정, 39권(통권442호), pp. 34-46.
- 김익식(1990b),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의 측정: 지방분권이론의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학보, 24권 3호, 1373-1398.
- 김익식(2006), 지방분권: 기능적 효율성과 조정 메카니즘, 한국비영리연구, 5권 2호, pp. 3-23.
- 김정훈(2015), 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 비판적 평가 및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재정학연구, 8권 3호, pp. 149-191.
- 김택수(2003),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전북행정학보, 17권 1호, pp. 13-33.
- 남재결(2013), 수도권 대도시 일반구 운영사례 분석: 경기도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권 4호, pp. 1183-1209.
- 남재결 · 김태운(2013),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적정성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권 1호 pp. 63-89.
- 민기 · 박철민 · 김경범 · 강창민(201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용역보고서.
- 박상우(2013), 광역형 자치단체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기본과제 보고서.
- 박상우(201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핵심정책과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상우(2016),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안,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pp. 31-63.
- 박석희(2010), 일본의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과 시사점, 정부와 정책, 2권 2호, pp. 21-52.
- 벤자민 R. 바버, 조은경·최은정 옮김(2014), 뜨는 도시 지는 국가, 서울: 21세기 북스.
- 소순창(2007), 일본의 대도시 특례와 광역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14권 2호, pp. 59-81.
- 신원부(2013), 인구 100만 대도시 조직모델에 대한 실험적 설계에 관한 연구: 기능(특례), 재정, 기구 및 인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 22-68.
- 신종순(1979), 대도시 행정제도의 개혁: 대도시사무배분의 특례화 방향-지정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 28권 309호, pp. 34-43.
- 심익섭(2001), 지방행정계층제의 재구축 방안, 경기논단, 3권 1호, pp. 9-25.
- 심익섭(2012), 대도시 사무특례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행정, 61권(통권 705호), pp. 12-15.
- 심익섭·홍준현(2000),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지방자치제도개편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자료집(경실련) at <https://ccej.or.kr/>(경실련-이슈-뉴스-정치).
- 안성호(2011), 다중심거버넌스와 지방자치체제의 발전방향, 행정논총, 49권 3호, pp. 58-89.
- 안영훈·신영기(2009), 선진국 대도시 지방정부의 지방행정체제 특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9권 1호, pp. 3-36.
- 엄운섭(1990), 지정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행정학회, 3권, pp. 263-277.
- 이기우(2005),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권 4호, pp. 5-25.
- 이달근·하혜수·정정화·전주상·김철희(2012),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이병훈(2004), 지방분권의 이념과 현실-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 및 책임의 배분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3권 1호, 103-123.
- 이상운·이종수(2004), 차등분권형 지정시와 행정특례제도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18권 2호, pp. 73-93.
- 이성덕 역. A.F. Leemans(1978), 지방정부 개혁론, 서울: 법문사.
- 이영호(1999)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계획의 내용과 그 시사점, 법제, 497호, pp. 64.
- 이재희(2016)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상, 법조, 통권 717호(2016.6), pp. 5-56.

- 정재황 · 선정원 · 김명연 · 김수준 · 전훈. 2006.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헌법재판연구, 제17권.
- 정창화 · 한부영(2005), 지방분권화의 이론과 원칙 탐색-독일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9권 2호, pp. 35-64.
- 조성호 · 송상훈 · 이용환 · 라휘문 · 오희환 · 윤태웅(2011), 대도시 행 · 재정 특례의 평가와 대안,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최병호 · 정종필 · 이근재(2008), 기초자치단체의 최소효율 인구규모 및 혼잡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12권 1호, pp. 87-105.
- 최영출(2005),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 검토를 위한 실증적 연구, 지방행정연구, 19권 2호, pp. 240-261.
- 최영출(2008), 지방자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일반 행정구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389-410.
- 최창호(2005),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하혜수 · 김영기(2006), 지방행정구역과 자치계층구조 개혁의 지향점과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8권 1호, pp. 1-28.
- 하혜수 · 김영기 · 하정봉(2011), 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 일, 영 비교연구: 도서특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권 4호, pp. 231-252.
- 현성욱 · 황경수 · 소진광(20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 성과만족에 대한 평가 연구,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pp. 85-108.
- Collins, P. H. 3ed., (2004) Dictionary of Politics and Government, London: Bloomsbury.
- Conyers, Diana, (1984) 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Public Administration & Development. Vol.4, No.2, pp. 187-197.
- Dahl, Robert & E. R. Tufte, (1973) Size and Democr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esler, James W., (1965) Approaches to the Understanding of Decentralization, Journal of Politics, Vol.27, No.3.

- Frierich, Carl J., (1963) *Man and His Government*. N.Y.: McGraw-Hill Book Co.
- Leemans, A. F., (1970) *Changing Patterns of Local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 Maass, Arthur, (1959) *Division of Powers: An Areal Analysis*. in A. Maass(ed). *Area and Power*. Glencoe, III: The Free Press.
- Morgan, David, (1997) *Structural Arrangements in Local Government: Organizing for Effective Management*. in J. J. Gargan(ed.).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Marcel Decker.
-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Oates, W. E., (1999) *An Essay on Fiscal Federal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37, pp. 1120-1149.
- Ostrom, Vincent, Charles Tiebout & Robert Warren, (1961)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s: A Theore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5, No.4, pp. 831-842.
- Smith, B. C., (1985) *Decentralization: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London: Geroge Allen & Unwin. 1985.
- Tiebout, Charles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4, No.5, pp. 416-424.
- United Nations, (1962) *Decentralization for National and Local Development*. N.Y: UN.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2012),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2012.6)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보도자료. 2011.11.29.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 등 각종 법령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city.saitama.jp>

<http://www.city.saitama.jp/chuo>

<http://www.city.chiba.jp/wakaba>

<http://dudeuriso.daegu.go.kr/>

<http://rcps.egov.go.kr>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5/03/110912.html](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5/03/110912.html) (교토뉴스, 2015년 3월 28일자(4월1일부터 특례시 폐지...중핵시 이행 두고 대응 엇갈려)

## [부록 1] 사이타마시 중앙구의 세부 업무

실	과	업무
생활 응원 실	생활 응원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민의 상담 등(기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에 관한 것</li> <li>• 시민상담의 예약 및 안내에 관한 것</li> <li>• 시민보양 시설의 예약에 관한 것</li> <li>• 정보공개에 관한 것</li> <li>• 교통안전 계발에 관한 것</li> <li>• 공중가로등, 커브미러 등의 교통안전 시설의 신설 및 수선에 관한 것</li> <li>• 개발 행위 등에 따르는 교통안전 시설 및 자동차주차장 및 자전거 등 주차장의 사전현의에 관한 것</li> <li>• 해충구제의 상담에 관한 것</li> <li>• 재해시의 소독에 관한 것</li> <li>• 개의 등록 및 광견병예방에 관한 것</li> <li>• <b>공백 토지 및 빈 집 등의 적정관리에 관한 것</b></li> <li>•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및 계발에 관한 것</li> <li>• 작은 동물의 사체의 처리에 관한 것</li> <li>• 분뇨처리수수료의 수납에 관한 것</li> <li>• 야생 조수의 보호 및 유해조수의 상담, 포획(오미야구청 및 우라와구청에 한함)에 관한 것</li> <li>• 도로, 하천, 하수도, 소규모공원 및 녹지의 긴급적인 수선 및 청소에 관한 것</li> <li>• 주택용 가옥증명에 관한 것</li> <li>•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의 반포에 관한 것</li> <li>• <b>시영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 안내의 배포에 관한 것</b></li> <li>•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업수익자부담금의 수납에 관한 것</li> </ul>
	총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의 수수, 발송 및 보존에 관한 것</li> <li>• 위기관리에 관한 것</li> <li>• 피해증명의 발행(화재에 의한 것을 제외)에 관하는 것</li> <li>• 지역의 방법에 관한 것</li> <li>• 광고에 근거하는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것</li> <li>• 청서관리에 관한 것</li> <li>• 현금(현금에 대신해서 납부되는 증권을 포함)출납 및 보관에 관한 것,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것</li> <li>• 지출 부담 행위의 확인 및 지출 명령서 및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서류의 심사에 관한 것</li> </ul>
구민 생활 부	커뮤 니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진흥에 관한 것</li> <li>• 시민자치활동에 관한 것</li> <li>• 구민회의 및 시민활동 네트워크에 관한 것</li> <li>• 구의 자주사업의 기획에 관한 것</li> <li>• 구의 주요사업의 진행 관리에 관한 것</li> <li>• 구민에의 홍보에 관한 것</li> <li>• 요청 등의 접수에 관한 것</li> </ul>
	구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의 기재 및 편제에 관한 것</li> </ul>

실	과	업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동태조사에 관한 것</li> <li>• 상속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한 것,</li> <li>• 범죄자명부 및 파산자, 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피보좌인 명부의 정리 보관에 관한 것</li> <li>• 매장, 화장 및 이장의 허가에 관한 것</li> <li>• 자동차부기의 관리에 관한 것</li> <li>• 주민증 및 호적의 작성 및 통지</li> <li>• 주민기본대장의 열람, 교부, 및 다목적 이용 등록에 관한 것, 인감등록에 관한 것</li> <li>• 특별영주자 사무에 관한 것</li> <li>• <b>주소표시 및 동명지번의 관리에 관한 것</b></li> <li>•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것</li> <li>• 주민실태조사에 관한 것</li> <li>• 모자보건수첩의 교부에 관한 것</li> <li>• 학령부의 접수 및 송부에 관한 것</li> <li>• 전자증명서의 제공에 관한 것</li> <li>• 각종신고서 및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것</li> <li>• 각종증명서의 작성에 관한 것</li> <li>• 수수료의 수납에 관한 것</li> <li>• 지소 및 시민의 창구와 연락 조정에 관한 것</li> </ul>
	과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증명 사무에 관한 것</li> <li>• 개인의 시민세 및 현민세(보통 징수)에 관련되는 것</li> <li>• 공적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징수에 관한 것에 한함)의 조사, 부과, 고정 자산의 평가에 관한 것</li> <li>•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조사, 부과 및 평가, 처분에 관한 것</li> <li>• 토지가격 및 가옥가격 등의 공람에 관한 것</li> <li>• 경자동차세의 조사, 부과 및 평가, 처분에 관한 것</li> <li>• 원동기 등의 등록, 폐차 및 표식의 교부에 관한 것</li> </ul>
	수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제증명의 교부에 관한 것</li> <li>• 시세 및 개인의 현민세(이하시세)의 징수 돈의 징수 및 징수의 유예에 관한 것</li> <li>• 시세 등의 징수 돈의 독촉, 최고 및 체납처분, 불납결손 처분, 징수촉탁에 관한 것</li> <li>• 징수의 촉탁을 받은 다른 지방 공공단체의 징수 돈의 징수에 관한 것</li> <li>• 납세 저촉 조합에 관한 것</li> </ul>
	건강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건 및 성인 보건에 관한 것</li> <li>• 치과보건에 관한 것</li> <li>• 정신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상담에 관한 것</li> <li>• 영양지도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것, 방문 지도에 관한 것</li> <li>•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에 관한 것</li> <li>• 보호자가 없는 정신장애인의 의료보호 입원의 동의에 관한 것</li> <li>• 보건소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의 접수에 관한 것</li> <li>• 국민건강보험의 특정건강진찰에 관계되는 특정 보건 지도에 관한 것.</li> </ul>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위원 · 아동위원회에 관한 것</li> <li>• 재해위문금등의 지급에 관한 것</li> <li>• 전상 병자, 전몰자 유가족 등의 원호에 관한 것</li> </ul>

실 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것</li> <li>• 생활보호 금품의 지급에 관한 것</li> <li>• 행려병자 및 행려사망자의 취급에 관한 것</li> </ul>
지원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동수당 및 아동부양수당의 인정 및 지급에 관한 것</b></li> <li>• 보육원에 입소에 관한 것</li> <li>• 보육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것</li> <li>• 방과 후 아동 클럽 입실에 관한 것</li> <li>• 모자생활 지원 시설 및 조산시설에의 입소에 관한 것</li> <li>• 가정아동상담에 관한 것</li> <li>• 장애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 및 지원에 관한 것</li> <li>• <b>간병급부비용 등의 지급결정에 관한 것</b></li> <li>•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수첩 및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의 교부에 관한 것</li> <li>• <b>특별아동부양수당, 심신장애자복지수당 등의 인정에 관한 것</b></li> <li>•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의 교부에 관한 것</li> <li>• 난치병환자위문금등의 인정에 관한 것</li> <li>• 심신장애자부양 공제의 신청에 관한 것</li> </ul>
고령 개호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복지시설의 입소에 관한 것</li> <li>• 고령자의 재택 복지 서비스 사업</li> <li>• 생활지원 및 간병예방사업에 관한 것</li> <li>• 중도개호고령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것</li> <li>• 고령자의 사는 보람 대책에 관한 것</li> <li>• 노인 클럽의 육성 및 지도에 관한 것</li> <li>• 경로사업에 관한 것</li> <li>• 고령자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 및 지도에 관한 것</li> <li>• 고령자간호 보험피보험자의 자격 득실 및 변경에 관한 것</li> <li>• 간병 인정에 관한 것</li> <li>• 고령자간호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의 급부에 관한 것</li> </ul>
보험 연금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의 자격 득실 및 이동에 관한 것</li> <li>• 국민건강보험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것</li> <li>• 국민건강보험급부에 관한 것</li> <li>•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의 교부 및 갱신(일제갱신을 제외)에 관한 것</li> <li>•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제삼자행위에 의한 피해신고의 수리</li> <li>• <b>요양비의 지급의 결정에 관한 것</b></li> <li>• 국민건강보험의 보건의업에 관한 것</li> <li>• 고액요양비자금 및 출산비용 자금의 대부에 관한 것</li> <li>• 육아지원 의료비, 심신장애자의료비 및 편모가정 등 의료비의 <b>자격 인정 및 지급의 결정에 관한 것</b></li> <li>• 육아지원 의료비수급 자격자증, 심신장애자의료비수급자증 및 편모 가정 등 의료비수급자격자증의 교부 및 갱신(일제갱신을 제외)에 관한 것</li> <li>•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의료에 관계되는 신청, 신고서등의 접수에 관한 것</li> <li>• 후기고령자 의료피보험자증의 인도에 관한 것</li> </ul>

실	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것</li> <li>• 국민연금에 관한 것</li> <li>• 특별장해급부의 인정 청구에 관한 것</li> <li>• 재일 외국인등 복지수당의 청구에 관한 것</li> </ul>

출처: <http://www.city.saitama.jp/chuo>

## [부록 2] 성남시 분당구 조직 및 세부업무

조직		업무
행정지원과	총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행사 및 의전 등</li> <li>• 인사 및 근평 등</li> <li>• 지역상황 선거</li> <li>• 예산, 회계, 정보공개</li> <li>• 후생복지, 보안, 표창</li> <li>•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당직편성</li> <li>• 사회복지무요원관리, 직장민방위대운영, 청사방호, 구내식당 및 매점운영, 회의실 사용통제, 체육시설관리, 근조기 관리</li> <li>• 연금, 공제, 근태, 기록물</li> </ul>
	기획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 감사, 통계</li> <li>• 성과, 종합관찰제</li> <li>• 의회</li> <li>• 야간현장순찰</li> <li>• 구정홍보용 사진촬영 및 홍보</li> </ul>
	자치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li> <li>• 각종 단체 운영지원 등(보조금 지급 등)</li> </ul>
	경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물품, 용역계약, 국공유재산관리</li> <li>• 물품구매</li> <li>• 청사전기, 소방시설관리</li> <li>• 청사시설물유지관리</li> <li>• 지출, 세입세출외 현금</li> <li>• 차량관리</li> </ul>
	정보통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T, 행정통신업무</li> <li>• 착공전 설계검토, 통신보안</li> <li>• 분당구 대표 SNS관리, 분당구 홈페이지관리</li> <li>• 시민정보화교육, 전산</li> <li>•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네트워크장비 및 유무선 대민망</li> </ul>
시민봉사과	민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접수</li> <li>• 외국인체류지변경</li> <li>• 행정정보공동이용승인</li> <li>• 주민등록일반, 무인민원발급기 관리</li> <li>• 통합민원</li> <li>• 어디서나 민원처리</li> </ul>
	가족관계등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업무</li> </ul>
	토지정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li> <li>• 외국인토지취득허가</li> <li>• 비법인등록번호부여 등</li> <li>• 부동산실명법</li> <li>• 부동산실거래신고 검인</li> <li>• 조상땅 찾기 등</li> </ul>

조직		업무
	지적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동(분할)업무</li> <li>•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li> </ul>
	부동산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중개업관리</li> <li>• 부동산중개업 개설 및 이전등록</li> <li>• 공시지가</li> <li>•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 시책개발 및 연계방안 수립)</li> <li>• 개별공시지가</li> </ul>
세무1과	도세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세행정일반</li> <li>• 취득세 비과세 감면</li> <li>• 취득세 자납</li> </ul>
	도세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 취득세 비과세 감면</li> <li>• 취득세 수시/ 취득등록세 신고납부</li> <li>• 등록면허서(면허)</li> </ul>
	세무조사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사</li> <li>• 서면세무조사</li> <li>•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점주주</li> </ul>
	세무조사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세무조사</li> <li>•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li> </ul>
	과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li> </ul>
세무2과	시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수추계, 주민세 부과</li> <li>• 자동차세 부과(수시분, 주행분)</li> <li>• 과오납, 수납</li> <li>• 세외수입</li> </ul>
	지방소득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득세(양도, 종소)</li> <li>• 지방소득세(법인, 특별징수)</li> </ul>
	재산세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부과징수</li> </ul>
	재산세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부과징수</li> </ul>
	체납세징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징수, 급여압류</li> <li>• 부동산 경공매, 법원공탁금, 회사정리관리, 개인회생</li> <li>• 부동산압류 및 해제</li> <li>• 번호판 영치 및 공매</li> <li>• 기타채권 압류 및 해제</li> <li>• 체납자 실태조사</li> <li>• 체납정보회신</li> </ul>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보호, 재해구호</li> <li>• 장애인희망의 학교 운영</li>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li> <li>• 장애인급여</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일반, 보장비용관리, 청년배당</li> <li>•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고용촉진</li> <li>• 생활안정응자금, 자활사업, 희망키움통장,</li> </ul>
	노인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당 운영</li> <li>• <b>경로당 물품관리, 물품지원, 경로당활성화사업</b></li> </ul>

조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경로식당, 경로당 시설관리보수</li> <li>• 콜하우스</li> <li>• 기초연금</li> <li>•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소일거리</li> <li>• 노인일자리사업</li> <li>•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대상관리</li> </ul>
	통합조사관리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조사관리(동별)-국민기초수급자, 타법의료급여</li> </ul>
	통합조사관리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조사관리(동별)-기초연금, 차상위, 장애연금, 자활, 우선돌봄, 초중고교육비</li> </ul>
	희망나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한돌봄사업</li> <li>• 이웃돕기</li> <li>• 통합사례 및 서비스연계 담당, 상담 및 관리</li> </ul>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금</li> <li>• 다자녀가정 아동 양육수당, 안심보험</li> <li>• 한부모가족 업무</li> <li>• 지역아동센터지원</li> <li>• 아동급식, 아동복지, 요보호아동</li> </ul>
	보육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지도점검, 민원처리</li> <li>• 어린이집 운영비, 개보수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li> <li>• 어린이집 인가, 기본보육료지원</li> <li>• 교직원 경력증명서 발급</li> <li>• 어린이집 교직원 관리</li> <li>•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li> <li>• 보육료 및 양육수당 선정, 관리</li> <li>• 맞춤형 보유사업</li> </ul>
	문화체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장기 체육대회, 한마음축제</li> <li>• 잔디광장 관리</li> <li>•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및 인쇄소</li> <li>• 유원시설업관리, 노래연습장관리</li> <li>• 어머니합장단 관리</li> </ul>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li> <li>• 차량 방치자 사건송치 및 통고처분</li> <li>• 무단방치차량 관리</li> </ul>
	주차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압류 및 대체압류</li> <li>• 주정차 민원처리</li> <li>• 단속요원(계약직, 기간제) 관리</li> </ul>
	산업경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취득</li> <li>• 농업재해</li> <li>• 수산, 축산, 농약, 비료, 종묘, 농자재, 전작, 화훼, 농산물유통</li> <li>• 학자금, 보험</li> <li>• 담배 소매인지정</li> <li>• 농지원부, 직불금, 동물등록 등</li> </ul>

	조직	업무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환경학교운영, 성과관리</li> <li>•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관리, 수렴면허 등</li> </ul>
	환경보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생활민원처리</li> <li>• 휘발성 및 초양 관련업무</li> </ul>
	생활수질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수질(폐수)업무 처리</li> </ul>
	식품위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행정, 장사업무</li> <li>• 식중독 관리업무</li> <li>•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업무</li> <li>• 식품위생업소 점검</li> <li>• 즉결민원처리</li> <li>• 특별사법경찰단 파견</li> </ul>
	위생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li> <li>• 공중즉결민원</li> <li>• 부정, 불량식품</li> </ul>
건설과	건설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형질변경 단속 및 도로점용 협의</li> <li>• 도로점용허가, 관련 소송 등</li> <li>•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li> </ul>
	안전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재해</li> <li>•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li> </ul>
	민방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업무</li> <li>• 사회복지무요원관리</li> <li>• 비상급수시설</li> </ul>
	소하천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li> <li>• 소하천 유지관리</li> <li>•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공사 시행</li> </ul>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개설, 취락지구</li> </ul>
	구조물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구조물 유지관리</li> <li>• 공동구 유지관리</li> </ul>
	토목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정비</li> <li>• 도로시설물 정비공사</li> <li>• 빗물받이 정비공사</li> <li>• 영조물 배상공제</li> <li>• 도로시설민원처리</li> <li>• 도로시설물 유지관리</li> </ul>
	기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li> <li>• 지하차도(터널등), 보도, 공동구, 전기시설물 유지관리</li> <li>• 도로시설, 구조물 현장점검</li> </ul>
녹지공원과	산림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방지</li> <li>• 산림업무</li> <li>• 현장순찰 등</li> </ul>
	녹지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수 및 공공녹지대관리</li> <li>• 공공 공지 관리</li> <li>• 녹지 기간제 현장관리</li> </ul>

조직		업무
	녹지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관리, 녹지대관리</li> <li>• 녹지시설물 관리공사</li> </ul>
	공원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공사 건축분야</li> <li>• 녹지시설물 유지관리</li> <li>• 조경수 병충해방제</li> <li>• 공원시설물 유지관리</li> <li>• 간벌 등 육림사업 추진</li> </ul>
	공원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공원 및 보행자도로 시설물 관리</li> <li>• 어린이 공원 등 전기시설 유지관리</li> <li>•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사추진</li> </ul>
건축과	건축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역 개발행위허가</li> <li>•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폐쇄 신고</li> </ul>
	건축허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 행위허가</li> </ul>
	건축지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건축행위 단속, 부설주차장 지도단속</li> <li>• 향측업무 및 향측 자료관리</li> <li>• 이행강제금 미납 납부독촉, 압류조치 및 해제</li> <li>• 건축지도원 제도 운영</li> <li>• 개발제한구역단속 불법건축물단속</li> </ul>
	건축물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li> <li>• 용도변경</li> </ul>
도시미관과	도시미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점상 단속</li> <li>• 노상적치물 단속</li> </ul>
	광고물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등</li> <li>• 불법광고물 단속 등</li> <li>• 광고물인허가 관련 업무</li> </ul>
	청소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대행업체 관리</li> <li>• 청소민원처리</li> <li>• 종량제봉투 관련 업무</li> <li>• 폐기물 재활용 업무</li> <li>• 불법투기 과태료</li> <li>•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li> <li>• 노점상 단속</li> </ul>



| 저자 약력 |

박상우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현)

E-mail : depeking@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계획 수립」 (2015,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2015, 수원시정연구원)